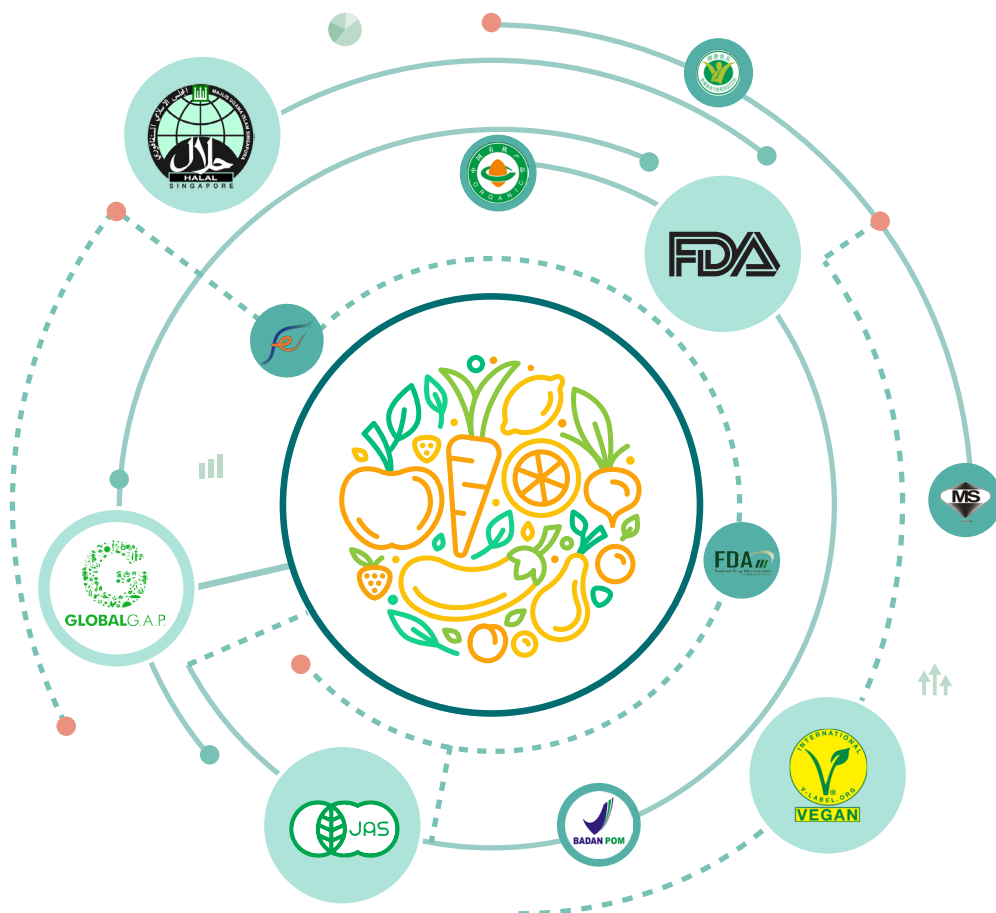


2020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정보 종합가이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목 차]

I. 해외 식품인증 현황 3

1. 해외 식품인증 유형 3

2. 국가별 식품인증 현황 4

II. 국가별 식품인증 가이드 13

1. 공통 15

FSSC 22000 인증 19

ISO 22000 인증 23

SQF 인증 28

HACCP 인증 33

GMP 인증 40

2. 아시아권 45

일본 47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 49

JAS 유기인증 57

스마일케어 인증 68

JGAP 인증 74

중국 79

AQSIQ 인증 81

중국 유기산물 인증 87

베트남 95

VFA 적합성 인증 97

홍콩 103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인증 105

태국 109

태국 식약청(FDA) 등록 111

대만 117

대만 식품의약청(TFDA) 인증 119

인도네시아 123

인도네시아 BPOM 등록 125

인도네시아 SNI 인증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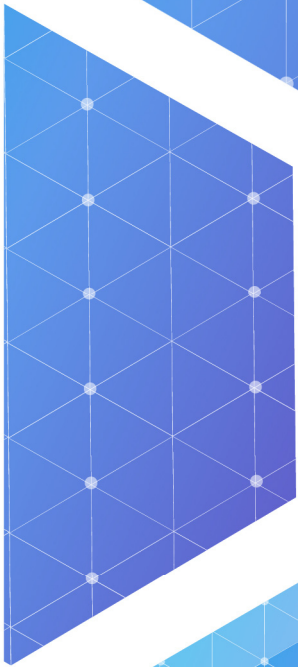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 135

필리핀	141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	143
싱가포르	149
싱가포르 식품청(SFA) 업체등록	151
WAREES(MUIS) 할랄 인증	155
말레이시아	161
SIRIM 인증	163
JAKIM 할랄 인증	166
캄보디아	173
캄보디아표준기구(ISC) 인증	175
3. 북미권	183
미국	185
미국 FDA 등록	187
공정무역 인증	195
IFANCA 할랄 인증	200
코셔(Kosher) 인증	204
글루텐프리 인증	214
NON-GMO 인증	219
USDA Organic 인증	224
캐나다	231
캐나다 식품 수입라이선스	233
4. 유럽권	239
유럽 공통	241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243
지리적 표시(GI) PDO · PGI · TSG 인증	247
EURO LEAF 인증	253
V-Label 인증	259
5. 기타 권역	263
러시아	265
러시아 TR CU 인증	267
UAE	273
ESMA 할랄 인증	275
호주	281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283
대한민국	287
KMF 할랄 인증	289



I

해외 식품인증 현황



1. 해외 식품인증 현황

1. 해외 식품인증 유형

인증 유형	세부내용
수출 시 필수인증	식약청 등록 등 국가별로 수입식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 및 등록 일본 후생노동성 등록, 중국 AQSIQ 인증, 베트남 VFA 적합성 인증,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인증, 태국 식약청 인증, 대만 식품의약품청 인증, 인도네시아 BPOM 등록, 인도네시아 SNI 인증,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 싱가포르 식품청 등록,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캄보디아 ISC 제품 인증, 미국 FDA 등록, 캐나다 식품 수입라이선스,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러시아 TR CU 인증,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시스템 인증	식품안전관리 및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 FSSC 22000 인증, ISO 22000 인증, SQF 인증, HACCP 인증, GMP 인증
종교·문화적 인증	특정 종교권 국가 수출 시 취득해야 할 인증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 싱가포르 WAREES(MUIS) 할랄 인증,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미국 IFANCA 할랄 인증, 미국 OU 코셔 인증, 미국 Star-K 코셔 인증, 유럽 V-Label 인증, UAE ESMA 할랄 인증, 한국 KMF 할랄 인증
기능성 인증	특정 성분 또는 기능적 요소에 관한 규정 준수 시 취득할 수 있는 인증 일본 JAS 유기인증, 일본 스마일케어 인증, 일본 JGAP 인증, 중국 유기산품 인증, 미국 글루텐프리 인증, 미국 NON-GMO 인증, 미국 USDA Organic 인증, 유럽 EURO LEAF 인증
권장 인증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취득이 권장되는 인증 유럽 지리적표시 인증

2. 국가별 식품인증 현황

국가명	인증명	세부내용	인증 유형	취득주체
공통	FSSC 22000 인증	- 인증기관: 국제식품안전협회 - ISO 22000 인증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식품의 품질 및 안전 보장에 관해 인증을 발급함 2019년 5월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인증 전환을 진행해야 함	시스템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ISO 22000 인증	- 인증기관: 국제표준화기구 - ISO 9001 시스템과 HACCO 원칙을 통합한 것으로 식품공급사슬 전반의 식품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 식품공급사슬 내 위해요인을 파악 및 관리하여 제품,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시스템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SQF 인증	- 인증기관: 안전품질식품연구소 -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인증체계로, 북미 지역에서 선호됨 - 요구사항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며, 3단계 인증 취득 시 식품안전성이 보장된 것으로 간주됨	시스템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HACCP 인증	- 인증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가별 인증기관 상이함) - 식품 생산 전 단계에 걸친 위생관리체계에 관한 인증으로, 국가별 인증기관을 통해 시험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시스템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GMP 인증	- 인증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별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부여함 - 원자재 구입에서부터 제조, 포장, 보관,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의 품질관리에 대해 인증함	시스템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국가명	인증명	세부내용	인증 유형	취득주체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	- 인증기관: 일본 후생노동성 - 수입 가공식품을 사전등록하여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평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록지원제도 활용 가능	수출 시 필수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JAS 유기인증	- 인증기관: 일본 농림수산물성 - 일본으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수출 시 권장됨 - 토양 상태, 화학합성비료 및 농약 사용, 유전자 재조합기술 사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발급함	기능성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스마일케어 인증	- 인증기관: 일본 농림수산물성 - 고령자용 또는 저작·연하곤란자용 식품을 대상으로 함 - 식품의 유형 및 부드러움 정도에 따라 라벨을 구분함	기능성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JGAP 인증	- 인증기관: 일본 JGAP협회 - 농축산물 생산공정 관리에 관한 품질 보증 기준임 - 여러 농업경영체가 모여 단체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기능성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중국	AQSIQ 등록	- 인증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수입식품은 온라인 시스템에 회사를 등록하고 사전 검험을 실시함	수출 시 필수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유기산물 인증	- 인증기관: 중국품질인증센터, 중국인증 인가관리감독위원회 - 유기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가공식품에 대해 이를 인증함 - 유기산물 인증코드를 발급하여 유기 농식품의 이력을 추적함	기능성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국가명	인증명	세부내용	인증 유형	취득주체
베트남	VFA 적합성인증	- 인증기관: 베트남 식품안전국 -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규정 적합 여부를 판정받아야 함	수출 시 필수인증	베트남 수입업체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인증	- 인증기관: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 홍콩 내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며, 획득 시 이에 대한 인증을 부여함	수출 시 필수인증	한국 수출업체
태국	식약청 등록	- 인증기관: 태국 식약청 - 태국 내 수입식품 위험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이를 식약청에 등록함 - 등록 후 식품일련번호를 발급받음	수출 시 필수인증	태국 수입업체
대만	식품의약품청 인증	- 인증기관: 대만 식품안전위원회 산하 식품의약품청 - 보건식품의 기능 및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발급함	수출 시 필수인증	대만 수입업체
인도네시아	BPOM 등록	-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를 받은 수입업체에 한해 식약청에 식품을 등록함	수출 시 필수인증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SNI 인증	-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 - 인도네시아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인도네시아 표준을 준수해야 함 - 강제인증 품목의 경우 인증 미취득 시 인도네시아 수입이 거부될 수 있음	수출 시 필수인증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국가명	인증명	세부내용	인증 유형	취득주체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	-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2019년 10월부터 할랄 담당기관이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단계에 있음 - 한국 KMF인증과 교차인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종교·문화적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	- 인증기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 필리핀 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면허를 취득한 업체만 진행 가능함	수출 시 필수인증	필리핀 수입업체
싱가포르	식품청 등록	- 인증기관: 싱가포르 식품청 - 수입면허를 취득한 싱가포르 수입업체는 식품청에 업체 정보를 등록함	수출 시 필수인증	싱가포르 수입업체
	WAREES(MUIS) 할랄 인증	- 인증기관: Warees Halal - 한국 KMF인증과 교차인증을 체결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음 - 할랄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원재료, 생산방식, 생산시설 등은 할랄 표준을 준수해야 함	종교·문화적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 인증기관: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 - 말레이시아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SIRIM 마크를 부착함 - 식품은 임의인증 품목에 해당함 - 말레이시아 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규정을 제시할 수 있음	수출 시 필수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국가명	인증명	세부내용	인증 유형	취득주체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 인증기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 육류 및 육류 기반의 제품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그 외 식품은 권고사항임 - 식품 및 그 원재료를 비롯해 생산공정이 할랄표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인증을 발급함 - 한국 KMF인증을 인정함	종교·문화적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캄보디아	ISC 제품 인증	- 인증기관: 캄보디아표준기구 - 제품이 캄보디아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으로, 식품 표준은 국제식품규격(CODEX)을 준수해야 함 - 식품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수출 시 필수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미국	FDA 등록	- 인증기관: 미국 식품의약청 - 미국으로 식품 수출 전 미국 식품의약품청에 식품시설을 등록해야 함 - 미국 내 상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시설등록을 진행할 수 있음 - 산성화 및 저산성식품은 별도의 시설 및 공정등록을 진행함	수출 시 필수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공정무역 인증	- 인증기관: 국제공정무역기구 - 공정무역 기준을 준수한 식품에 한해 인증을 부여함 - 제품의 재료구성이 공정무역기준에 부합해야 함 - 인증마크 사용 시 별도 신청함	종교·문화적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IFANCA 할랄 인증	- 인증기관: 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 - 식품 원재료 및 가공 과정에서 할랄 규정을 준수한 경우 부여함 - IFANCA 할랄 인증은 전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할랄 인증임	종교·문화적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국가명	인증명	세부내용	인증 유형	취득주체
미국	OU/Star-K 코셔 인증	- 인증기관: OU/Star-K - 유대교 율법에 기반한 식품 및 그 생산·유통과정에 관한 인증 - 코셔 규정은 육류, 유제품, 중성식품 등에 적용되며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가 코셔 요건에 부합해야 함	종교·문화적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글루텐프리 인증	- 인증기관: 글루텐프리인증기관(GFCO) - 글루텐 성분을 일정기준 이하로 함유한 식품에 대한 인증 - 민간인증이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 제조시설 및 완제품은 정기적으로 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아야 함	기능성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NON-GMO 인증	- 인증기관: Non-GMO Project - 유전자 변형 성분이 일정수준 이상 함유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인증기관과 기술관리기관에 각각 취득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취득 후 마케팅활동을 지원함 - 유전자 변형 정도에 따라 식품의 위험 수준을 구분함	기능성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USDA Organic 인증	- 인증기관: 미국 농무부 - 유기 원료를 최소 95% 이상 함유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 재배하는 동안 화학합성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방사선 조사도 허용되지 않음	기능성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캐나다	식품 수입라이선스	- 인증기관: 캐나다 식품검역청 - 식품 수입을 위해 캐나다 수입업체가 발급받으며,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 전 바이어의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서는 예방관리 계획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수출 시 필수인증	캐나다 수입업체

국가명	인증명	세부내용	인증 유형	취득주체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 인증기관: 유럽 식품안전청 ◦ EU 역내 식품안전을 감독하며 이에 대한 과학적 자문과 위해성 평가를 담당함 ◦ 또한 노블푸드(Novel Food)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승인함	수출 시 필수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지리적표시 인증	◦ 인증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인증을 통해 원산지의 전통 및 문화에 기반한 식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한국 지리적표시 등록 시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권장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EURO LEAF 인증	◦ 인증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유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발급함 ◦ 식품 생산 및 제조 시 첨가물 및 화학물질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방사선 조사 및 유전자 변형 성분 사용을 금함 ◦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로 한국 유기 인증은 동등한 대우를 받음	기능성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V-Label 인증	◦ 인증기관: 유럽채식협회 ◦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에 인증을 부여함 ◦ 사용된 원재료 및 함유 성분에 따라 완전채식식품과 일반 채식식품으로 구분함	종교·문화적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러시아	TR CU 인증	◦ 인증기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식품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적합성을 평가하여 인증을 발급함 ◦ 기존 GOST 인증제도에서 TR CU 인증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EAC 인증으로 통합이 진행되고 있음	수출 시 필수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국가명	인증명	세부내용	인증 유형	취득주체
UAE	ESMA 할랄 인증	◦ 인증기관: UAE 표준측량청 ◦ 육류 및 육류를 포함한 식품은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 GCC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어 통용 가능함 ◦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종교·문화적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 인증기관: 호주 식품기준청 ◦ 호주 식품기준청은 호주 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함	수출 시 필수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한민국	KMF 할랄 인증	◦ 인증기관: 한국이슬람교중앙회 ◦ 식음료 및 원재료, 제조공정 등이 할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하람(HARAM)으로 규정되는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싱가포르 MUIS 인증, 대만 THIDA 인증과 교차 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종교·문화적 인증	한국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II

국가별 식품인증 가이드

1. 공통 인증



공통 인증



FSSC 22000 인증

.....19



ISO 22000 인증

.....23



SQF 인증

.....28



HACCP 인증

.....33



GMP 인증

.....40

FSSC 22000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FSSC 22000 인증	국가명	공통
마크		인증기관	국제식품안전협회 (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시스템 인증
		도입시기	2010년
		유효기간	3년

주: 인증마크는 제품포장에 부착할 수 없음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식품 안전 및 품질경영시스템의 범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규격 ISO 22000을 접목하여 도입함 ◦ GFSI(국제식품안전협회)로부터 정식 인정받은 국제규격
인증 내용	◦ ISO 22000을 기반으로 품질경영 시스템을 인증함 ◦ 선행요건프로그램과 추가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면 인증이 부여됨
적용대상	식품 전반 및 경영시스템

□ 현황

취득 유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세계 154개국 21,427개 인증 발급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인증으로서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함		
소요기간	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6~9개월 소요	소요비용	업체별 상이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ISO 22000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제식품안전협회(GFSI)가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규격 FSSC 22000을 마련함

- GFSI는 유럽에 보급되던 BRC인증을 벤치마킹하여 PAS220(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220)¹⁾을 구축함
- 범용성 제고의 목적으로 ISO 22000을 접목하여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FSSC 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22000)을 개발함

□ ISO 22000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선행요건프로그램(PRPs), 추가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ISO 22000 인증은 사육, 식품제조, 동물사료 제조, 케이터링, 리테일, 운송 및 보관, (생)화학 제품의 생산 등 산업별로 구분하여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ISO는 HACCP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식품안전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대한 식품위생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ISO 22002에 규정된 식품제조·식품유통·동물용 사료·포장재 제조 PRPs 등에 대한 선행요건프로그램(PRPs)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FSSC 22000의 추가요구사항은 9가지로 다음과 같음
 - 서비스 관리, 제품 라벨링, 식품 방어, 식품 사기 방지, 로고 사용,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환경 모니터링, 제품 배합,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추가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증은 취득 후 3년까지 유효하나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증명 받아야 함

□ 2019년 5월 FSSC 22000 인증 Version5가 발간됨에 따라 기(既)취득 업체도 인증 전환을 진행해야 하며 기존 Version 4.1은 2021년 6월 29일까지만 유효함

- ISO 22000 인증이 2018년 6월 개정됨에 따라 FSSC 22000 인증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발간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환해야 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The Foundation FSSC22000
홈페이지	https://mygfsi.com	www.fssc22000.com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31-1-8364-5028
	팩스번호	+31-1-8362-1161
	이메일	info@fssc22000.com
기타	-	-

1) 현재 PAS220은 ISO/TS22002-1로 변경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신청	제조업체	약 6~9개월 (소요일수기준 [별첨] 참조)	-
2	사전심사(선택)	공인인증기관		제조업체 요청 시
3	1차 심사(문서 심사)	공인인증기관		회의실 등 심사장소 마련
4	2차 심사(현장 심사)	공인인증기관		회의장소 마련 및 참석자 공지
5	인증발급	공인인증기관		-

* 주: 소요기간은 업종,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

- 인증절차는 ISO 22000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며, 시설 수준에 따라 6~9개월이 소요됨
 - 제조업체가 인증 심사를 신청한 공인인증기관은 인정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완료되면 심사가 진행됨
 -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공식 심사 전에 신청업체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준비사항을 고지함
 - 1차 심사는 신청업체의 문서화된 자료를 검토하여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하며 2차 심사는 현장심사를 통해 FSSC 22000의 표준 준수여부 등을 판단함
 - 매년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지속 여부를 평가하며 인증 취득 후 3년째 되는 해 갱신심사를 받아야 함

□ 소요비용

- 인증 취득비용은 업체 규모 및 심사일수 등에 따라 200만~1,00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인증대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 500만~1,000만 원이 소요되며 업체 상황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²⁾

□ 필요 서류

1차 심사(문서심사) 준비서류	2차 심사(현장심사) 준비서류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류 - 회사소개서 - 조직 및 업무분장 - 경영검토 및 내부 심사 결과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류 - 심사 대상 업무 실행기록 - 이전 심사 기록류

2) 해당 비용은 인증대행기관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비용으로 품목, 업체 규모, 심사일수, 인증기관 등에 따라 실제 취득 비용은 다를 수 있음

[별첨] 기본 심사일수 산정

〈기본 심사일수 산정 기준〉

(단위: 일)

구분	기본 현장심사일수	HACCP 연구 1건당 추가심사일수	관련 경영시스템 인증 미보유시 추가심사일수	상근 종업원 수에 따른 심사일수	FSSC 인증을 위한 추가심사일수
축산업/수산업	0.75	0.25	0.25	1~19 = 0 20~49 = 0.5 50~79 = 1.0 80~199 = 1.5 200~499 = 2.0 500~899 = 2.5 900~1299 = 3.0 1300~1699 = 3.5 1700~2999 = 4.0 3000~5000 = 4.5 >5000 = 5.0	상근종업원<250 & HACCP 연구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0.5(4시간) 상근종업원≥250 & HACCP 연구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1.0(8시간)
농업	0.75	0.25			
식품제조	1.50	0.50			
동물사료 생산	1.50	0.50			
케이터링	1.00	0.50			
유통	1.00	0.50			
운송 및 보관 서비스 제공	1.00	0.25			
서비스	1.00	0.25			
식품 포장재 및 포장 재료의 생산	1.00	0.25			
장비제조	1.00	0.25			
(생)화학 제품의 생산	1.50	0.50			

** 전체를 합산하여 심사일수 산정

* 출처: FSSC 22000:2018 Version 5

※ 단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상근종업원이 5명 이하, HACCP의 수가 최대 1개인 사업장의 경우 심사시간의 단축이 허용되며 전체 프로세스의 심사시간은 최소 1일이어야 함

ISO 22000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ISO 22000 인증	국가명	공통
마크		인정기관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증발급기관	ISO에서 승인한 인증기관(업체)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시스템 인증
		도입시기	2005년
		유효기간	3년

주: 인증마크는 제품포장에 부착할 수 없음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HACCP의 원칙에 근거함
인증 내용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여 통합 ◦ ISO에서 승인한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취득
적용품목	◦ 제품이 아닌 식품업체 경영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 농·축·수산업, 식품 및 사료가공, 케이터링, 소매·운송·보관·포장 및 장비제조, (생)화학제품의 생산

□ 현황

취득 유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 세계 36,105개 시설이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한국은 448개 시설이 인증을 취득함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인증으로서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함		
소요기간	조건에 따라 상이	소요비용	업체별 상이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함

- ISO 22000은 HACCP 시스템에 경영시스템 요소를 결합하여 식품안전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함
 - 기존의 ISO 9001와 HACCP의 요구사항들을 취합한 내용으로 구성됨
 - ISO 9001은 ISO에서 제정·시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임
 - HACCP는 식품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인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임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리더십 및 의사소통, 자원, 일반사항,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타당성 확인·검증·개선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ISO 22000은 ISO 경영시스템 표준의 통상적인 원칙에 근거함
 - 해당 원칙은 고객중심, 리더십, 조직원의 참여, 프로세스 접근 방법, 개선,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및 관계 관리임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4대원칙은 상호의사소통, 시스템 경영, 선행요건 프로그램, 위해요인 분석과 HACCP 원칙으로 구성됨
 - 4대원칙은 효과적으로 식품안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호의사소통과 시스템 경영, 적합하게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요건 프로그램과 위해요인 분석 및 HACCP 원칙임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식품공급사슬 내의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식품안전방침을 개발하고 해당 방침 달성을 위한 목표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성과를 개선함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주요 심사관점은 다음과 같음

ISO 22000 조항	내용	ISO 22000 조항	내용
4.1/4.2	조직 상황분석과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 니즈 파악	8.3/8.9.5	이력추적시스템, 회수, 모의회수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7.4.2/7.4.3	조직 내 외부 의사소통
5.2/6.2	식품안전방침 및 목표	6.3	변경관리
7.1.6	외주처리 프로세스	9.3	경영검토

ISO 22000 조항	내용	ISO 22000 조항	내용
8.5.2/8.5.4	위해요소 분석, 위해요소 관리계획(HACCP 계획), 운용PRP	8.2/ISO/ TS22002-1	선행요건 프로그램
8.4	비상시 대비 및 대응	8.9	부적합관리
8.5.3	타당성 확인	10.2	지속적개선
8.8	검증	-	-

* 출처: 한국식품연구원, 국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 가이드라인 제1권, 2019

□ 2018년 6월 ISO 22000:2018 국제표준이 발행되면서 기존 ISO 22000:2005를 기(既)취득한 기업도 인증전환이 필요함

- 2020년 2월 29일까지 구(舊)버전(2005)의 심사 및 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기존 인증 보유기업도 신(新)버전(2018)으로 인증을 전환하여야 함
 - 구(舊)버전의 효력은 2021년 6월 29일까지만 유효함³⁾
 - 구(舊)버전의 인증 효력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인증 복원 및 전환심사를 수행하여 인증이 복원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1단계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6개월이 지난 후에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신(新)버전(2018)에 대한 최초 인증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국제표준화기구(ISO)
홈페이지		www.iso.org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41-22-749-0111
	팩스번호	+41-22-749-3430
	이메일	central@iso.org
기타		-

3)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ISO 22000(식품안전경영) 개정판 인증전환 지침, 2019.03.13.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 신청 및 계약	제조업체 및 공인인증기관	소요일수기준 [별첨] 참조	-
2	사전심사(선택)	공인인증기관		신청업체 요청
3	1단계 심사(문서 심사)	공인인증기관		회의실 등 심사장소 마련, 심사 서류 준비
4	2단계 심사(현장 심사)	공인인증기관		회의장소 마련 및 참석자 공지, 심사 서류 준비
5	인증 등록	공인인증기관		-

* 주: 소요기간은 업종,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

*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www.kpcqa.or.kr/manage/service.asp)

- ISO 22000의 인증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되며 인증 신청 및 계약, 예비심사(신청업체 요청 시),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 인증 등록의 단계로 진행됨
 -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신청 및 계약을 완료하면 인증절차가 진행됨
 - 1단계 심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며 프로세스(공정, 업무) 확인, 경영시스템 문서 및 2단계 심사관련 정보의 확인, 2단계 심사의 착안사항 및 우려사항을 확인함
 - 2단계 심사는 심사준비, 시작회의, 현장순회, 경영자면담, 심사 실시, 심사결과정리, 종결회의 단계로 진행됨
 - 심사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인증이 등록됨

□ 소요비용

- 인증 취득비용은 업체 규모 및 심사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큼
 - 인증대행기관을 통한 조사결과 약 300만~1,000만 원이 소요됨⁴⁾

□ 필요 서류

1차 심사(문서심사) 준비서류	2차 심사(현장심사) 준비서류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류 - 회사소개서 - 조직 및 업무분장 - 경영검토 및 내부 심사 결과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류 - 심사 대상 업무 실행기록 - 이전 심사 기록류

4) 해당 비용은 인증대행기관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비용으로 품목, 업체 규모, 심사일수, 인증기관 등에 따라 실제 취득비용은 다를 수 있음

[별첨] 기본 심사일수 산정

<기본 심사일수 산정 기준>

(단위: 일)

구분	기본 현장심사일수	HACCP 연구 1건당 추가심사일수	관련 경영시스템 인증 미보유시 추가심사일수	상근 종업원 수에 따른 심사일수	FSSC 인증을 위한 추가심사일수
축산업/수산업	0.75	0.25	0.25	1~19 = 0 20~49 = 0.5 50~79 = 1.0 80~199 = 1.5 200~499 = 2.0 500~899 = 2.5 900~1299 = 3.0 1300~1699 = 3.5 1700~2999 = 4.0 3000~5000 = 4.5 >5000 = 5.0	최소현장심사시 간의 50%
농업	0.75	0.25			
식품제조	1.50	0.50			
동물사료 생산	1.50	0.50			
케이터링	1.00	0.50			
유통	1.00	0.50			
운송 및 보관 서비스 제공	1.00	0.25			
서비스	1.00	0.25			
식품 포장재 및 포장 재료의 생산	1.00	0.25			
장비제조	1.00	0.25			
(생)화학 제품의 생산	1.50	0.50			

** 전체를 합산하여 심사일수 산정

* 출처: ISO 22000:2018

SQF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SQF 인증	국가명	공통
마크		인정기관	안전 품질 식품 연구소 (SQFI, Safe Quality Food Institute)
		인증발급기관	SQFI가 승인한 인증기관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시스템 인증
		도입시기	2004년
		유효기간	1년

* 주: 도입시기는 우리나라 기준

□ 배경

도입취지	식품의 안전과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인증 내용	◦ 식품안전관리 인증체제로 총 3단계로 구성되어있음 ◦ 레벨 1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요건, 레벨 2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격이자 HACCP에 기반을 둔 인증 규격이며 레벨 3는 식품안전에 품질경영의 요소를 추가한 인증임
적용품목	◦ 제품이 아닌 식품업체 경영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 현황

취득 유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 세계 375개 시설이 SQF 인증을 취득함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공인규격으로 타국가에서 통용가능하나 북미, 대만을 중심으로 확산		
소요기간	약 6개월	소요비용	업체당 925~1,775달러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식품의 안전과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식품안전관리 인증체계임

- 1994년 호주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에 의해 개발되어 2003년 미국의 FMI(Food Marketing Institute)가 SQF 인증 권리를 인수함
 - 현재 북미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 선호되는 인증으로 2004년부터 인증으로 채택됨
 - SQF는 GFSI(국제식품안전협회)에서 승인한 규격임

□ 3단계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레벨 2 이상을 받으면 수출에 문제가 없음

- 레벨 1(Fundamentals)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요건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인증임
 - 생산자가 기본적인 식품의 안전통제를 인지하고 구현할 것을 요구하며, GMP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함
 - 레벨 1 인증은 일반적으로 수출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레벨 2(Food Safety)는 식품의 안전을 증명하는 인증 수준으로 HACCP를 기반으로 한 식품 안전계획을 요구함
 - 레벨 1의 기본적인 식품안전에 대한 준수와 HACCP에서 요구하는 위해요인 분석 및 중요 관리 포인트의 실행까지 충족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레벨 3(Food Safety and Quality)은 품질경영의 요소를 추가한 인증 레벨로 종합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의미하며, 해당 레벨부터 제품에 인증마크 부착이 가능함
 - 식품 자체의 안전뿐 아니라 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성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HACCP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과 품질경영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SQF 점검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SQF 점검항목〉

SQF 시스템 요구조건	- 기업의 헌신 - 문서 관리 및 기록 - 제품 개발 및 사양 - 식품 안전 확보 - 검증(Verification) - 제품 식별, 추적, 추적 및 철회 - 현장 보안
식품 안전 기본조건 (시설 및 장비, 설계 및 시공)	- 현장 요건 및 승인 - 식품관리구역 - 용수 공급 - 보관 시설 - 기능의 분리 - 현장 연구소 - 종업원 편의시설 - 응급조치시설 - 외관

□ 신청업체의 전문가 교육 이수 인원이 있어야 함

- 전문가 교육은 온라인 혹은 인증기관의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 이수 후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 온라인 강의 비용은 700달러이며, 시험 비용은 75달러임
 - 국내에서는 SGS코리아가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SQF전문가로 인정이 가능함
 - 신청업체의 정규직(Full-time basis)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업체의 SQF 시스템 관리책임에 관계되어 있는 직위에 위치하여야 함
 - HACCP 교육과정을 완료하여야 함
 - HACCP 기반의 식품안전계획을 실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 SQF 식품안전코드(Food Safety Code)와 SQF 시스템의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SQFI(Safe Quality Food Institute)
홈페이지		https://www.sqfi.com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1-202-220-0635
	팩스번호	+1-202-429-4519
	이메일	ES@sqfi.com
기타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 의뢰	제조업체	약 6개월 (업체별 상이)	-
2	SQF 신청	제조업체		업체 내 SQF전문가 수료증 첨부
3	사전 심사(선택)	승인 인증기관		-
4	1차 심사(문서 심사)	승인 인증기관		-
5	2차 심사(현장 심사)	승인 인증기관		-
6	인증 발급	승인 인증기관		-

* 출처: SGS, Comparing GFSI Recognised Standards

- SQF의 인증 취득절차는 총 6단계로 구성됨
 - 신청업체가 인증업체에 SQF 인증을 의뢰하면 SQFI에 신청서를 등록하여 인증절차가 진행됨
 - 신청서와 함께 SQF 전문가 수료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 사전심사는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신청업체가 인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미비점을 파악하여 준비가 가능하도록 고지하는 단계임
 - 1차 심사에서는 문서 검토를 실시하며 인증의 적합여부를 파악함
 -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약 2주의 시정기간이 주어지므로 개선이 가능함
 - 2차 심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며, 마찬가지로 미비점에 대한 시정기간이 주어짐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인증 등록과 함께 인증서가 발급되며 이후 사후 심사를 통해 준수 여부를 심사하므로 인증요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소요비용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업체 등록비	업체 규모별 상이	하기 참조
	전문가 교육비	업체당 약 775달러	온라인 비용 및 시험료 기준 (교육과정 Implementing SQF System Course: Manufacturing, Ed.8 기준)
인증대행비		업체당 약 500만~1,000만 원	품목별 업체별 상이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교육기관 홈페이지(<https://academy.alchemysystems.com>), SQF 홈페이지(www.sqfi.com/how-to-get-certified), 인증대행기관 유선 및 서면조사

<업체 규모별 등록비 구분>

분류	세부내용		등록비
A	1차 생산자(농장, 목장, 과수원 등)		150달러
B	매출액 500만 달러 미만		300달러
C	매출액 5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미만		400달러
D	매출액 2,500만 달러 이상 5,000만 달러 미만		550달러
E	매출액 5,000만 달러 이상		650달러
M	다중 사업장	주사업장	1,000달러
		각 지점	25달러

* 출처: SQF 홈페이지(www.sqfi.com/how-to-get-certified)

□ 필요 서류

- SQF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부합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 경영시스템 인증은 특정한 증명서류가 아닌 경영시스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의 준비가 요구됨

필요 서류 목록 예시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류
- 회사소개서
- 조직 및 업무분장
- 경영검토 및 내부 심사결과

HACCP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HACCP 인증	국가명	공통
마크		인증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각 국가별로 인증기관이 상이함)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권장 인증
		도입시기	1995년*
		유효기간	3년

* 주: 도입시기는 우리나라 기준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식품의 전 단계에 걸친 위생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됨 ◦ 국가마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인증 내용	◦ 국가별로 마련된 법적체계에 의해 위생적인 식품관리체계를 인증 받아야 함 ◦ 평가(심사)방식 등은 국제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음
적용품목	식품 및 축산물

□ 취득

취득 유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2019년 10월 31일 기준 6,400개 한국 업체 취득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나, 국가의 개별적 법률체계에 기반을 둔 인증 취득이 필요함		
소요기간	약 40일	소요비용	업체별 상이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1960년대 도입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식품의 전 단계에 걸쳐 위생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됨

- HACCP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 단계 등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생관리체계임
- 195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요청에 의해 Pilsbury社가 우주비행용 식품 개발을 위한 위생관리체계를 제시한 것이 HACCP의 시작임
 - 1980년대 일반화되어 1993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HACCP를 식품위생 관리지침으로 채택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식품위생법 제32조 2에 근거하여 HACCP 인증이 도입됨

□ HA(Hazard Analysis, 위해요소분석)과 CCP(Critical Control Point, 중요 관리점)을 규명하여 7원칙 12절차에 따라 인증함

- 위해요소분석은 원료, 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 관리점은 규명된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HACCP는 7원칙 12절차에 따라 인증체계가 적용됨
 - 7원칙은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단계별로 적용되는 주요 원칙임
 - 12절차는 5개의 준비단계와 7원칙의 본 단계로 구성됨
 - 준비단계는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용도확인, 공정흐름도 작성,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으로 진행됨
 - 7원칙은 위해요소분석, 중요 관리점(CCP) 결정, CCP 한계기준 설정,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방법 수립,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기록유지방법 설정으로 진행됨

□ HACCP는 국가별로 법적체계를 마련하여 품목에 대해 필수와 자율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필수품목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미국은 수산식품, 식육 및 가금류, 주스 등의 품목에 HACCP를 의무적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1차 생산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HACCP을 의무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HACCP 인증을 자율적 제도로 활용하고 있어 의무화 품목은 없음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제조업체	약 40일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2	서류검토	인증기관		-
3	현장실사	인증기관		-
4	평가 및 판정	인증기관		-
5	인증서 작성	인증기관		-
6	인증서 교부	인증기관		-

* 주: 취득단계는 국내 HACCP인증 취득절차이며, 식품을 기준으로 작성

*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국내 HACCP 인증 취득은 6단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됨
 - 신청업체가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인증업체에 제출하여 인증 취득절차가 진행됨
 - 인증기관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단계를 거쳐 신청업체의 적부 여부를 심사함
 - 신청업체가 HACCP 인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서 작성 후 인증서가 교부됨

□ 소요비용

- 인증심사 비용은 업체당 하기와 같이 부과되며 국내 인증 컨설팅업체를 이용할 경우 별도 컨설팅비용으로 약 500만~1,000만 원이 소요됨

구분	유형			인증심사비용	
취득비	식품	전품목, 전업종		20만 원	
	축산물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대	90만 원	
			중	81만 원	
			소	70만 원	
		보관·운반업		71만 원	
		식육판매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대	59만 원	
			소	35만 원	
		가축사육업, 종축업 및 부화업	대	42만 원	
			중	38만 원	
			소	33만 원	
	사료공장	배합사료공장	지정심사	정기심사	
			70만 원	35만 원	
TMR사료공장		지정심사	정기심사		
		약 54만 원	약 27만 원		
인증 컨설팅비용			500만~1,000만 원		

* 주: 인증 컨설팅비용 인증 컨설팅기관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비용으로 품목, 업체 규모,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다를 수 있음

*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site/haccp/sub.do?key=721)

□ 필요 서류

- HACCP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영업신고필증	대표자, 업체명, 주소, 영업의 종류, 실제 운영면적 확인
HACCP 교육수료증	- 경영인과정(대표자) - 종업원과정(종업원 중 1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일일 위생점검 기록 - 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기록 - 종사자 건강검진관련 서류 - 기타 식품별 영업을 위한 법적 서류
HACCP 관리기준서	- 선행요건관리 기준 서류 · 작업장 환경 점검 기록 · 조도기준 확인 기록 · 용수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용수탱크관리 서류(용수탱크 사용 시) · 제조시설 점검기록 · 작업 개선사항 기록 · 원료 입고검사 기록 · 포장자재 법적규격 확인서류 · 원료, 부자재, 완제품에 대한 정기적 검사 서류 · 계측기구 관리 서류 등 · 기타 관리기준 기록문서
	- HACCP 관리 서류 · CCP 모니터링 기록 · 한계기준 이탈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록 · CCP 검증관련 서류 · HACCP 교육기록 등 · 기타 관리기준 기록문서

[별첨] HACCP 인증 신청 관련서류

□ 인증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인증: 40일 연장: 60일

신청인	영업신고(등록) 번호		영업신고(등록) 연월일	
	영업소명		전화번호	
	E-mail :			
	소재지	본사		
		공장(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휴대전화	
HACCP팀장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신청 내용	HACCP적용 식품명(유형)		인증번호	
	HACCP적용 규모 ☐ 일반 ☐ 소규모			
	※ 소규모 HACCP : 해당품목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경우			
	HACCP적용 품목별(유형) 1년간 생산실적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수수료
	2.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원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0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서류검토
(HACCP 관리 계획서)

→

현지 확인
및 평가
(HACCP 실시
상황 평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

판정

→

결재

→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발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 등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의 제공 동의를 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함.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수집근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업소명, 인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수집목적	「식품위생법 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44조, 「사료관리법」 제16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유기간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사일정, 결과통지 및 법적사항 알림 등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공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제공목적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실적 보고
제공항목	업소명, 인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보유기간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에 따른 이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 HACCP 관련 정보제공 기술지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수집목적	국내·외 식품·축산물 안전 정책 동향 HACCP 관련 뉴스, 전문정보, 교육(행사)알림 등
보유기간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부한 내용 관련 서비스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동의자 업체명(농장명)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연 락 처 : _____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중

□ HACCP 계획서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HACCP 적용 유형(특성포함): 예) 과자(유방처리제품) 해당제품: 예) ○○랑, ○○과자 등									
(1) 중요 관리점	(2) 주요 위해	(3) 한계기준	(4) 대상	(5) 모니터링 방법	(6) 주기	(7) 담당자	(8) 개선조치	(9) 기록물	(10) 검증
예) 1B 가열(유방) 공정	예) 병원성 미생물 잔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 장출혈성 대장균 등)	예) 가열 온도 (유방온도): 000~000℃	예) 가열기 설정 온도 또는 가열기 표시 온도	예) 설정 온도(표 시온도) 육안 확인	예) 작업 시작 시, 작업 중 0시간 마다, 작업 종료 시	예) 가열 담당 홍길동	예) 1. 작업 중단 2. 온도 미달: - 가열기 이상 확인 - 온도 도달 시 작업 재개 - 재가열(또는 폐기) 3. 온도 초과: - 가열기 이상 확인 - 냉각 후 작업 재개 - 제품 이상 확인 후 다음공정(또는 폐기)	예) 중요관리점 점검표	예) 공정 검증 작업 전 온도계측 장치 정확도 확인, 1회/년 교정 월 1회 모니터링, 개선조치방법, 실행성 검증
		가열 시간 (유방시간): 00분00초 ~00분00초	가열기 설정 시간 또는 투입 후 경과시간	설정시간 육 안확인 또는 가열시간 타 이머 측정			1. 작업 중단 2. 시간 미달: - 가열기 이상 확인(또는 담당자 확인) - 재가열(또는 폐기) 3. 시간 초과: - 가열기 이상 확인(또는 담당자 확인) - 제품 이상 확인 후 다음공정(또는 폐기)		
		가열(유방) 후 제품온도: 00℃ 이상	제품온도 또는 제품품온	제품온도 ○ 온도계 측 정			1. 작업 중단 2. 온도 미달: - 가열기 이상(온도, 시간) 확인 - 제품 상태 확인 - 재가열(또는 폐기)		

GMP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GMP 인증	국가명	공통
마크		인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인증기관	국가별 인증기관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권장 인증
		도입시기	1969년
		유효기간	기준 준수여부를 1년마다 평가

* 주1: GMP 마크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표시한 마크는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GMP 마크임

* 주2: 건강기능식품 GMP의 필수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유의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 ◦ 근거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약처 고시)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인증 내용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자재 구입부터 제조, 포장, 보관, 출하까지 전체 공정에 걸친 품질관리에 대한 인증
적용품목	건강기능식품

□ 현황

취득 유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국내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업체 293개社(2019.06.30. 기준)		
타국가 통용여부	국가별로 자체적인 GMP 규정이 존재하여 개별적인 인증 취득 필요		
소요기간	14~20일	소요비용	5만 원~20만 원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969년 GMP를 발표하고 회원국에 이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인증으로 우수식품 및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임
 - 일반적으로 의약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건강기능식품(혹은 식이보충제) 분야에도 적용되는 인증임
 - 우리나라는 식품GMP와 관련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관련 법령이 제정됨
- GMP라는 용어는 1962년 미국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개정안에 최초 등장하여, 美 FDA가 1963년 세계 최초로 기준을 제정하고 공표함⁵⁾
 - 1950년대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라 미국, 독일 등에서 의약품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GMP의 필요성이 대두됨
 - GMP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현재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자리매김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도입하였으며, 1994년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에 KGMP를 규정하면서 의무화됨⁶⁾
 - 미국의 GMP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약품 GMP로 평가되고 있음

□ 국내에서 GMP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따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MP의 공통되는 주요내용은 3가지로 인위적 착오의 최소화, 오염으로 인한 품질변화 방지, 품질보증시스템 설계임
- GMP 근거법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국제적 유사성을 띄고 있으므로 국내의 GMP 기준을 통해 준수규격을 살펴봄

5) 우리나라 GMP 변천사, 백우현, 2014

6) 미국 및 유럽의 의약품 GMP 실사 동향 연구, 반은미 외 3명, 2019

구분	세부내용
시설평가	- 작업장: 구역의 분리, 배수 및 환기 시설, 조명 등 - 보관시설: 구역의 분리, 보관조건 등 -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시설 및 기구, 배치 등
기준서	- 제품표준서 - 제조관리기준서: 제조공정, 평면도, 계통도 등 - 제조위생관리기준서: 청소 대상 및 방법, 주기 등 - 품질관리기준서: 시험항목, 검사시설 및 기구 관리 등
구성 및 책임자	- 총괄책임자의 GMP 이해도 - 책임자의 지정 - 제조지시서의 발행 - 적절한 인원 배치 등
관리	- 제조공정관리: 출입제한, 청결상태 관리, 공정검사 등 - 제조위생관리: 시설 및 인원의 위생, 폐기물 처리 등 - 보관관리: 구분 보관, 출납기록서 작성 등 - 품질관리: 시험기록서 작성, 보존기준/유통기한 설정 등 - 시설관리: 청결상태, 정기점검, 기록관리 등 - 공통사항 관리: GMP실시여부 확인, 정기적 교육훈련 등 - 소비자보호: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한 대응 등

* 출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별표 1 <GMP 적용실시 상황평가표>

□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각 국가에서의 개별적인 GMP 인증 취득이 요구되며, 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GMP는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마련된 인증제도이나 각 국가별로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므로 진출국가에서 요구되는 GMP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명명되며, 국가별로 이에 대한 GMP 인증 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 GMP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임
 -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는 2019년 12월 1일까지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한 GMP 인증을 의무화함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GMP 지정신청서 접수	제조업체	(기존업체) 20일	지방 식약처에 제출
2	서류검토	지방 식약처		일반위생관리기준 및 GMP관리 기준서
3	현지 확인 및 평가	지방 식약처		GMP 실시상황 평가
4	판정	지방 식약처	(신규업체) 14일	-
5	GMP 적용업소 지정서 발급	지방 식약처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업무지침

- 국내 GMP 인증의 취득절차는 5단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됨
 - 신청업체는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 식약처에 GMP 지정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함
 - 지방 식약처는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해당 시설이 GMP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정함
 - 지방 식약처에 의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GMP 적용업소 지정서가 발급됨
- GMP 인증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제조업체의 경우 20일, 신규 제조업체의 경우 14일이 소요됨

□ 소요비용

- 국내 식약처를 통해 식품기업 자체적으로 GMP 인증을 신청할 경우 하기와 같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GMP 요건에 부합하는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함

구분	업체 구분	비용
수수료(수입인지)	기존 제조업체	20만 원
	신규 제조업체	5만 원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업무지침

- GMP 인증대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정도 소요될 수 있음⁷⁾

7) 해당 비용은 인증대행기관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비용으로 품목, 업체 규모, 심사일수, 인증기관 등에 따라 실제 취득비용은 다를 수 있음

□ 필요 서류

기존 제조업체	신규 제조업체
- 품목별 제조공정도 사본 - 제조공장의 건물 배치도와 작업장 평면도 (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증 사본 -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결과 및 관련 서류	-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 GMP 확인을 위한 4대 GMP 관리 기준서

2. 아시아권 인증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49



JAS 유기인증57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68



JGAP 인증74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	국가명	일본
마크		등록기관	일본 후생노동성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인증
		도입시기	-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일본의 식품위생법에 반하는 식품 등의 수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했으며,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근거규정 - 일본 식품위생법(しよくひんえいせいほう `昭和22年法律第233号) - 일본 후생노동성 생활위생국장 통지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제도 실시에 관한 통지”
등록 내용	- 일본의 식품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입 가공식품을 일본 후생노동성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수입절차를 간소화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 일본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이 기준규격 적합여부와 시설 및 식품 등의 위생 관리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음
적용품목	농축수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단순 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

□ 취득

취득 유형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는 국내 담당기관을 통해 등록 가능함		
취득현황	대만, 태국, 인도 식품 150~60개의 품목이 등록되어있음		
타국가 통용여부	일본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일본후생노동성의 업무처리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함	소요비용	없음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모든 수입식품은 일본 후생노동성 위생허가 대상이며 사전등록 제도를 통해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일본의 식품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가공식품을 일본 후생노동성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법에 위반하는 식품 등의 수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리제도임
 - 해외의 제조업체가 일본에 수출하는 식품의 품목을 사전에 등록하는 방식임
 - 기존의 수입식품 검사는 의무적으로 1년마다 시행했으나, 사전등록 제도를 통해서 3년 주기로 완화되었음
- 수입식품의 효과적인 감시지도를 실시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8년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을 발표함
 -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신고된 수입식품 약 122만 건 중 384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함
 - 위생 관리가 중요시 되는 식품은 수입 신고내용과 실제 식품의 동일성을 철저하게 확인하며, 식품 성분규격을 정확히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함
 - 수출국은 제품 생산 시 일본의 ‘식품용 기구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보에 관한 가이드 라인(2017년)’을 준수해야 함
- 수출업체는 일본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설 및 식품 등의 위생관리기준의 적합여부도 살펴보아야 함
 - 식품위생법 제 4조(의약품은 제외한 식품)과 제9조(질병·이상이 있거나 폐사한 짐승 및 가금류의 육류, 장기, 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해야함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증류주, 브랜디는 메탄올 함유율이 0.1%를 넘지 않을 것
 -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가공품은 기존 Pheophorbide 양이 100mg%를 초과하거나 총 Pheophorbide 양이 160mg%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유지로 처리한 과자는 제품 중에 함유된 유지의 산가가 5를 초과하거나 또는 과산화물가가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해파리 가공품, 캐비아는 붕소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사전등록제도는 자사공장 또는 OEM 생산을 통하여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농축수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단순 가공품 등을 제외한 가공식품이 해당됨

□ 제조 및 수출업체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수출 시 등록번호를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함

- 식품 등의 용기포장에 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화물에 첨부하는 방법이 있음

□ 등록기관정보

		등록기관
기관명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www.mhlw.go.jp/topics/yunyu/tp0130-1.html
연락처	담당부서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전화번호	+81-03-3595-2337
	팩스번호	+81-03-3503-7964
	이메일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서류 제출	제조 및 수출업체	업무 처리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함	사전확인신청서 제출
2	서류 접수 및 검토	국내 담당기관		-
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일본 후생노동성		-
4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 부여	일본 후생노동성		-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전등록제도는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에서 담당하며 국내 담당기관을 통해 해당 부서에 사전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은 일본후생노동성의 업무처리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함

□ 소요비용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심사비 및 등록비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별도로 명시한 비용은 없음
	실사비	실비	해외 심사원 항공료 및 숙박비
	제품시험비	-	업체별로 실시한 후 시험성적증명서 제출
컨설팅비		2개월 기준 품목당 약 100만 원	품목별 컨설팅업체별 상이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필요서류

-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시험성적증명서의 경우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국내외 검사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전등록을 위한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제품 목록, 위생검사표, 성분분석표 및 제조 공정도 등이 있으며 수입업체가 발급받은 시험성적 증명서 또한 제출할 수 있음
- 가공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상이하며, 국내 검사기관 등이 발행한 분석증명서와 식품위생책임자가 작성한 시설·식품 등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서류는 공통으로 구비하여야 함⁸⁾

구분	첨부서류 목록
식품	- 사용 원재료의 종류, 성분조성에 관한 서류 - 제조 또는 가공 방법에 관한 서류 - 사용하고 있는 첨가물의 종류, 제조방법, 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 사용원재료나 식품 등의 기준규격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등에서 발행한 분석 증명서 - 식품위생책임자가 작성한 시설·식품 등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서류
식품첨가물	- 물질명(해당첨가물이 화학적합성품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성분),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서류 - 해당 첨가물이 식품 등의 기준규격 등 별도로 정한 사항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등에서 발행한 분석증명서 - 식품위생책임자가 작성한 시설·식품 등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서류

8)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별첨]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 신청 양식⁹⁾

□ 신청서 양식

	2017年 月 日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 食品安全部長 殿	会社名 代表者氏名(捺印) 住所 電話
事前確認申請書 輸入食品など事前確認制度要綱に基づく食品などの事前確認を受けたく、下記のとおり関係書類を添えて申請します。 記 1. 食品などを製造又は加工する施設の名称 所在地 国名 2. 食品などの種類 名称 3. 添付書類 * 成分表 * 製造工程表 * 試験成績証明書 * チェックリスト 以上	

9)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제품 목록 양식

업 체 명

[illegible]

□ 위생검사표 양식

施設・食品等の衛生管理基準					
申請者 住所/氏名/署名(法人にあっては、その 所在地/名称/代表者名/代表者の署名)					
大韓民国			(印)		
第1 共通基準	(4) 適 不適 その他	(6) 適 不適 その他			
1.施設の管理	(5) 適 不適 その他	(7) 適 不適 その他			
(1) 適 不適 その他	(6) 適 不適 その他	6.管理運営要領			
(2) 適 不適 その他	(7) 適 不適 その他	適 不適 その他			
(3) 適 不適 その他	(8) 適 不適 その他	7.食品衛生責任者			
(4) 適 不適 その他	4.食品等の取扱い	(1) 適 不適 その他			
(5) 適 不適 その他	(1) 適 不適 その他	(2) 適 不適 その他			
(6) 適 不適 その他	(2) 適 不適 その他	(3) 適 不適 その他			
(7) 適 不適 その他	(3) 適 不適 その他	第2 業種別基準			
2.食品取扱設備の管理保全	(4) 適 不適 その他	業種名:			
(1) 適 不適 その他	(5) 適 不適 その他	(1) 適 不適 その他			
(2) 適 不適 その他	(6) 適 不適 その他	(2) 適 不適 その他			
(3) 適 不適 その他	(7) 適 不適 その他	(3) 適 不適 その他			
(4) 適 不適 その他	(8) 適 不適 その他	(4) 適 不適 その他			
(5) 適 不適 その他	(9) 適 不適 その他	() 適 不適 その他			
(6) 適 不適 その他	5.従事者に係る衛生管理	() 適 不適 その他			
(7) 適 不適 その他	(1) 適 不適 その他				
3.給水及び汚物処理	(2) 適 不適 その他				
(1) 適 不適 その他	(3) 適 不適 その他				
(2) 適 不適 その他	(4) 適 不適 その他				
(3) 適 不適 その他	(5) 適 不適 その他				
記載上の注意					
1.この書類は、別表の2の【施設・食品等の衛生管理基準】をもとに 施設ごとに作成すること。					
2.器具、容器包装又はおもちゃを製造する施設については、この書類を作成する必要はないこと。					
3.共通基準については、各基準ごとに適合している場合は「適」、適合しない場合は「不適」、どちらでもない場合は「その他」を○で囲むこと。					
4.業種別基準については、該当する業種名を記入し、当該業種に関する基準の項目番号を記入した上で(項目の番号がないものを除く)、上記2と同様に記入すること。					
5.各項目について、「不適」とした場合はその理由を、「その他」とした場合はどのような措置を講じているかを具体的に記した書類をこの書類に添付すること。					

□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양식

商品名	
製造者	製造者名 : 製造者 住所 : 代表者氏名 :
製造所	製造所名 : 製造所 住所 :

성분분석표(업체자율양식)
제조공정도(업체자율양식)

JAS 유기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JAS 유기인증	국가명	일본
마크		인증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시험 및 인증대행기관	농림수산성 등록인증기관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기능성 인증
		도입시기	2001년
		유효기간	무기한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유기’, ‘저농약’ 등 표시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품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 근거규정 - 일본 JAS법(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 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 -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에 관한 정보(食品表示に関する情報)
인증 내용	◦ 유기 JAS 규격에 적합한 제품 생산여부를 제3자가 검사하여 인증된 사업자가 JAS 유기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함 ◦ 유기농산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양 상태 및 재배 시 화학합성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JAS 인증 미취득 시 ‘유기’, ‘오가닉’ 표시 및 이와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적용품목	◦ JAS법에서 농림물자는 주류, 의약품을 제외한 음식료품 및 기름, 농림축산수산물 원료 및 이를 제조·가공한 물자로 규정하며, JAS 유기인증의 경우 유기농법에 의해 재배된 농산물 또는 유기 JAS 규격을 준수한 식품에 대해 부여함 -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등이 해당함

□ 취득

취득 유형	◦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심사 및 시험을 거쳐 인증 획득이 가능함 - 일본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JAS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		
취득현황	일본 내 약 1,500개 이상의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분 업체에서 JAS 유기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됨		
타국가 통용여부	◦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캐나다, EU 등의 유기인증을 인정함 ◦ 국내 유기농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JAS 유기인증을 취득해야 함		
소요기간	약 4주 이상	소요비용	품목당 약 345,000엔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1년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하여 이를 준수하는 제품에 한하여 JAS 유기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함
- 일본 내 유기농식품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인증으로, 2017년 기준 약 270만 톤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이 JAS 유기인증을 취득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집계됨¹⁰⁾
 - 일본 외 국가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은 약 250만 톤으로, 이는 일본 JAS 유기인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정되는 해외 국가의 제품을 포함한 값임
 - 이 중 약 10만 톤이 일본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식품제조과 기준인증실(食料産業局食品製造課基準認証室)에서 JAS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며 JAS 법령에 따라 등록인증기관에서 개별 인증 신청에 대해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함
 - 2006년 개정된 JAS법을 통해 일본 농림수산성은 적합여부를 인증하는 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에 위임함
 - 등록인증기관은 JAS 유기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기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2019년 9월 현재 일본 내 약 55개社와 외국기관 약 13개社가 등록인증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인증 비용은 각 인증기관별로 상이함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에서 등록인증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 JAS 유기인증은 제품 품질 이외에도 환경적 요소 등을 함께 평가하여 인증 취득이 까다로운 편임
 - JAS 규격은 일본의 유기 제품 수입 시 제품 표준으로도 활용됨
 - 유기농산물의 경우 하기와 같은 생산 요건을 준수해야 함

-
- 파종 및 정식 전 최소 2년 이상 퇴비를 사용하거나 금지된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작기 중 금지된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생산지와 주변 지역의 유기체 또는 잔류물 퇴비를 사용하여 토양 생산성을 유지할 것
 - 비료 및 토양컨디셔너는 허용되는 일부 경우에만 사용할 것
-

10)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html)

- 유기농산물의 이름을 기재할 경우 하기 라벨링 규정에 따라야 함

〈유기농산물 라벨링 규정〉

연번	라벨링	세부내용
1	有機農産物	유기농산물을 의미함
2	有機栽培農産物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되었음을 의미함
3	有機農産物 + 농산물명 농산물명(有機農産物)	유기농산물 ‘(농산물명)’ 을 의미함
4	有機栽培農産物 + 농산물명 농산물명(有機栽培農産物)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된 ‘(농산물명)’ 을 의미함
5	有機栽培 + 농산물명 농산물명(有機栽培)	유기농 ‘(농산물명)’ 을 의미함
6	有機 + 농산물명 농산물명(有機)	유기 ‘(농산물명)’ 을 의미함
7	オーガニック + 농산물명 농산물명(オーガニック)	유기농 ‘(농산물명)’ 을 의미함

* 주: 농산물명은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하며, 유기농산물 생산요건을 준수하는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에는 (1), (3), (6), (7)과 같은 라벨링을 사용할 수 있음

*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캐나다, EU 등 국가의 유기인증은 일본 JAS 유기인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정됨

- 일본은 해당 국가들과 유기 농산물 및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해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2002년 체결된 일본과 미국 간 수출협정으로 미국 유기농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일본 내에서 유기제품으로 표시하여 유통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유기제품의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해야만 일본에 유기제품으로 유통할 수 있어, JAS 인증 취득이 요구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www.maff.go.jp/j/shokusan/seizo/kaigo.html
연락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신청서 제출	생산업체	-	인증신청서 및 제반서류 (하기 참조)
2	인증신청서 수리	등록인증기관	1주 이내	-
3	인증신청서 서류심사	등록인증기관	약 4주 (30일 이내)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현장실사	등록인증기관 (또는 검사원)		신청인과 일정 조정 후 식품생산시설 등에 실사를 진행
5	판정	등록인증기관 (판정위원회)	2주 이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등록인증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6	인증 발급 및 사후관리	등록인증기관	-	-

*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JAS 유기인증 등록인증기관

- JAS 유기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일본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인증 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정하는 표준규격 부합여부를 심사함
 -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등록인증기관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함
- 현장실사 항목에는 △관리자 및 담당자 질의, △제조시설 등 현장검증, △생산 관련 기록 및 근거서류 확인 등이 있음
 - 현지실사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나, 현장실사를 중단하고 시정된 후 재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등록인증기관은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여부를 판정하며 신청인은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등록인증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인증 취득 후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며 표준규격 준수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인증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인증기관에 알려야 함

□ 소요비용

- 일본 농림수산성 등록인증기관에서는 자체 비용을 산정하고 있어 기관별 비용에 차이가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서 등록인증기관과 기관별 비용 기준을 게시하고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 등록인증기관 목록(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 일반적으로 취득 단계별로 비용을 책정하고 있으며 현장실사 시 소요되는 등록인증 기관 심사원의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은 실비로 추가 청구될 수 있음

구분	항목	비용		비고
		A社	B社	
취득비	신청비	1건 당 145,000엔	1건 당 1,700달러	등록인증기관별 산정 기준 및 화폐단위 상이
	서류심사비	1건 당 36,000엔	1건 당 100달러	-
	현장실사비 (기본 비용)	1건 당 36,000엔	1일 당 300달러	항공료 및 숙박비 실비 청구
	보고서 작성 수수료	1건 당 36,000엔	1건 당 300달러	제품시험은 업체별로 실시한 후 시험성적증명서 제출
	인증 발급 판정 수수료	1건 당 92,000엔	1건 당 200달러	-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등록인증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필요서류

- 일반적으로 JAS 유기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구분	서류 목록
필요 서류	◦ 인증신청서 ◦ 신청자명 및 주소 ◦ 인증 품목 종류 ◦ 제조/가공 장소명 및 소재지 ◦ 인증 상 기술적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첨부 서류	◦ 시설도면 ◦ 생산행정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 및 등급규정 ◦ 수질검사서 ◦ 사용하는 유기 원자재 수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비유기 원자재가 유전자변환 및 방사선 조사를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조예정 제품의 배합표 ◦ 사용예정 첨가물이 JAS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조공정도 ◦ 공정 내 사용되는 약제의 내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서류 ◦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류 목록 ◦ 기록서식
질문서	◦ 원활한 서류심사 진행을 위해 질문 형태의 기재사항이 요구되기도 함

[별첨] 인증 취득 시 필요서류¹¹⁾

□ 인증신청서

작성일: 년 월 일			
인증신청자 개요 (유기농산물 생산 행정 관리자)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조직형태	☐ 개인	☐ 법인	☐ 생산자 그룹
농업형태	☐ 유기전문	☐ 유기와 비유기 병용	
외부 위탁 시설	☐ 유	☐ 무	
주로 재배하는 작물			
주소			
전화			
FAX			
휴대전화			
MAIL주소			
HP주소			
담당자명			
가장 가까운 역	라인(지하철)		역
역에서의 접근성	☐ 도보 分	☐ 자동차 分	
※근처 역에서 포장·작업장 등의 시설·사무소의 위치 관계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11) 등록인증기관별 서류 양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농지 정보

작성일: 년 월 일							
농지 지도							
생산 행정 관리자명 (생산자 명)							
※논의 경우 수계그림 또는 용배수로의 상황을 기입하십시오. ※ 농지 주변 금지 자재의 혼입·오염 방지책을 명확하게 기입하십시오.							
농지 번호		농지 이름		농지 면적 (a)			비고
←북 농지 및 주변 상황					관행/ 유기	거리(m)	완충지대 등의 상황
				①			
				②			
				③			
				④			
				⑤			
농지 번호		농지 이름		농지 면적 (a)			비고
←북 농지 및 주변 상황					관행/ 유기	거리(m)	완충지대 등의 상황
				①			
				②			
				③			
				④			
				⑤			
농지 번호		농지 이름		농지 면적 (a)			비고
←북 농지 및 주변 상황					관행/ 유기	거리(m)	완충지대 등의 상황
				①			
				②			
				③			
				④			
				⑤			

□ 시설도면

작성일: 년 월 일

시설 도면

생산 행정 관리자명 (생산자 명)

※ 넓이, 구조, 유기작업장 유기 보관 장소가 아닌 유기보관 장소, 비료의 보관 장소, 증표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기입 해주십시오.

※ 별도 도면 등이 있는 경우, 필요사항을 쓰고 더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주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십시오.

넓이	면적	m ²			
밝기	창문면적	m ²			
	조명	W× 개			
구조	W구조	RC조	SRC조	S조	RS조
급수	물 종류	☐ 우물 물 ☐ 상수도			

□ 시설·기계·기구 등 목록

작성일: 년 월 일					
시설·기계·기구 등 목록					
생산 행정 관리자명 (생산자 명)					
1. 시설 관리					
	소유 개수	소유자	유기 전용 or 비유기 병용	약제 등의 사용 상황 및 대처	비 고
하우스 (호장 제외)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창고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출하장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냉장고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2. 기계 · 기구 관리					
	소유 개수	소유자	유기 전용 or 비유기 병용	약제 등의 사용 상황 및 대처	비 고
트랙터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콤바인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제초기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모내기기계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과일선별기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건조기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미분기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개인	전용		
		공동	병용		
		위탁			

※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재배기록지

■재배기록		유기 · 전환기간 중 · 기타		수확시기				/ 페이지						
생산행정관리자 (생산자명)				작형		노지 · 하우스/터널 등								
				씨앗		자가 채종 · 종자매입/유기 · 비유기성								
작목명				육묘		자가 육묘 · 매입묘/유기 · 비유기성								
품종				육묘장소										
육묘용 자재	■재배계획				■실시기록(자재명, 사용수량 등)									
본포용 자재	■재배계획				■실시기록(자재명, 사용수량 등)									
농원	농지번호				농지번호									
	농지명				농지명									
	작부예정 면적(a)				작부예정 면적(a)									
재배·출하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년	월	일	수 확 량 (예 정)	생육계획				년	월	일	수 확 량 (예 정)	작업기록 (투입자재, 제조 · 병해충방제대책, 종묘사용량, 등급부기록등)	
합계		0		수확예정수량				합계		0		수확예정수량		
계 획 작 성 일				생 산 행 정 관 리 확 인 일				등 급 부 담 당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육묘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농지별재배계획·결과기록

■ 농지별재배계획·결과기록																
생산행정관리자명 (생산자명)																
농지번호/농지명																
면적		a														
인정종류		☐ 유기					☐ 전환기간 중									
주위오염방지책																
재배계획																
파종기○-○정식기△△수확기□-□																
농작명	작부면적	예상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재배결과																
파종기○-○정식기△△수확기□-□																
농작명	작부면적	예상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	국가명	일본
마크		등록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기능성 인증
		도입시기	2013년
		유효기간	무기한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고령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용 식품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식품의 범위를 넓혀 씹거나 삼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 모두를 위한 식품 기준을 도입함 - 근거규정 - 일본 농림수산성 저작배려식품 JAS 규격
인증 내용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것이 곤란한 소비자를 위해 식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점도를 높인 식품의 경우, 유형과 정도에 따라 라벨을 구분하여 인증을 부여함
적용대상	젤리, 푸딩, 무스 및 죽 형태의 부드러운 식품이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보충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에 적용할 수 있음

□ 현황

취득유형	국내에서도 취득 가능함		
취득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일본 개호식품협의회에 등록된 제조사는 약 81개 사로 집계됨 2017년 기준 16개 업체 64개 제품에 청색 마크 부여		
타국가 통용여부	일본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2개월 이내	소요비용	없음(온라인 등록)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저작 및 연하 기능¹²⁾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용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으로, 주로 식감이 부드럽고 삼키기 용이한 제형이 해당됨

-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식품, 점도조정식품, 종합영양식품, 수분보급형 젤리, 음료 등이 해당됨¹³⁾
 - 부드러운 식품은 저작이나 연하기능 저하자용으로 제조되어 일반 식품을 부드럽게 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점도조정식품은 액체 형태에 가깝게 점성을 높여 마시기 편한 형태의 보조식품을 의미함
 - 종합영양식품은 소량으로도 에너지를 비롯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며 수분보급형 젤리는 액체 형태로 마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섭취자를 위한 젤리 상태의 음료가 해당됨

□ 스마일케어 인증은 일본 내 민간 개호식품 기준을 확대하여 영양 공급이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식품까지 포함함

-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기준으로 2003년 일본 개호식품협회에서 제정된 유니버설디자인푸드(UDF, Universal Design Food)가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은 개호식품, 간호식품 등의 용어가 지니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은 스마일케어 식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함
- 일본 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자용 식품시장이 확대되며 스마일케어 인증이 주목받고 있음

□ 스마일케어 인증은 식품의 형태 및 용도에 따라 7가지 등급으로 분류됨

- 스마일케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마크 색을 달리함

〈스마일케어 라벨별 구분〉

구분	라벨	세부내용
청색 라벨		◦ 저작 및 연하기능에 문제는 없으나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 공급용 식품에 부여하는 것으로 열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충족을 의미함 - 100g(또는 100ml)당 100kcal 이상의 열량, 100g당 8.1g 또는 100ml(또는 100kcal)당 4.1g의 단백질 함량기준을 충족한 경우

12) 저작(咀嚼)이란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을 의미하며 연하(嚥下)는 입속에 있는 음식물을 삼키는 것을 뜻함(출처: 국립국어원)

13) 일본의 고령자 개호식품 실태분석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01)

<스마일케어 라벨별 구분>

구분	라벨	세부내용
황색 라벨		◦ JAS 규격(저작배려식품)을 준수하며 저작 기능에 문제가 있는 소비자를 위한 식품에 부착함 ◦ 부드러운 정도와 형태에 따라 2~5등급으로 구분하며 숫자가 작을수록 부드러운 식품임 - 2등급 : 씹지 않아도 되는 식품 - 3등급 : 혀로 으갠 수 있는 식품 - 4등급 : 잇몸으로 으갠 수 있는 식품 - 5등급 : 쉽게 씹을 수 있는 식품
		
		
		
적색 라벨		◦ 일본 후생노동성 특별용도식품 표시허가제도(건강증진법)에도 포함되는 분류로, 연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소비자를 위한 식품에 부여함 - 연하곤란자용 식품 표시허가가 필요함 ◦ 부드러운 정도와 형태에 따라 0~2등급으로 구분함 - 0등급 : 그대로 삼킬 수 있는 젤리 형태와 유사한 식품 - 1등급 : 일정 정도 으개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 2등급 : 덩어리가 있는 죽 형태 식품
		
		

* 출처: 일본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www.maff.go.jp/j/shokusan/seizo/kaigo.html)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일본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		www.maff.go.jp/j/shokusan/seizo/kaigo.html
연락처	담당부서	식품산업국 식품제조과
	전화번호	+81-03-3502-8111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 식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연장 및 갱신 신청자는 일본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일케어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 신청	제조업체	2달 이내	2,000자 이내로 신청서 작성
2	신청 확인 및 서류 적부심사	일본 농림수산물성		-
3	인증마크 발급	일본 농림수산물성		-

* 출처: 일본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www.maff.go.jp/j/shokusan/seizo/kaigo.html)

- 일본 농림수산물성 인증 신청 사이트에 하기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인증별로 요구하는 서류는 메일로 별도 제출함¹⁴⁾
 - 청색 라벨은 자기적합선언 및 상품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을 메일로 제출하고, 황색 라벨은 저작배려식품에 대한 JAS 규격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적색 라벨을 신청할 경우 특별용도식품 표시 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메일주소 : smilecare-foods@maff.go.jp

<스마일케어 인증 신청 기재사항(공통)>

구분	기재사항(일본어)	기재사항(국문 번역)	필수여부
1	企業名	회사명	필수
2	貴社業態	업태	필수
3	代表者氏名	대표자명	필수
4	代表者役職名	대표자 직위	필수
5	申請者氏名	신청자명	필수
6	申請者所属・役職名	신청자 소속・직위	필수
7	郵便番号	우편번호	필수
8	住所	주소	필수
9	電話番号	전화번호	필수
10	メールアドレス	이메일주소	필수

14) 일본 농림수산물성 스마일케어 인증 신청(www.contactus.maff.go.jp/j/form/shokusan/seizo/161130_5.html)

구분	기재사항(일본어)	기재사항(국문 번역)	필수여부
11	利用する識別マークの色	신청하는 인증(청색/황색/적색) ※복수선택 가능	필수
12	マークを用いる商品名	인증을 신청하는 상품명 ※여러 상품에 대해 신청할 경우, 모든 상품명 기입	필수
13	商品の状態	상품 상태 ※미공개 제품일 경우 이메일로 자기적합선언 사본 송부	필수
14	未公表の商品の場合は、商品概要及び公表日又は公表予定日を記載してください	미공개 제품일 경우, 제품 설명 및 공표일 또는 공표예정일 기재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5	識別マークを利用する媒体	인증을 표기하는 대상 (포장/POP/브로셔/포스터/카탈로그/잡지/기타) ※복수선택 가능	필수
16	その他を選択した方はその内容	상기 인증표기 대상 중 기타를 선택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7	商品の販売地域	제품 판매지역	필수
18	1年あたりの生産予定数量	연간 생산예정량	필수
19	利用許諾要領の別添1に掲載する様式によるマークの利用が困難な場合は、その理由	인증마크 양식에 따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함	필수
20	マークの利用開始日	인증마크 이용 개시일 ※인증마크 이용 승인날짜 이외의 날짜로 희망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1	利用規約	이용약관 동의여부(동의/비동의)	필수

* 주: 일본 농림수산물성 스마일케어 인증 신청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순서대로 기재한 것이며 이해를 돕고자 일부 의역함
(2019년 11월 기준)

* 출처: 일본 농림수산물성

□ 소요 비용

- 스마일케어 인증의 경우 일본 농림수산물성에 신청한 후 조건 충족 시 인증 라벨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인증 취득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필요 서류

- 연하곤란자용 식품에 적색 라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특별용도식품 표시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기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 신청을 한 후 지정 연구소 등을 통해 제품 실험을 받아야 함

-
- 허가 신청서
 - 신청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기부 행위의 사본
 - 시험 검사 성적서
 - 표시 견본
 - 규격 또는 요구 사항에 적합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 자가 시험 실시 결과
 - 설비의 개요 및 품질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서
 - 기타 해당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자료
 - 신청자가 공급자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제조 위탁 계약서 사본
-

JGAP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JGAP 인증 (Japan Good Agricultural Practice)	국가명	일본
마크		인증기관	일본 JGAP협회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기능성 인증
		도입 시기	2006년
		유효기간	2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형 농업과 연계하고자 하며 글로벌 GAP와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근거규정 - Japan Good Agricultural Practice 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 (for Group Administration) 20160901 등 - 일본 농림수산성 GAP 공통기반지침(GAPの共通基盤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인증 내용	- 식품 및 노동 안전과 환경을 통제 지점과 준수 기준을 모니터링함 -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 해당 농산물이 식품의 안전성, 환경보전형 농업, 노동의 안전을 배려한 농장 또는 단체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일본 GAP 협회가 인증한 JGAP 심사·인증기관에서 생산현장에 방문하여 JGAP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 관리·단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함
적용대상	야채, 과일, 곡물, 차, 축산으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우유, 육우, 돼지, 계란, 닭, 팔, 강낭콩, 보리, 참깨, 울무, 밀, 우롱차, 녹차, 아보카도, 살구, 무화과, 감귤, 키위, 은행나무, 밤, 호두, 바나나, 포도, 사과, 딸기, 상추, 호박, 갓, 팽이버섯, 파프리카 등)

□ 현황

취득유형	국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일본 내에서만 4,500개 농장에서 취득함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기준 Global GAP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됨		
소요기간	약 4주(사전준비기간 제외)	소요비용	품목당 128,000엔 이상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JGAP 인증은 농축산물의 생산 공정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기준으로 식품 안전을 비롯한 작업 안전, 환경에 대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JGAP 인증은 식품 안전성, 환경보호, 노동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농장 관리 기준이며, 농산물 재배 방법을 규정하는 JAS 유기인증과는 차이가 있음
 - 일본 JGAP 협회는 농축산물의 JGAP 기준서를 제공하고 있어 JGAP 인증 신청인은 사전에 자체 평가를 진행하여 준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¹⁵⁾
 - JGAP 인증은 식품 안전성, 환경보호, 노동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농장 관리 기준이며, 농산물 재배 방법을 규정하는 JAS 유기인증과는 차이가 있음
- 2017년 기준 일본 내 약 4,500개 농장에서 JGAP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2019년 말까지 JGAP 인증 취득 농장의 수를 13,500개 이상으로 늘리고자 함¹⁶⁾
 - 또한 2030년까지 일본산 농산물 산지 대부분에서 국제적 수준의 JGAP 기준을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 JGAP 인증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 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할 수 있음
 - 최초 심사와 갱신 심사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며, 갱신 심사 전에 JGAP 심사 및 인증기관으로부터 유지 심사를 1회 받아야 함
 - 유지 심사 시점은 JGAP 심사 및 인증기관에 지정하며, 주로 주요 생산 공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실시함
 -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지 심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 JGAP 인증은 국제기준인 Global GAP 인증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식품안전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인증임
 - JGAP 취득 시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경우 JGAP 인증과 Global GAP 인증¹⁷⁾ 2가지 모두 발급됨
 -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시설 등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JGAP 인증 취득이 요구되고 있음

15) 일본 JGAP 기준서(2016), 일본 JGAP 협회 홈페이지(http://jgap.jp/LB_01/JGAP_B2016FV_en161027.pdf)

16) 일본 자민당 농림수산업 정책 실행팀(출처: www.jacom.or.jp)

17) 2007년 기준 EUREP GAP에서 Global GAP으로 명칭 변경됨

3. 취득절차

□ JGAP 인증은 농장 수준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개별 심사 및 인증’ 과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단체 심사 및 인증’ 으로 구분됨

- 농장에는 개인 농가(개인 사업자), 농업생산법인 등이 해당되며, 단체는 일본 전농(JA) 또는 전농 부회, 기타 생산자단체 등 여러 농업경영체가 모인 형태가 해당됨¹⁸⁾

□ 개별 JGAP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사전 준비	생산자	3개월 이상	인증 신청 전 자체 점검
2	심사 신청	생산자	-	농장 규모, 작물 수 등 심사비용 사전 견적 필요
3	심사 진행	인증발급기관	심사 당일 (4시간~8시간)	서류심사, 현장실사, 생산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됨
4	판정	인증발급기관	심사 후 4주 이내	부적합 판정 시 시정 후 재심사 및 인증기관에 송부
5	JGAP 인증서 발급	인증발급기관	-	-

* 출처: 일본 JGAP 협회(http://jgap.jp/navi_02/index.html#shidouinkara_shidou)

□ 단체 JGAP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사전 준비	신청인	3개월 이상	인증 신청 전 자체 점검
2	심사 신청	신청인	-	-
3	심사 진행	인증발급기관	2~3 일	-
4	판정	인증발급기관	심사 후 4주 이내	-
5	JGAP 인증서 발급	인증발급기관	-	-

* 출처: 일본 JGAP 협회(http://jgap.jp/navi_02/index.html#shidouinkara_shidou)

- 인증 취득을 신청하기 전 생산자는 JGAP 기준에 맞는 농장관리를 우선 수행해야 함
 - 농장 운영책임의 명확화, 생산 환경 사전 점검, 직원 교육, 생산기록 자체 심사 등이 수반되며, 단체의 경우 단체·농장의 관리매뉴얼 검사, 내부 감사계획 등이 포함됨

18) http://jgap.jp/navi_04/index.html#Q_1_7

□ 소요비용

구분	항목	비용		비고
		A社	B社	
취득비	신청비	-	1건 당 10,000엔 (단체인증 30,000엔)	-
	심사비	기본(4시간) 68,000엔 (초과 시 30분 당 2,000엔 추가)	심사 시간에 따라 상이	-
	현장실사비	실비		항공료 및 숙박비
	생산자 등록 수수료	10,000엔	-	-
	인증 발급 수수료	-	10,000엔	-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발급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JGAP 인증 로고 사용 시 일본 JGAP 협회에 사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인증 취득 후 농축산물에 JGAP 로고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용자는 일본 JGAP 협회의 신청 서류에 기재사항을 기입 및 날인하여 제출함
 - 협회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사용자에게 계약서 초안을 발송하며, 사용자는 계약서를 확인하여 협회와 협의 하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진행함
 - 계약 체결 후 협회는 사용자에게 로고 데이터를 발송함
 - 신청한 내용, 로고 디자인, 상세 문구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협회에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로고 사용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항목		비회원	협회회원
발행수수료 (첫해 임대료 포함)		50,000 엔 (세금별도)	30,000 엔 (세금별도)
연간 사용료 (전년도 발행 매수에 따라 상이함)	연간 발행매수 10만 장 이하	10,000 엔 (세금별도)	10,000 엔 (세금별도)
	10만~ 50만 장	30,000 엔 (세금별도)	20,000 엔 (세금별도)
	50만 장 이상	50,000 엔 (세금별도)	30,000 엔 (세금별도)

* 출처: 일본 JGAP협회 로고인정사용세칙(http://jgap.jp/LB_01/JGAPmarksaisoku190614.pdf)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일본 JGAP협회
홈페이지		http://jgap.jp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81-3-5215-1112
	팩스번호	-
	이메일	info@jgap.jp
기타		-

□ 교육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유형	기관명	홈페이지 및 연락처
교육기관	일본 농업개선진흥협회	www.jadea.org/shoukai 81-3-5561-9561
	S&S 인증 주식회사	www.safe-secure.jp 81-90-9966-7614
인증기관	주식회사 홋카이도 유기인증센터	http://www.accis.jp 81-11-375-0123
	액세스 서스펜션	http://certification.bureauveritas.jp/cer-business/jgap 81-45-651-4770
	뷰로베리타스 재팬	http://certification.bureauveritas.jp/cer-business/jgap 81-45-651-4770
	일본능률협회컨설팅	http://www.jma.or.jp/jmaqa/service/jgap.html 81-3-3434-1446
	일본 축산산업협회	http://jlia.lin.gr.jp 81-3-6206-0840
	SMC	www.swine-smc.co.jp 81-46-248-7720

중국



AQSIQ 인증81



중국 유기산품 인증87

AQSIQ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AQSIQ 인증	국가명	중국
마크		인증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인증
		도입시기	-
		유효기간	3~5년(식품 유형별 상이함)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수입식품 관리를 위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관계당국에 등록을 요구함 - 근거규정 - 중국 식품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63조(수입식품 위생 신고) 65조(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 등록) 66조(중문라벨 및 중문설명서) - GACC/AQSIQ Notic No.133 - AQSIQ Notic No.133 - GACC/AQSIQ Notic No.135
인증 내용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생산 및 수출업체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온라인시스템에 회사 정보를 등록해야 함
적용품목	- AQSIQ에서 적용하는 품목은 대부분의 식품이 적용됨 - 수입식품(주류, 설탕 및 감미료 포함),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 취득

취득 유형	국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2019년 11월 기준 65개국 약 27,800개 이상 식품 생산 및 수출업체가 등록함		
타국가 통용여부	중국 내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약 5일(일반식품)	소요비용	업체당 350~1,020달러 (수입식품의 경우)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2018년 3월 중국 국무원이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신설되었으며 수입식품 통관 업무가 해관총서(海关总署)로 이관하여, 2019년 11월 현재까지 조직개편 후속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이 통폐합된 것으로, 관련 부서와 담당 직제를 구체화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 감독 기능이 이전보다 강화됨¹⁹⁾
 -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인증 및 인허가 등 업무를 모두 포괄하게 되어 중국으로 식품 수출 후 유통단계까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입식품 통관 및 검역 업무는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에서 전담하며 수입식품의 항구 검사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함
- 신설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식품안전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함

□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및 해관총서(GACC) 시스템²⁰⁾에 전산 등록 후 중문라벨을 인쇄해야 함

- 모든 해외 식품 생산업체, 수출업체, 중국 내 수탁인 등은 AQSIQ 수출입식품안전국에 온라인으로 회사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함
- 온라인을 통해 최초 1회 신청 후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며, 발급받은 등록번호는 해관총서 데이터베이스²¹⁾를 통해 검색 가능함
 - 온라인 신청페이지(www.aqsiq.net/application/food-register)에서 등록신청비 결제 후 업체 정보를 제출함
 - AQSIQ 시스템은 중국 세관시스템과 연동되어 업체 정보를 공유하며 발급된 등록번호는 중국 세관 신고 시 활용됨
 - 이에 따라 중국 AQSIQ는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가 신청인으로 직접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국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가 대신 진행할 경우 통관 및 유통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
 -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시스템 등록을 완료한 업체명 및 국가, 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기준 65개국의 약 27,800개 업체가 등록됨

19)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www.gov.cn/zhengce/2018-09/10/content_5320813.htm)

20) 2019년 11월 기준 식품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시스템은 AQSIQ 및 해관총서(GACC)에서 관리함

21) 중국 해관총서 식품 등록번호 검색사이트(www.gacc.app/gacc-aqsiq-food-register-search.html)

□ 식품 유형에 따라 등록 요구사항 및 등록 신청비에 차이가 있으나 등록 절차는 동일함

- 식품 유형별로 제품 검사 및 등록신청비 등이 상이함

구분	식품 유형	등록 상세내용
수입식품 등록	◦ 식품 통조림, 가공식품 등 ◦ 코코넛 음료, 혼합과일주스 등 ◦ 보드카, 위스키, 진, 위스키, 테킬라, 와인, 맥주, 막걸리 등 ◦ 맛설탕, 소다, 베이킹 파우더, 기타 감미료 등	◦ AQSIQ는 해외 수출업자를 돕기 위해 수입식품 목록 및 유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www.aqsiq.net/imported-food-list) ◦ 등록신청비 230달러
유제품 등록	우유, 분유, 농축 우유 등 유제품	◦ GACC/AQSIQ Notic No.133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됨 ◦ 입국항에서 통관 전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2018년 5월 1일 이후 처음 수입되는 경우 신규 수입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중국 세관지역을 통해 동일한 제품을 후속 수입하는 경우 반복수입으로 간주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시험보고서에 차이가 있음 ◦ 등록신청비 890달러
육류 등록	◦ 조리, 냉장, 냉동, 절입 ◦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사슴고기, 가금류 ◦ (몽골산 말고기) ◦ 고유식별자를 통해 생산지를 추적하거나 입국항 및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소고기 ◦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 배송시점까지 식별 및 통제 가능한 죽은 동물,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 AQSIQ Notic No.133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 AQSIQ 등록 시에는 유제품 검사보고서 또는 인증서, 회사의 상업용 인증서, 원산지증명서, 등록 신청서, 수출국 공식라이센스 등을 제출함 ◦ 등록신청비 825달러
해산물 등록	◦ (대서양)연어, 청어, 정어리, 참치, 가다랑어, 고등어, 틸라피아, 메기 등 ◦ 생선 및 상어 지느러미 통조림, 철갑상어알 대체품 등 ◦ 게, 새우, 랍스터 등 갑각류 ◦ 굴, 조개, 전복, 해삼, 해파리, 오징어, 수생 무척추동물 등	◦ GACC/AQSIQ Notic No.135에 따라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모든 외국 해산물 가공공장, 어업 및 해산물 운송/가공 선박, 냉장보관시설 등은 AQSIQ에 등록해야 함 ◦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등록신청서, 해산물 검사 보고서 또는 인증서,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공식라이센스 등이 있음 ◦ 등록신청비 575달러

* 출처: 중국 AQSIQ인증 홈페이지(www.aqsiq.net)

- 중국으로 신규 수입되는 유제품의 경우 2017년 중국 위생부에서 발표한 하기 국가표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함
- AQSIQ 등록 시에는 유제품 검사보고서 또는 인증서, 회사의 상업용 인증서, 원산지 증명서, 등록 신청서, 수출국 공식라이선스 등을 제출함

시험범위	국가표준번호	시험범위	국가표준번호
원유	GB19301-2010	유청 분말 및 유청 단백질 분말	GB11674-2010
저온살균우유	GB19645-2010	크림버터 및 무수유지방	GB19646-2010
멸균우유	GB25190-2010	치즈	GB5420-2010
조제유(modified milk)	GB25191-2010	영아용 조제분유	GB10765-2010
발효유	GB19302-2010	프로세스 치즈	GB25192-2010
분유(milk powder)	GB19644-2010	영아 및 아동용 시리얼 기반 보충식품	GB10769-2010
발효유	GB19302-2010	영아 및 아동용 통조림 보충식품	GB10770-2010
무가당연유(evaporated milk), 가당농축우유 및 조제농축우유	GB13102-2010	유아 및 아동용 분유	GB10767-2010

- 수입 육류 제품의 경우 첨가제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중국으로 수입되는 육류 제품은 성장촉진제, 사료첨가제 및 락토파민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입국항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로 반송되거나 폐기됨
- 중국으로 처음 수입되는 해산물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검사, 독소 검사, 방사능 탐지, 미생물 검사 등의 검사를 수행해야 함

☐ 등록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내에 인증서 또는 등록번호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AQSIQ
홈페이지		www.aqsiq.net
연락처	담당부서	등록 및 인증 프로세스 서비스
	전화번호	+86-400-665-9988 / +1-662-448-3466(해외인증서비스)
	팩스번호	-
	이메일	info@aqsiq.net
기타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AQSIQ 온라인 등록)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온라인 등록 신청	수출업체	약 5일	-
2	등록 신청비 결제 및 신청서 제출	수출업체		온라인 등록사이트를 통해 카드결제 가능함
3	승인 및 등록번호 발급	AQSIQ		-

* 출처: 중국 AQSIQ 홈페이지

- 온라인 등록 시 식품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정보를 제출함²²⁾
 -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의 이름, 국가, 지역, 주소, 연락처, 식품 카테고리 등 정보를 제출함
- 신청 후 승인까지 일반식품은 약 5일이 소요되는 반면 유제품·육류제품·해산물은 약 3-4주가 소요됨
- 등록 유효기간 또한 식품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일반식품 3년, 유제품 5년으로 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소요비용

- 중국 AQSIQ에서 산정한 수입식품 등록비 및 국내 컨설팅비용은 하기와 같음

구분	항목	식품 등록	육류제품 등록	유제품 등록	해산물 등록
등록비	등록 신청비	230달러	825달러	890달러	575달러
	장비검토비	-	시간당 65달러	시간당 65달러	-
	제품시험비	시간당 85달러	시간당 85달러	시간당 85달러	시간당 85달러
기타	세관 검사 수수료	개당 35달러	개당 45달러	개당 45달러	개당 55달러
컨설팅비		품목당 100만 원	품목당 200만 원	품목당 200만 원	품목당 200만 원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중국 AQSIQ 홈페이지(www.aqsiq.net/certification-cost.htm), 국내 컨설팅기관

22) www.aqsiq.net/application/food-register

[별첨] AQSIQ 온라인등록 신청양식

GACC AQSIQ Application Form					
Order Information					* Required Fields
Description:					
Item	Description	Qty	Taxable	Unit Price	Item Total
Food	Registration AQSIQ Application Fee	1	N	\$230.00 (USD)	\$230.00 (USD)
					Total: \$230.00 (USD)
Payment Information					
					
Card Number:	* (enter number without spaces or dashes)				
Expiration Date:	* (mmyy)				
Card Code:	* What's this?				
Billing Information					
First Name:	*		Last Name:	*	
Company:	*				
Address:	*				
City:					
State/Province:		Zip/Postal Code:			
Country:	*				
Email:	*				
Phone:	*				
Security Code					
					
Please enter the security code above.					
I cannot read the code., please provide a new one.					
GACC AQSIQ Certification or registration enables you to document conformance to Specified China Customs requirements and thus assist consumers in choosing the right product or service to meet their needs in China market.					
Pay Now					

* 출처: AQSIQ 온라인등록사이트(www.aqsiq.net/application/food-register)

중국 유기산품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유기산품인증(有机产品认证)	국가명	중국
마크		인증기관	중국품질인증센터(CQC) 중국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기능성 인증
		도입시기	2014년 4월(신규정 적용)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유기산품 인증을 통해 중국 내 유통되는 유기농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유기농 제품 인증에 대한 관리 조치(AQSIQ No.67) - 유기제품 인증 구현 규칙 - 유기농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GB/T 19630-2011) -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GB/T 19630.1, GB/T 19630.3) - 유기제품인증실시규칙(GB/T 19630.2, GB/T 19630.4)
인증 내용	- 중국 국가 유기농표준 및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에 따라 유기제품의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심사함 - 유기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가공제품의 경우 유기산품 인증을 취득하여 포장 및 라벨링에 ‘유기(Organic)’ 를 기재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적용대상	- 유기제품인증목록([별첨1] 참조)에 포함된 약 120개 품목 - 곡물, 채소, 과일, 가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포함함([별첨1] 참조)

□ 현황

취득유형	- 국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 한국 내 ISO17025 기준을 준수하는 국제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인정함		
취득현황	2016년 한국산 중 유기산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9개로 집계됨		
타국가 통용여부	중국 내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2~6개월	소요비용	품목당 2만 위안 이상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중국에서는 유기농 식품,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에 대한 표준을 각각 제정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유기농 식품은 유기산품 인증을 취득해야 함²³⁾

〈중국 유기농 식품 관련 인증〉

인증명	인증마크	내용
유기산품 인증		생산 및 가공 과정에 화학합성 살충제 및 비료, 유전자 조작 유기체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곡물, 채소, 과일, 가금류, 수산물 등 유기농 식품이 해당됨
무공해 농산물 인증		1차 가공 농산물이 무공해 농산물에 관한 국가표준 및 규범에 따라 농약 및 비료 사용을 통제하고 생산환경 및 생산과정, 농산물 품질 등이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녹색식품 인증		녹색식품 인증 제품은 우수한 생태환경에서 생산되고 관련 표준에 따라 생산되어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용 농산물 및 관련 제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공해 농산물보다 엄격한 표준이 적용되어 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됨

* 출처: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홈페이지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수입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유기농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이 적용됨²⁴⁾

- 이에 따라 한국산 유기농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 유기산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중국 유기산품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농’, ‘Organic’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기나 도안 사용이 금지됨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유기산품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마크와 함께 인증코드를 제품 라벨에 인쇄하여 유기농 식품 이력을 추적하고자 함

- 유기산품 인증코드는 17자리 숫자가 발행되며 인증기관 코드 3자리, 인증마크 발행연도 코드 2자리, 임의코드 12자리로 구성됨
- 인증기관 코드(3자리)는 중국 인증기관의 경우 3자리 숫자를 발급받으나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2자리 숫자 앞에 승인번호 ‘9’가 함께 발급됨
- 인증마크 발행연도(2자리) 코드는 발행연도의 마지막 2자리에 따라 발행됨
- 임의코드의 경우 인증기관이 설정한 번호 생성규칙에 따라 임의로 발급됨

23)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유기산품 인증 홈페이지(cnca.gov.cn/cnca/spncp/zspj/index.shtml)

24) 유기농제품 인증 관리 조치(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

- 유기산물 인증코드는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서 운영하는 식품 및 농산물 인증정보시스템²⁵⁾의 유기산물 인증 검색페이지²⁶⁾에 등록됨
-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및 제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국가인증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약 1억 개의 유기농 제품이 등록됨

〈중국 유기산물 인증 검색 화면〉

* 출처: 중국유기산물인증공공서비스(<http://ogasearch.food.cnca.cn/oga/query/index.jsp>)

- 유기산물 인증은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인증기관 및 컨설팅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인증 및 인증 상담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됨
- 인증기관 정보는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cnca.gov.cn)에 고시됨([별첨2] 참조)
- 2019년 기준 중국 내 23개의 인증기관과 25개의 인증 컨설팅업체가 확인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중국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
홈페이지		www.cnca.gov.cn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86-10-82260777
	팩스번호	+86-10-82260799
	이메일	-
기타		-

25) 중국식품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中国食品农产品认证信息系统) 홈페이지(<http://food.cnca.cn>)

26) 중국유기산물인증공공서비스 게시판(<http://ogasearch.food.cnca.cn/oga/query/index.jsp>)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 신청	생산업체 및 가공업체	10~20일	제반서류 제출 및 신청비 납부
2	서류심사	공인인증기관	10일 내	
3	현장심사 및 샘플테스트	공인인증기관	2주	
4	검사보고서 검토	인증 발급위원회	2주	
5	인증 결정 및 발급	인증 발급위원회	1~2주	-

* 출처: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KORTA 해외시장뉴스(2014.02.24.), 유기산품 공인인증기관

- 유기산품 인증 발급까지 일반적으로 2개월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이 소요됨
- 인증 신청 시 인증 신청서와 함께 기본 농장조사, 비즈니스 자격 문서, 관리시스템 문서,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생산계획 등을 제출함
- 유기산품 인증 검사관은 현장검사를 위해 유기농 제품 생산 및 가공시설에 방문하여 시스템 문서 검토, 환경 검사 및 평가, 근로자 인터뷰, 샘플 추출 등을 수행함
 - 검사관이 작성한 검사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 발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유기산품 인증 여부를 결정함
- 인증기관은 허위 정보 기재, 금지물질 사용 등 유기농 제품에 대한 중국 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인증 발급 결정을 내림
 - 유기산품 인증서, 판매 증명서, 유기농 인증마크, 인증코드(17자리)를 발급함
- 증명서에는 하기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발급 후 1년간 유효함
 - 인증 신청자명 및 주소
 - 인증 제품 생산업체, 가공업체, 원산지명 및 주소
 - 인증 제품의 수량, 원산지 및 제품 유형
 - 인증 유형
 - 국가표준 또는 기술 사양
 - 인증기관명 및 담당자 서명,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만료 최소 3개월 전 갱신을 신청해야 함

□ 소요비용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신청비	2,000위안		-
	등록비	3,000위안/장		인증서 포함
	서류심사비	2,000위안		-
	검사비	3,000위안×(생산규모 및 공정 복잡 계수)		출처
	보고서 작성 수수료	2,000위안/부		
	보고서 검토 수수료	3,000위안		
기타	연관 관리 수수료	연간 생산액 1,0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5,000위안/년		총 금액은 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음
		연간 생산액 1,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연간 생산액의 0.5%/년		
	인증서 부분 수수료	2,000위안/장		
	판매 증명서 수수료 (거래액 기준)	50만 위안 이하	200위안/장	-
		50만 위안 초과 100만 위안 이하	300위안/장	-
		100만 위안 초과	500위안/장	-
	인증마크 제작비	일반상표	0.03~0.1위안/매	크기에 따라 비용 상이
		롤 형태	0.03~0.1위안/매	
		QR코드	0.04~0.1위안/매	
		기타	0.002~0.5위안/매	
컨설팅비		품목당 약 1,500만 원		품목별 업체별 상이

* 주1: 생산규모 및 공정 복잡 계수는 품목, 생산규모 등에 따라 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출처에서 확인 가능함

* 주2: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기관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중화화유기식품인증센터(COFCC) 홈페이지(www.ofcc.org.cn/index.php?optionid=685), 국내 컨설팅기관

□ 필요서류

- 인증 신청 시 하기 서류를 제출하며, 유기산품 인증 제품의 중국 통관 시에는 인증서 사본, 판매증명서 사본, 인증마크 및 제품 식별정보 등을 제출해야 함²⁷⁾

- 유기제품인증조서표
- 유기제품생산관리기준서
- 유기제품인증신청서
- 행정위치도
- 대기환경보고서
- 사업자등록증(영문)
- 수질검사보고서
- 법률법규 리스트
- 유기제품 생산계획
- 기 취득한 유기인증서 등

27) 유기농제품 인증 관리 조치 제3장 22조

[별첨1] 유기산품 인증 대상

□ 생산

식물류(야생식물 포함)	
구분	세부 품목
곡물	1. 밀 2.옥수수 3.쌀 4.기장 5.수수 6.보리 7.귀리 8.잡곡
채소	9.고구마류 10.콩과 11.박과 12.배추과 13.푸른잎 채소 14.신선 뿌리류 15.신선 양배추류 16.신선 겨자류 17.신선 가지류 18.신선 양파·마늘류 19.신선 다년생 채소 20.신선 수생식물류 21.신선 새싹류 22.식용 버섯류
과일 및 견과류	23.감귤류 24.오렌지류 25.유자류 26.레몬류 27.포도류 28.멜론류 29.사과 30.배 31.복숭아 32.대추 33.살구 34.호두 35.밤 36.기타과일 37.기타 견과류
콩류 및 기타 유지작물	38.대두 39.유지작물
화훼	40.화훼
향신료 작물	41.향신료 작물 상품
제당(制糖)식물	42.제당식물
기타 식물류	43.사료식물 44.방직용 식물 45.향료 식물 46.야생 식물 47.차
종자 및 번식 재료	48.종자 및 번식 재료
의학용 식물류	49.의학용 식물류
가축 및 가금류	
구분	세부 품목
살아있는 동물	50.육우 51.젓소 52.겸용우 53.면양 54.산양 55.말 56.당나귀 57.돼지 58.닭 59.오리 60.거위 61.기타동물(토끼, 사슴, 낙타, 칠면조 등)
동물성 제품 및 부산물	62.우유 63.양유 64.마유 65.기타(당나귀우유, 낙타우유) 66.달걀 67.오리알 68.기타 계란(메추라기 알, 타조 알 등) 69.동물부산물(털, 캐시미어)
수산물	
구분	세부 품목
활어류	70.해수어(장어, 메기, 대구, 우럭, 광어, 가자미, 도미, 복어, 장어 등) 71.담수어
갑각류 및 무척추 동물	72.새우류 73.게류 74.무척추 동물(굴, 해삼, 홍합, 조개 등)
수생 척추동물	75.거북이
수생식물	76.해초 및 해조류

□ 가공

가공식품	
구분	세부 품목
육류식품 및 부산물 가공	77.냉동 신선육 78.가공 육제품
수산물 가공	79.냉동 생선 80.가공 생선 제품 81.기타 수산가공제품
가공 또는 보존처리 채소	82.냉동 채소 83.보존처리 채소 84.절임 채소 85.탈수 채소 86.채소 통조림
과일 및 채소 즙	82.냉동 채소 83.보존처리 채소 84.절임 채소 85.탈수 채소 86.채소 통조림
가공 또는 보존 과일 및 견과류	89.보존처리된 과일 및 견과류(대추 포함) 90.냉동 과일 91.냉동 견과류 92.잼 93.건조 혹은 튀긴 견과류 94.기타(견과류 분말, 견과류 편)
식물성 기름 가공	95.식용 식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96.식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가공처리된 액체 우유, 버터	97.가공처리된 액체 우유 및 버터
기타 유제품	98.분유 99.발효우유
곡물 밀링	100.밀(가루) 101.옥수수(가루) 102.쌀(가루) 103.좁쌀(가루) 104.기타 곡물 밀링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105.전분(녹말) 106.전분제품(당면) 107.콩제품
가공 사료	108.식물성 사료 109.동물성 사료
건조식품	110.비스킷 및 빵
파스타 등 곡물 전분 제품	111.쌀면 제품 112.인스턴트 식품
분류불가 식품	113.차 114.차 대용 식품(국화차, 보리차 등) 115.커피 116.껍질 벗긴 계란류 제품 117.향신료 118.식물류 중의약 가공 제품(인삼, 우영, 도라지, 은행, 감잎, 오미자, 달기 등)
맥주	119.맥주
포도주와 과일주 등 발효주	120.포도주 121.과실주 122.황주 123.청주 124.기타 발효주
맥주	125.맥주
방직용 기타 천연 섬유	126.방직용 기타 천연 섬유(대나무 섬유, 실크 등)
복장	127.방직제품(실, 실크제품 등)

[별첨2] 중국 유기산품 관련 공인인증기관

구분	인증기관명
1	중국품질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2	항주만태인증유한공사(杭州万泰认证有限公司)
3	방원지표인증그룹(方圆标志认证集团有限公司)
4	광둥중감인증유한책임공사(广东中鉴认证有限责任公司)
5	절강공신인증유한공사(浙江公信认证有限公司)
6	중식항신(북경)질량인증중심유한공사(中食恒信(北京)质量认证中心有限公司)
7	베이징중안질환인증센터(北京中安质环认证中心)
8	흑룡강성농산품품질인증센터(黑龙江省农产品质量认证中心)
9	중양연합(북경)인증중심유한공사(中环联合(北京)认证中心有限公司)
10	북경오주항통인증유한공사(北京五洲恒通认证有限公司)
11	북경중록화하유기식품인증센터(北京中绿华夏有机食品认证中心)
12	요녕방원유기식품인증유한공사(辽宁方圆有机食品认证有限公司)
13	요녕요완유기식품인증센터(辽宁辽环有机食品认证中心)
14	북경오악화하관리기술센터(北京五岳华夏管理技术中心)
15	신장생산건설연대환경보호과학연구소(新疆生产建设兵团环境保护科学研究所)
16	서북농림과기대학인증센터(西北农林科技大学认证中心)
17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센터(南京国环有机产品认证中心, 유기제품 수출 인증도 가능)
18	북경동방가화인증유한책임회사(北京东方嘉禾认证有限责任公司)
19	항저우중농품질인증센터(杭州中农质量认证中心)
20	북경ECOCERT인증센터유한회사(北京爱科赛尔认证中心有限公司, 유기제품 수출 인증도 가능)
21	납경영목세인증유한회사(上海英目世认证有限公司, 수출용 유기농 제품 인증만 해당됨)
22	북경중합금락인증센터유한회사(北京中合金诺认证中心有限公司)
23	상하이CERES인증유한회사(上海色瑞斯认证有限公司, 수출용 유기농 제품 인증만 해당됨)

* 주: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승인된 23개 인증기관의 목록이며, 중국어 독음에 따라 표기함

* 출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cnca.gov.cn/cnca/spncp/zspj/index.shtml#food03)

베트남



VFA 적합성 인증

.....97

VFA 적합성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VFA 적합성 인증	국가명	베트남
마크		인증기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FA) ²⁸⁾
		시험 및 인증대행기관	Vietnam Food Administration FSI/Vinacert-Control Sac Ky Hai Dang JSC QUACERT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시 필수인증(수입업체)
		도입시기	2007년
		유효기간	3~5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함 - 근거규정 - 식품안전시행법 세부규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 법령(38/2012/ND-CP) -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기술규정(QCVN:2011/BYT)
인증 내용	-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바이어가 반드시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판정을 받고, 식품청에 해당 적합성 판정을 신고하여야 함 - 보건부에서 지정한 시험 및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서류심사 및 성분 오염도를 검사함
적용품목	가공식품, 소비재로서의 일반 음료·건강보조 식품, 식품첨가물·식품 가공 보조제·포장 재료·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도구 (과실주스, 채소주스, 기타음료, 가공식품(과실·과일), 절임통조림, 탄산수, 비알콜성 음료, 조리하지 않은 면, 즉석 면 식품,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 취득

취득 유형	베트남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며 현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베트남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15일~30일	소요비용	시험비 제외 품목당 650,000~1,650,000VND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8)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2. 세부정보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은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함

-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베트남 수입업체가 반드시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판정을 받고 식품청에 해당 결과를 신고해야 함
 - 베트남 수입식품 유통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규정을 충족하는 서류검토와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검역절차 두 단계를 거침
 - 식품안전규정(safety regulation)을 준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적합성 판정이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베트남 식품청(VFA)에 의해 이루어짐
- 2000년 이후 식품 유형 및 성분에 따라 다양한 식품안전 세부법령이 공포 및 개정됨
 - 법령이 세분화되어 있어 개별 법령에 규정된 식품안전 규정을 모두 준수할 필요가 있음

유형별 식품안전 규정	· 식품안전시행법 세부규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 법령 38/2012/ND-CP · 보건부조례 19/2012/TT-BYT 국가기술규정과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가이드라인 · 보건부 판결 23/2007/QD-BYT 수입식품 품질/위생/안전 정부조사 · 산업무역부 조례 28/2013/TT-BCT 수입식품 품질/위생/안전 정부조사 · 보건부조례 43/2014/TT-BYT 기능성 식품 관리 · 보건부조례 35/2010/TT-BYT의 비알코올성 음료 부문 국가기술법규 · 농업 및 농촌개발부 조례 : 수입식품 원산지 안전검사조례, 식물위생 검사조례 등 · 과학기술부 판결 2944/QD-BKHCN의 과실주스 및 과즙 국가표준 공포
성분별 식품안전 규정	· 식품에 철 성분 첨가 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3-3:2010/BYT) · 식품에 칼슘 성분 첨가 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3-4:2010/BYT) ·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향료(QCVN 4-1:2010/BYT) ·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산화 방지제(QCVN 4-6:2010/BYT) ·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소포제(QCVN 4-7:2010/BYT) ·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합성 감미료(QCVN 4-8:2010/BYT) ·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채색(QCVN 4-10:2010/BYT) ·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산도 조절제(QCVN 4-11:2010/BYT) ·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방부제(QCVN 4-12:2010/BYT) · 곰팡이균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VCN 8-1:2011/BYT) ·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 미생물오염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8-3:2011/BYT)

- 수입식품을 포함한 베트남 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적용하며 특히 가공식품, 소비재로서의 일반음료 및 건강보조식품 등이 해당됨
 - 식품안전 규정 적합성 인증의 내용은 일반식품과 기능성식품으로 구분되며 기능성 식품이 일반식품보다 인증 취득에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식품첨가물·식품 가공보조제·포장 재료·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도구까지도 적합성 인증 대상에 포함됨
- 서류 제출 및 인증 발급의 주체는 베트남 수입업체이지만 한국 수출업체에서 계약서, 한국에서 발행된 제품분석증명서, 명세서, 품질보증서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수입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됨
- 베트남 식품청은 제출 서류의 내용과 형식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서류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서류 준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식품청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과도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류 형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²⁹⁾
- 보건부에서는 식품 품질과 적합성 인증에 대한 검사 자격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발표³⁰⁾하며 일반적으로 보건부 산하기관이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
 - 적합성 평가는 공인시험기관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토대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거나 보건부가 지정한 시험 및 인증대행기관에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본 인증은 베트남 내 수입업체가 취득하는 인증이나, 국내 수출업체 또한 인증 프로세스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입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29) KOTRA 해외시장뉴스

30) Circular 05/2007 / TT-BYT, No. 227 / QD-TDC

□ 인증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승인 인증기관
기관명		베트남 식품청(VFA)	FSI/Vinacert-Control
홈페이지		www.vfa.gov.vn	www.fsi.org.vn
연락처	담당부서	Food Management Dept	Food Safety Services Dept
	전화번호	+84-4-3846-4489	+84-8-3662-1891
	팩스번호	+84-4-3846-3739	+84-4-3633-1137
	이메일	vfa@vfa.gov.vn / dotruonggiang@vfa.gov.vn	info@fsi.org.vn

		승인 인증기관	승인 인증기관
기관명		기술부 품질측정 표준인증센터(QUACERT)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홈페이지		quacert.gov.vn	www.sackyhaidang.com.vn
연락처	담당부서	-	-
	전화번호	+84-24-3756-1025	+84-8-3823-9643
	팩스번호	+84-24-3756-3188	+84-8-3823-9872
	이메일	quacert@quacert.gov.vn	info@sackyhaidang.com.vn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증명서 양식 및 예시>

* 출처: VFA 홈페이지(<http://vfa.gov.vn>), 베트남 품질 표준 주식회사(<https://tieuchuansanpham.com>)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적합성 평가 인증 신청 서류 제출	베트남 수입업체	-	승인 받은 보건부 산하 인증기관 정보 확인
2	서류 검토 및 감정평가 결정	인증기관 (VFA 등)	5일~10일 이내	-
3	적합성 평가	인증기관	7~10일	-
4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선언문 발표	인증기관	-	-
5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판정 신고	신청자	-	베트남 식품 안전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됨
6	신고 접수 확인 및 공개통보	베트남 식품청	7일	-

* 출처: 식품안전 규정의 선언 및 적합성 발표에 관한 지침(19/2012 / TT-BYT)

- 일반식품의 경우 인증 취득까지 근무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되며 기능성식품은 약 30일이 소요됨
- 식품안전기준에 근거하여 각 제품 유형별 식품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성분 오염도를 측정함
 - 해당 시험은 근무일 기준 7~10일이 소요되며 성분별 시험비용이 상이함
-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면 적합성 선언을 하며 선언문은 제품 상세정보가 담긴 서류와 적합성증명서로 구성됨
 -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춘 제품의 경우 HACCP 또는 ISO 22000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서가 포함되기도 함
- 적합성 인증을 확정 받은 후 식품청에 해당 결과를 신고함
- 인증 취득 후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험을 위한 샘플링 채취가 이루어짐

GMP, HACCP, ISO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고급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 중 하나를 보유한 시설의 제품	1년마다 샘플링 요구
상기 인증서가 부여되지 않은 시설의 제품	2년마다 샘플링 요구

□ 소요비용

구분	항목	비용	
		일반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취득비	심사비	품목당 500,000동	품목당 1,500,000동
	인증서 발행 수수료	품목당 150,000동	품목당 150,000동
	성분 검사비	미생물 오염도 검사 1건당 105,000~200,000동	
		화학물질 오염도 검사 1건당 700,000~800,000동	
기타	식품안전검사 담당기관 수수료	1회 수입분 당 1,000,000~10,000,000동(수입가의 0.1%)	
컨설팅비 (국내 컨설팅기관)		품목당 약 200만 원	품목당 약 300만 원
컨설팅비 (베트남 소재 컨설팅기관)		(수량 1~10개)	(수량 1~10개)
		2,200,000동~3,000,000동	6,100,000~7,100,000동
		(수량 11개 이상)	(수량 11개 이상)
		2,000,000~3,000,000동	6,000,000~7,000,000동

* 주1: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2: 컨설팅비용은 제품 검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임

* 출처: 베트남 규정(Circular 149/2013/TT-BTC of the Ministry of Finance dated Oct. 29), 국내 및 베트남 컨설팅기관

□ 필요서류

구분	서류 목록
일반식품 적합성 판정 신고 필요서류	- 판정 신청서 - 제품 상세정보(식별 가능한 기준(색, 맛, 상태), 필수 품질 기준, 미생물 기준, 중금속 기준, 성분 및 첨가물 기준, 유효기일, 사용 및 유지 가이드라인, 포장 정보, 라벨 내용, 원산지(해외 생산업체 이름, 국가명,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이름 및 주소)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인증서(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된 시험기관 또는 원산지 국가의 민간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12개월 이내의 제품시험 결과서 -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 원산지 국가의 오리지널 라벨 샘플과 베트남어 라벨 샘플 - (베트남 최초 수입 시) 제품 샘플 - 해외 생산업체의 HACCP 혹은 ISO 22000 혹은 GMP 혹은 기타 동등한 인증서(선택사항) - 식품안전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에 대한 인증서 또는 증명서
기능성식품 적합성 판정 신고 필요서류	- 제품 상세정보(특정 기능 유효성분 함유량(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약초 등) 포함) - 원산지 국가 관할 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혹은 자유판매증명서 - 각 성분의 판정된 기능 및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 및 서류 - 베트남 시장에 최초 출시되어 안전 및 효능이 증명되지 않고 신소재 및 신기술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기능 및 효능에 관한 시험결과보고서

홍콩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인증105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식품환경위생부(FEHD) 인증	국가명	홍콩
마크		인증기관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인증
		도입시기	2004년
		유효기간	6개월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식품이 인체 소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인증서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됨 ◦ 근거규정 - 홍콩 식품안전법 - 공중보건 및 시립의무령(the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Cap. 132) - 식품안전령(Food Safety Ordinance) (Cap. 612)
인증 내용	홍콩 내 식품환경위생부는 홍콩 내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의 보건당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획득할 것으로 요구하며, 획득 시 이에 대한 인증을 부여함
적용품목	비포장 음료, 냉동 당과제품, 우유 및 우유제품, 커팅과일 제품, 중국 허브차, 초밥 및 생선회, 신선 굴, 신선 육류, 활생선, 조개류, 자판기 판매식품 등

□ 취득

취득 유형	국내 검사 결과를 인정하여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에서 인증을 발급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홍콩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15일 내외 (국내 위생증명서 발급기간 제외)	소요비용	없음

* 주: 소요기간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세부정보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홍콩 내 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식품 관련 입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음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는 홍콩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음료, 수산물, 유제품, 냉동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 국가의 보건 당국이 발행한 위생 증명서를 요구함
 - 이에 따라 홍콩 수입업체는 수입품이 인체 소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위생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수입 시 해당 상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박테리아 검사를 진행하며 식품이 수입된 이후에도 불시검사를 통해 홍콩 내 식품관련 법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대부분의 식품 품목에 대해 FEHD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식품 품목별 세부사항은 하기와 같음

품목	세부사항
채소	◦ 식물 제품에 대해 동식물 보건 검역 관련 부처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를 요구함
육류, 가금류 및 수렵육	◦ 식품 보건 및 검역 관련 부서의 인증이 요구되며, 상품의 종류에 대해 증명서 상 ‘상품 설명’란에 원산지 및 구체적 정보를 기재해야함
수산물	◦ 홍콩 법에 명시된 별도의 보건증명서가 없음에도 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인체 소비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유제품 및 냉동식품	◦ 홍콩 법은 사전에 승인 받을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각각의 배송 시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한국 제품의 경우 한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출처: 홍콩 식품환경위생부(www.fehd.gov.hk)

□ 홍콩 라벨링 및 식품관련 법률은 ‘공중보건 및 시립의무령(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를 따름

- 식품 라벨링에는 제품명, 제조업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성분목록, 순 중량(수량, 무게, 부피 등), 유통기한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함
- 라벨링은 영어 및 중국어 모두 사용 가능하나 제품명, 원재료명은 반드시 영문과 중문을 병기해야 함

〈라벨링 기재사항〉

항목	설명
제품명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특성과 유형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함
제조업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제조업체(수입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회사명, 주소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함
성분 목록	중량이나 양이 많은 순서로 나열함
순 중량	수량, 무게, 부피 등을 명확하게 표기함
유통기한	제품 내 다른 위치에 기재 한 경우 라벨링에 유통기한이 기재된 위치를 기술해야함
보관방법	품질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표기하며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홈페이지		www.fehd.gov.hk
연락처	담당부서	식품안전부(Centre for Food Safety)
	전화번호	+852-2868-0000
	팩스번호	+852-2530-1368
	이메일	enquiries@feh.gov.hk
기타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국내 위생증명서 신청	제조업체	-	제반서류 제출
2	위생증명서 발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3일	-
3	FEHD 인증 신청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	인증신청서 및 위생증명서 제출
4	인증 발급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15일	-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통과 시 위생증명서를 발부함
- 홍콩 수입통관 시에도 홍콩 식품안전부가 수입품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통과 시 FEHD 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식품은 홍콩 유통이 가능함
 - 수입자는 홍콩 식품안전부에 견본으로 제공한 샘플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소요비용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인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필요서류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증명서 발급 신청 시 영업허가신고증(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에는 인증신청서와 국내에서 발급받은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태국



태국 식약청(FDA) 등록111

태국 식약청(FDA)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태국 식약청(FDA) 등록	국가명	태국
마크		등록기관	태국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등록(수입업체)
		도입시기	2001년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태국 내 유통되는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도입됨 - 근거규정 - 태국 식품법 Food Act B.E.2522(1979) - 태국 공중보건부 통지(No.367) BE2557(2014) 및 통지(No.383) BE2560(2017) 「사전 포장된 식품의 라벨링」
등록 내용	태국 식약청에서는 수입식품 안전을 감독하기 위해 위험도에 따라 식품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며, 수입업체는 유형별로 제품 생산정보 등을 식약청에 등록하여 식품일련번호를 발급함
적용대상	- 특별통제식품: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식품, 식품첨가물 등 - 표준식품: 커피, 소금, 비타민강화 쌀, 초콜릿, 차 등 - 표준라벨부착식품: 빵, 소스류, 육류제품, 향신료 등 - 일반식품: 즉석조리제품, 조미료, 설탕 등

□ 현황

취득유형	- 태국 수입 및 유통업체 또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음 -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태국 유통업체 및 에이전트를 최초 등록 후 2년 내 바꿀 경우 새로운 태국 대리인이 신규로 등록해야 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태국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약 3일 (특별통제식품 제외)	소요비용	품목당 200바트 (특별통제식품 제외)

* 주: 소요기간 및 비용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세부정보

- 태국 식약청의 규제는 시판 전 규제(Pre-marketing Control)와 시판 후 관리(Post-marketing Control)로 나뉘며, 각 내용은 허가 취득과 식품안전성 관리가 주를 이룸
 - 시판 전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식품 제조 및 수입 라이선스 발급, 식품 등록, 식품 라벨링 및 영양표시, 우수제조관리기준 준수 등이 해당됨
 - 또한 태국 식약청은 시판 후 관리사항으로 식품 샘플링 및 검사, 식품안전성 모니터링 등을 담당함
- 태국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허가가 필요하며, 특별통제식품은 수입 전(前) 등록이 요구됨
 - 식약청 검사관이 수입업체의 보관시설 및 창고에 방문하여 적합성을 검사한 후 수입 라이선스가 발급되며, 수입업체는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함
 - 전시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임시 수입 라이선스가 발급되며 제품 검사를 위해 식품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면제됨
 - 수입식품 중 위험도가 높은 식품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은 특별통제식품으로 분류되어 사전에 식약청에 등록해야 함
 - 등록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 유형별로 상이하나 약 5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됨³¹⁾
- 태국 식약청은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식품안전을 감독하므로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분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위험도가 높은 식품은 특별통제식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위험도가 가장 낮은 일반식품은 식약청 등록이 수반되지 않음
 - 특별통제식품에는 영유아용 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 포함되므로 태국 식약청에 등록하여 식품일련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표준식품은 특별관리식품보다는 위험도가 낮으나 태국 공중보건부의 품질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 기록 및 식품보고서가 필요함
 - 표준라벨부착식품의 경우 특별통제식품 및 표준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가공식품 또는 가공되지 않은 식품, 조리된 식품 또는 조리되지 않은 식품이 포함됨
 - 위험도가 가장 낮은 일반식품은 식약청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로 가공되지 않은 제품 또는 식품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재료 등이 포함됨

31) 미국 농무부(USDA) 태국 식품 수입규제 보고서(2019)

<위험도에 따른 식품 분류>

구분	위험도	적용 대상
특별통제식품 (Specifically-controlled foods)	위험도가 가장 높으며, 라벨링 및 생산 공정 등 모든 품질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됨	영유아용 조제분유 및 식품, 체중조절식품, 식품첨가물, 인공감미료 등
표준식품 (Standardized foods)	중간 수준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 소유자는 제품이 식약청 규정 및 품질표준을 준수하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커피, 소금, 비타민강화 쌀, 알칼리 보존란, 크림, 전해질 음료, 초콜릿, 차 등
표준라벨부착식품 (Foods with standardized labels)	중간 수준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으며, 품질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라벨링을 부착해야 함	빵, 현미가루, 소스, 육류제품, 향신료, 젤라틴 및 젤리 디저트, 껌 및 사탕, 즉석식품, 방사선조사식품, GMO식품 등
일반식품 (General foods)	위험도가 낮아 식약청에 식품을 등록할 필요가 없음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추출물 또는 합성물질, 밀가루 및 밀가루 제품, 영양제, 즉석조리제품, 조미료, 설탕 등

□ 태국 내 유통되는 식품에는 규정에 따른 태국어 라벨링을 부착해야 함³²⁾

연번	표기사항	상세 내용
1	식품명	식품명이 있는 경우 표기
2	식품일련번호	태국 식약청 등록번호
3	제조·포장·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	-
4	식품 중량	- 고형 식품: 순중량 기준 - 액체 식품: 순부피 기준 - 반고체 또는 기타 형태: 순중량 또는 순부피 기준
5	주요 성분 함유량(백분율)	주요 성분 함유량을 내림차순으로 기재함
6	식품 알레르기 항원	-글루텐 및 글루텐 성분 함유 제품 -게, 새우, 랍스터 등 갑각류 제품 -계란 및 계란 함유 제품 -생선 및 생선 함유 제품 -땅콩 및 땅콩 함유 제품 -대두 및 대두 함유 제품 -유당을 함유한 우유 및 유제품 -10mg/kg 이상 아황산염(sulfite)을 함유한 제품
7	식품첨가물 국제분류번호(INS)	식품첨가물명 또는 식품첨가물 국제분류번호(INS)를 표기함

32) 태국 공중보건부 통지(No.367) BE2557(2014), 통지(No.383) BE2560(2017) 「사전 포장된 식품의 라벨링」

연번	표기사항	상세 내용
8	식품 향료	방부제, 향미강화제, 감미료 등 향료명 및 국제분류번호(INS)
9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남은 기한이 90일보다 적은 경우 일/월/연도를 표기하며 90일 이상 남은 경우 월/연도를 표기함
10	경고문	있는 경우 표기
11	저장 또는 보관방법	있는 경우 표기
12	조리방법	있는 경우 표기
13	특정 사용지침 및 필수 문구	신생아 및 유아, 특정 개인용 식품의 경우
14	특정 문구	공중보건부 통지 별첨에서 정하는 특정 식품에 적용되는 문구

* 출처: 태국 식품의약청(www.fda.moph.go.th), 태국 공중보건부 통지(No.367) BE2557(2014) 및 통지(No.383) BE2560(2017)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태국 식약청
홈페이지		www.fda.moph.go.th
연락처	담당부서	식품국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food@fda.moph.go.th
기타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식품 등록)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서류 제출	신청인	약 3일 (특별통제식품의 경우 35~90일)	하기 필요서류 참조
2	서류 검토	인증기관		-
3	허가 승인여부 결정	인증기관		-
4	식품일련번호 발급	인증기관		-
5	승인된 서류 회신	인증기관		-

* 출처: 태국 식약청(www.fda.moph.go.th), KOTRA

□ 소요비용

구분	등록비	비고
특별통제식품	품목당 3,000~5,000바트	로열젤리 및 로열젤리 함유제품, 식품보충제 등 제외
표준식품	품목당 200바트	식품보충제, 유제품, 통조림, 음료 등은 수수료 2,000바트(한화 약 8만 원)
표준라벨부착식품	품목당 200바트	-
일반식품	등록 불필요	-

* 출처: KOTRA

□ 필요서류

- 태국 식약청에 식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품등록서(Sor Bo.5) 2부, 수입허가증 또는 제조허가증 사본, GMP 증명서 및 수입품 사본을 제출해야 함

대만



대만 식품의약품(TFDA) 인증119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 인증	국가명	대만
마크		등록기관	대만 식품안전위원회 산하 식품의약품청(TFDA)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인증(수입업체)
		도입시기	2010년
		유효기간	5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건강식품 관리에 있어 행정관리 업무, 검사, 조사 등 업무의 통합을 통해 과학적 실증을 기반으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식품안전관리)³³⁾
등록 내용	특정 식품(유전자 변형 식품, 건강식품) 수출 시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에서 요구하는 주요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과학적 근거 및 검사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과 기능을 입증해야함
적용대상	건강보조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식품첨가물, 진공 포장 식품 등

□ 현황

취득 유형	대만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을 진행해야 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대만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약 240일	소요비용	품목당 250,000대만달러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33) 대만 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2>)

2. 세부정보

□ 대만 식품의약품청에서 규정하는 특정 식품(유전자 변형 식품, 건강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대만 식품의약품청은 특정 영양소나 법령상 보건 효과(Health Care Effect)를 보유한 식품을 보건식품(保健食品)으로 지칭해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식품의 보건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만 식품의약품청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보건식품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검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에 대해 입증해야 함
 - 이를 위해 기본 구비서류 이외에 제품이 무해하고 뚜렷한 보건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학적 평가 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반드시 대만 중앙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보건평가방법과 안전평가방법에 부합해야 함
 - 보건식품 등록 및 인증 취득 시 대만 식품의약품청 식품안전부서의 공식 시험통지를 받은 후 시험을 위한 샘플을 제출해야 함

□ 대만으로 수입되는 건강식품은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의 라벨링 표기 및 품질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함

- 대만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을 통하여 라벨링과 관련한 규정들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제정함
 - 식품명은 품질과 일치하고 대만 국가 기준에서 정한 정식명칭을 사용해야함
 - 내용물은 높은 함량 순으로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복합원료는 내부 성분을 모두 명시해야함
 - 중량·용량·수량의 경우 제품의 특성에 맞게 국제단위 표기하고, 유통기한은 년, 월, 일순으로 표시함
 - 수입 식품의 경우 대만 책임업체의 정보를 정확히 표기하며, 건강식품의 경우 허가번호, 설명, 인증마크, 주의할 점 등을 기재해야함

3. 취득절차

□ 취득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 제출 및 비용 납부	수입업체	60일	-
2	예비 심사	-		-
3	샘플 제출	수입업체		-
4	2차 심사	지정 검사기관	180일	-
5	인증 발급	식품의약품청		-

* 출처: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 홈페이지(www.fda.gov.tw/TC/siteList.aspx?sid=1752)

- 식품의약품청 행정심사 또는 규격심사 수행 시에는 제출 서류와 정보의 완전성, 신청서, 제품의 포장, 표시(label)와 상세정보, 제품의 성분과 원재료의 안전한 섭취량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함
- 샘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수입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지 내용에 따라 지정 검사기관에 샘플을 제출해야 함
- 검사 완료 후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 인증 발급절차를 완료함

□ 소요비용

- 예비 심사 시 80,000대만달러(한화 약 313만 원)가 소요되며, 2차 심사 비용은 170,000대만달러(한화 약 666만 원)가 소요됨

□ 필요서류

- 개별심사 시 안전성 평가 보고서, 기능성 평가 보고서, 원료의 안전성 보고를 별개로 제출하며, 규격 표준 심사 시 보건기능 안정성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신청서
 - 원재료의 상세한 명칭과 특성,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
 - 안전성평가 보고서
 - 기능성평가 보고서
 - 기능성분에 대한 검증 보고서와 시험방법
 - 원료의 안전성 보고
 - 제조공정 요약
 - GMP에 대한 증거 서류
 - 제품위생관련 사항 및 검사 보고서
 - 일반 영양성분분석 보고서
 - 관련 연구 보고서 및 문헌
 - 제품 포장, 표지, 제품 설명서
 -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BPOM 등록125



인도네시아 SNI 인증129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135

인도네시아 BPOM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인도네시아 BPOM 등록	국가명	인도네시아
마크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시 필수등록(수입업체)
		도입시기	2011년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인도네시아는 국내외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을 감지, 예방 및 제어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의약품 및 식품 관리·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 근거규정 -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Regulation No.27 of 2013) - No.83/M-DAG/PER/12/2012, No.61/M-DAG/PER/9/2013, No.73/M-DAG/PER/10/2014, No.36/M-DAG/PER/7/2014
인증 내용	요구하는 모든 시험과 증명을 거쳐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어있을 때 신청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허가형태의 인증방식임
적용품목	식품 및 음료 품목군 전체 ³⁴⁾ (전분류, 당류, 식용유지류, 어육가공품, 간편식류, 간식류, 음료류, 조미료식품, 조림류 등)

□ 현황

취득 유형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며, 현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함		
취득현황	2019년 등록된 식품 및 음료 품목군은 약 1만5445개임 - BPOM에 등록된 한국식품은 2013년 313건에서 2015년 558건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297건으로 감소했음		
타국가 통용여부	인도네시아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약 14일	소요비용	확인불가

* 주1: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주2: 인도네시아 식약청홈페이지(cekbpom.pom.go.id)에서 등록 제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

34)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유통 금지 10가지 품목과 인증 면제 식품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2. 세부정보

□ BPOM 등록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제품은 인증을 취소하고 수입을 취소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가공식품관리국은 수입식품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BPOM 등록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화학 공해나 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함
- 식약청은 간혹 현지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일부 품목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DNA 검사 등 라벨 표기 성분과 실제 성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건으로 적발된 품목은 식약청 홈페이지³⁵⁾에 게재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까지 한국의 라면 4종류를 포함한 총 8,466개의 제품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됨

□ BPOM 등록은 신청을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방식이며,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을 등록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수입 허가를 취득한 회사만이 제품을 등록할 수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또는 수입업체를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수입바이어 지정 서한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수입허가를 보유한 파트너사가 사전에 지정되어야 하며, 현지법인 또는 수입업체가 없는 경우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현지 파트너를 등록자이자 제품 소유자로 임명할 수 있음
- 국내 수출업체는 외교부 영사 인증을 받은 자유판매증명서(CFS)와 공급확인서, 수권서를 현지 파트너에게 전달해야 하며, 공급확인서와 수권서는 변호사 영문 공증을 받아야 함
- 본 인증은 인도네시아 내 수입업체가 취득하는 인증이나, 국내 수출업체 또한 인증 프로세스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입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BPOM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중요 행정문서와 중요 기술정보문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식 신청 서류양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함

- 시험 분석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제품의 분류 기준이 운영되며 별도로 진행 현황을 통보하는 절차가 없고 심사관 재량에 따라 운영됨

35) <http://cekbpom.pom.go.id/tarik>

□ 식약청은 식품에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10가지 품목과 BPOM 등록이 면제되는 제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³⁶⁾

구분	세부내용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특정 품목	- 돼지, 개, 근친 교배된 새끼 가축 - 이슬람 교리에 따라 죽임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동물 등의 시체(생선, 메뚜기 제외) - 벌레, 이, 거머리 등과 같이 식용으로 거부감이 드는 생명체 - 엄니 및 송곳니를 가진 동물 - 먹잇감을 급습하거나 덮쳐서 게걸스럽게 먹는 갈고리를 가진 동물 - 후투티, 개구리, 벌, 개미 등과 같은 이슬람 교리에서 살생을 금하는 동물 - 죽기 전의 가축으로부터 절단돼 나온 살덩이(본 동물의 할랄 여부와 관계없음) - 독이 들어있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동물 - 거북이, 악어 등 육지와 해양 등 2개의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동물 - 혈액, 소변, 대변, 태반
BPOM 등록 면제 제품	- 연구, 테스트 및/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된 식품 - 완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식품 - 최종 고객에게 판매를 안 하는 식품 - 7일 미만의 식량 수명을 가진 식품

□ BPOM 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규정에 따른 라벨링과 포장이 요구됨

- 라벨에 적힌 정보들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라벨 및 포장지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하기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함

필수 기재사항	세부내용
제품명	-
전성분 리스트	CODEX 기준에 따름
전체 중량 및 용량	제품의 함량을 포장용량기준으로 mg/kg으로 계상 하여야함
제조업자 혹은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
할랄(인증 받았을 시)	-
생산일 및 생산 코드	-
유통기한 일, 월, 년	-
등록 허가 번호	-
특정 재료의 원산지	-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홈페이지	www.pom.go.id
연락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36)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HK.00.05.1.23.3516)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온라인 신청서 제출	수입업체	근무일	BPOM 홈페이지 접속
2	수수료 지불	수입업체	기준 10일	-
3	제품번호 통보	인증기관(BPOM)	-	-
4	심사	인증기관(BPOM)	-	-
5	인증 승인 및 등록번호 부여	인증기관(BPOM)	근무일 기준 14일	-

* 출처: BPOM KOREA(<https://bpomkorea.modoo.at/?link=62o65sji>)

- 온라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 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함
- 신청자나 신청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수수료 청구서를 통보받으면 근무일수 기준 10일 안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제품번호를 통보하면 됨
 -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미승인이 될 경우 보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BPOM 공시번호를 온라인으로 부여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 등록 작업 완료까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며,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할 경우에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함

□ 소요비용

-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명시하는 BPOM 등록비용은 확인되지 않음

□ 필요서류

구분	서류 목록
중요 행정문서	- 등록 신청서 - 수입업자의 법률 문서 - 보관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인증서: GMP, HACCP, ISO22000 - 위촉장: 지정된 수입업자/판매자가 제품 등록 - 자유 판매 증명서(CFS) - 건강 증명서
중요 기술정보문서	- 성분 구성 정보 - 제조 공정 - 제품 저장 정보 - 생산 코드 정보 - 레이블 디자인 - 완제품 분석 인증서

인도네시아 SNI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인도네시아 SNI 인증	국가명	인도네시아
마크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BSN)
		시험기관	시험인증기관(LSPro)으로 등록된 민간시험기관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인증(수입업체)
		도입시기	1987년
		유효기간	4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인도네시아 각 정부기관별 흩어져 있는 제품 표준을 국가표준화기관(BSN)에서 통합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보장하고자 도입됨 - 근거규정 - SNI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국가표준화기관 규정(Peraturan BSN nomor 2 tahun 2017)
인증 내용	-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규격에 관한 인증으로, 강제인증대상은 인증 취득 후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해야만 인도네시아로 수입/판매가 가능함 - 식품 품질 및 생산방법, 시험 등에 대해 인증을 거치며 이를 통해 식품안전성, 품질 등을 증명함
적용품목	강제인증품목에는 밀가루, 조리용 팜유, 비스킷, 가당연유, 분유, 인스턴트커피, 인스턴트 면류, 생수, 설탕, 코코아 파우더, 백후추 등이 있음

□ 취득현황

취득 유형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며 현지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취득현황	2017년 11월 기준 식품에 대해서는 1,946개의 국가표준이 등록되어 있음		
타국가 통용여부	인도네시아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최대 12개월	소요비용	품목당 약 35,600,000루피아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BSN, Bureau of Standard Nasional)은 인도네시아 시장 내 유통되는 제품의 생산 및 규격에 관한 표준인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을 관장하고 있음³⁷⁾

- 인도네시아 산업부, 무역부, 공공부, 농업부 등 정부기관별로 시행하는 표준화제도를 1997년 이후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에서 통합·운영하게 됨
- 국가표준화기관은 국가인가기관(KAN), 국가계량단위표준위원회(KSNSU) 등과 SNI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국가인가기관은 SNI 인증을 위한 제품 검사 및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인증 기관(LSPro)의 인가를 담당하며,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요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함³⁸⁾
-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술 위원회(KT, Komite Teknis)에서는 국가표준 인증을 정립함
 - 약 330개의 기술위원회³⁹⁾별로 인증 대상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11월 기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은 총 11,485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9,574개가 유효함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은 식품 품질 및 생산방법, 시험 등에 대한 국가표준 인증을 통해 식품 산업의 안전, 품질,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 강제인증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 수입 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입품은 폐기되거나 재수출될 수 있음
- 2017년 11월 기준 식품에 대해 1,946개의 국가표준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식품과 관련된 국가표준 기술위원회의 유형은 하기와 같음

기술위원회 코드	인증 대상	기술위원회 코드	인증 대상
19-06	일반적인 식품 화학테스트 및 방법	67-03	축산물
65-03	농산물	67-04	음식 및 음료
65-05	수산물(어업 제품)	67-05	방사선 조사 식품
65-07	양식 수산물	67-06	생명공학
67-01	특정가공식품	67-08	식품안전관리시스템
67-02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	-

* 출처: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BSN) 보고서 「SNI 인증과 식품(2017)」

37)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BSN) 홈페이지(<https://bsn.go.id>)

38) 인도네시아 국가인가기관 홈페이지(www.kan.or.id)

39)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BSN) 보고서 「SNI 인증과 식품(2017)」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은 온라인⁴⁰⁾을 통해 기술위원회 코드별로 현재 유효한 SNI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표준(SNI) 인증 검색 화면〉

Parameter Pencarian
색인

No. SNI
Masukan No SNI 국가표준(SNI) 인증 번호 입력

Komite Teknis
Pilih Komite 기술위원회 검색

Judul
Masukan Judul 제목 입력

Tahun
Pilih Tahun 연도 검색

Status Perumusan
Pilih Perumusan 규정 현황(신규/개정 등)

Status SNI
Pilih SNI 국가표준(SNI) 상태(유효성)

Pilih ICS
Pilih ICS 국제표준분류코드(ISC) 입력

CARI DATA RESET
검색 초기화

Daftar SNI
SNI 목록

Menampilkan 10 Data Pencarian:

No	No SNI	Judul IND	Judul ENG	Komtek	ICS	Status	File SNI
1	SNI 3834-2019	Koktil buah dalam kemasan 포장된 과일 칵테일	-	67-04-S1		Masih Berlaku	
2	SNI 3742-2019	Bihun instan 인스턴트 국수	-	67-04		Masih Berlaku	
3	SNI 8776-2019	Daging luncheon 런천 미트	-	67-04		Masih Berlaku	
4	SNI 8779-2019	Gula sukrosa cair 액체 수크로스 설탕	-	67-04		Masih Berlaku	
5	SNI 8370-2018	Keripik buah 과일칩	-	67-04		Masih Berlaku	
6	SNI 2984-2019	Squash 괴저음료	-	67-04-S1		Masih Berlaku	
7	SNI 4314-2018	Minuman kopi dalam kemasan 포장된 커피음료	-	67-04-S1		Masih Berlaku	
8	SNI 8772-2019	Minuman beralkohol beraroma 알코올 음료	-	67-04-S1		Masih Berlaku	
9	SNI 3752-2018	Susu bubuk rasa 분유	-	67-04-S1		Masih Berlaku	
10	SNI 3140-2-2018	Gula kristal - Bagian 2: Rafinasi 정제 설탕	-	67-04		Masih Berlaku	

Menampilkan 1 sampai 10 dari 139 data
1 2 3 4 5 ... 14

* 출처: 인도네시아 SNI 인증 검색사이트

40)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BSN) 국가표준(SNI) 인증 검색사이트(<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 SNI 인증마크 부착은 SNI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부착할 수 있음⁴¹⁾

- SNI 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요건 충족 증명서(사본), 제품의 물리적 형태를 보여주는 사진 또는 물리적 형태 특성을 설명하는 프로세스 증명서, 제품의 마케팅 계획, 거주지 증명서, 의무사항 준수 성명서 등을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SNI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제품, 포장, 라벨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SNI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등은 시험인증기관(LSPPro)에서 진행하며, 인도네시아 국가인가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만 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은 홈페이지⁴²⁾를 통해 정식 인가를 받은 시험인증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인증 신청시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 시험검사 전 시험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서류를 추가 제출함
 - 행정서류로는 △회사 정관, △신분증(KTP) 사본, △영업허가증(SIUP) 사본, 납세자 고유번호(NPWP), 브랜드 등록증명서, 품질 가이드, 제조 및 유통과정 흐름도 등이 있음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BSN)
홈페이지		www.bsn.go.id
연락처	담당부서	Deputy Development Standards
	전화번호	+62-21-5747043, 574704
	팩스번호	+62-21-5747045
	이메일	ker_int@bsn.or.id / bsn@bsn.or.id

41) SNI 인증마크 사용 절차에 관한 국가표준화기관(BSN) 규정(Peraturan BSN nomor 2 tahun 2017)

42) <http://sispk.bsn.go.id/LPK/LembagaSertifikasi?jns=6>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기등록된 SNI 인증표준 확인	수입업체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 홈페이지 (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2	시험인증기관(LSPro) 확인	수입업체	-	인가된 시험인증기관 확인
3	서류 제출	수입업체	-	기업 정관, 영업허가, 납세자 고유번호, 브랜드 등록증명서 등
4	취득비용 납부	수입업체	-	시험기관 견적 선행
5	서류검토	시험인증기관 (LSPro)	약 40일	-
6	제조공정 평가 및 샘플 검사	시험인증기관 (LSPro)	최대 12개월	기술서류 제출
7	SNI인증 발급	시험인증기관 (LSPro)		-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 취득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를 통해 인증 취득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수입업체의 무리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소요비용

- 인도네시아 외 국가에서 취득할 경우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샘플 평가원 등급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음

항목		비용	
		인도네시아 현지	인도네시아 외 국가
신청비		건당 500,000 루피아	건당 500,000 루피아
타당성 평가비	일반품목	건당 1,000,000 루피아	건당 1,800,000 루피아
	특수품목(압연강 등)	건당 2,000,000 루피아	건당 3,600,000 루피아
샘플링 비용 (평가원 등급)	평가 책임자	일일 2,000,000 루피아	일일 5,400,000 루피아
	평가자(Assessor)	일일 1,500,000 루피아	일일 4,050,000 루피아
	전문가(Expert)	일일 1,500,000 루피아	일일 3,600,000 루피아
	일반 사무원(Officer)	일일 1,000,000 루피아	일일 2,700,000 루피아
	서비스 수수료	건당 200,000 루피아	건당 1,800,000 루피아
인증비	기술위원회	건당 300,000 루피아	건당 1,125,000 루피아
	평가위원회	건당 1,000,000 루피아	건당 1,575,000 루피아
	인증 발급 검토 수수료	인증당 2,000,000 루피아	인증당 1,800,000 루피아
시험인증기 관 수수료	ISO9000 취득 시	-	업체당 10,000,000 루피아
	ISO9000 미취득 시	-	업체당 13,500,000 루피아
	감독비	-	업체당 4,500,000 루피아
자문비		-	건당 4,500,000 루피아

* 출처: 인도네시아 산업부(www.kemenperin.go.id)

[별첨]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마크 사용승인서



SURAT PERSETUJUAN PENGGUNAAN TANDA SNI

Nomor: 1 X Z MMYYYY

Kepala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memberikan persetujuan penggunaan tanda SNI, kepada:

Nama Perusahaan :
Alamat Perusahaan :
Alamat Pabrik^{*)} :
Jenis Barang, Jasa, Proses, Sistem atau Personal^{*)} :
Merek dagang^{*)} :
Tipe berdasarkan katalog produsen^{*)} :

atas pemenuhannya terhadap persyaratan acuan

Masa berlaku sampai dengan Diterbitkan di : JAKARTA
 Pada Tanggal :
 Kepala,

(.....)

*) sesuai peruntukan sertifikat

* 출처: SNI 인증마크 사용 절차에 관한 국가표준화기관(BSN) 규정(Peraturan BSN nomor 2 tahun 2017)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BPJPH 할랄 인증	국가명	인도네시아
마크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종교 · 문화적 인증
		도입시기	1995년
		유효기간	4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자국 내 무슬림 인구의 안전한 식품섭취를 위해 할랄 인증을 도입함 ◦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규 법령이 시행되어 할랄 인증기관이 민간인증기관(MUI)에서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으로 변경됨 ◦ 근거규정 - Regulation No.31 2019 - HK.08.1.53.05.13.2779 및 MOU04/Dir/LPPOM MUI/V/13 - Law No.33 Year2014
인증 내용	◦ 식품은 계도기간(5년)을 거쳐 2024년부터 할랄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임 ◦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적용품목	◦ 식품 · 음료류(장 · 소스류, 생수, 음료, 냉동식품, 가공식품, 제과제빵, 전통식품, 유아식, 보존식품, 건조식품, 캔가공품) ◦ 농 · 축 · 해산물류(우 · 계육, 유제품, 소시지류, 어묵류, 과일가공품, 곡물제품) ◦ 원재료류(당 · 염류, 향신료 · 색소, 밀가루, 조미료, 용매제, 식용류)

□ 취득

취득 유형	국내에서도 제품 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 기존의 MUI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1만 개 이상이며, 인증 제품 수는 약 20만개임		
타국가 통용여부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MUIS, 말레이시아 JAKIM등과 교차인정이 가능함		
소요기간	4~6개월	소요비용	품목당 약 400만 원~2,000만 원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신규 법령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업무는 기존 비정부 기관(MUI)에서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으로 이관되었으며 할랄 인증 적용대상이 수입식품으로 확대됨

- 식음료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며 5년간의 제도기간 중에는 기존처럼 할랄 미취득 제품도 수입 가능함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 변경 내용>

변경 전(LPPOM MUI 할랄 인증)	변경 후(할랄인증청(BPJPH) 할랄 인증)
- MUI 지정 인증대행기관을 통한 신청 후 인증 취득	- 직접 할랄인증청(BPJPH)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4년
- 식품 및 음료 제품의 할랄 인증은 선택사항	- 식품 및 음료 제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

-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협조로 현재 교차인증 업무 협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기존 할랄 인증기관인 LPPOM MUI는 할랄 인증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며 인증 진행 중에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LPPOM MUI가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LPPOM MUI는 인증기관에서 할랄검사소(LPH)로 변경되며, 당분간은 LPPOM MUI에서 할랄 검사를 시행할 예정임
- 재무부령 미제정으로 접수 후에 별도로 할랄 인증비용이 산정됨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 할랄 로고 사용을 허가하며 할랄 인증을 받기 전 식약청에 할랄 제품을 등록해야 함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수입제품의 등록과 함께 할랄 로고 부착에 대한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제품 겉면에 할랄 로고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시행령은 현재 논의 중에 있음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세부내용
기관명	LPPOM-MUI 글로벌 할랄 센터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홈페이지	www.halalmui.org/mui14	www.halal.go.id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081-1117-1091(Whatsapp)
	팩스번호	-
	이메일	sertifikasihalal@kemenag.go.id

<기존 MUI 인증 취득제품>



* 출처: 온라인 쇼핑몰(www.ebay.com)

3. 취득절차

□ 취득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 신청	제조 및 가공업체	-	서류 제출
2	수수료 납부	제조 및 가공업체	-	-
3	서류검토	할랄검사소(LPH)	약 1달	-
4	현장실사	할랄검사소(LPH)		-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할랄인증청 보고	할랄검사소(LPH)	약 1달	-
6	할랄 인증 심사	MUI 파트와위원회	약 1주	-
7	인증서 발급	BPJPH	1주	-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할랄인증청(BPJPH)을 통한 인증 신청은 현재 이메일⁴³⁾ 접수를 받고 있음
-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할랄 인증 실사원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제품의 모든 라인(입고, 생산, 보관 및 출고)을 실사함

<실사 시 준비 서류>

- | | |
|---------------------------|-----------|
| - 비인증 원료에 한하여 돼지미사용 시설증명서 | - 제품스펙 |
| - 에탄올 증명서 | - 시험성적서 |
| - 제조공정도 | - 수입신고필증 |
| - 품목제조보고서 | - 원산지 증명서 |

43) sertifikasihalal@kemenag.go.id

- 파트와위원회⁴⁴⁾는 할랄 유효성을 판단하여 인증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서 발급 시 해당 제품정보 및 유효기간 등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됨

□ 소요비용

- 신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인증 취득비용 또한 변경될 것으로 보이며 현지매체 보도 및 국내 인증대행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하기와 같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인증 취득 소요비용〉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등록비	소기업	없음	-
		중간 규모 이상의 기업	품목당 10만~50만 루피아	품목별 업체별 상이
	인증서 발행 수수료	품목당 100,000~500,000만 원		품목별 업체별 상이 (출처: 국내 인증대행기관 유선인터뷰)
	현장실사비	실비		2인1조로 구성된 실사위원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제품 검사비	품목당 350만~400만 루피아		원재료 검사 기준
기타	HAS 매뉴얼 구현비	품목별 상이		할랄 인증기관에서 명시한 비용 항목
	출판비	조건별 상이		할랄 인증기관에서 명시한 비용 항목
대행비		품목별 500만~1,500만		품목별 업체별 상이

* 주1: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2: 등록비는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출처: 인도네시아 현지매체(www.gomuslim.co.id),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6개社 유선 및 서면조사

44) 이슬람법학자 5명이 모인 의사결정 기구

□ 필요서류

- 업체 유형별 준비해야 할 서류에 차이가 있음

구분	서류 목록
가공 산업	- 할랄 인증을 받을 모든 제품에 대한 재료 목록 - 할랄 인증을 받을 각 제품의 재료 일람표 - 원료 근거서류 - 이전 제품의 할랄 인증서 사본(갱신 인증의 경우) - 신규 업체의 경우 HAS 매뉴얼 또는 할랄 인증 보유 업체의 경우 개정 HAS 매뉴얼 (해당되는 경우) - HAS 지위 또는 HAS 인증서 사본 (할랄 인증 보유 업체의 경우) - 인증 받을 제품의 생산 공정 흐름도 - 공장 위치 지도(신규 업체·공장의 경우) - 공장 배치도 - 돼지 무사용 시설 증명서 - 공장, 위탁 제조, 창고, 생산 전 준비 시설의 주소 목록 - 업체 소개
도축장	- 도축인 목록, 도축 방법, 마취 방법 - 이전 제품의 할랄 인증서 사본(갱신 인증의 경우) - 신규 업체의 경우 HAS 매뉴얼 또는 할랄 인증 보유 업체의 경우 개정 HAS 매뉴얼(해당되는 경우) - HAS 지위 또는 HAS 인증서 사본(할랄 인증 보유 업체의 경우) - 인증 받을 제품의 생산 공정 흐름도 - 도축장 위치 지도 - 도축장 건물 배치도 - 도축장 시설이 할랄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확인서 - 도축장, 독립 발골실, 창고 주소 목록 - 업체 소개신규

- 일반적으로 하기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기업명, 주소, 담당자,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등
- 인증상태 (신규·갱신)
- 전체 직원 수 및 생산능력
- 제조공장 정보, 제조업체 명칭 및 주소, 담당자
- 제품 정보 입력. 명칭, 제품군, 제품 유형
- 각 제품의 제조 공정시 사용된 원료를 세부적으로 기술한 제품 정보

[별첨] 할랄 인증서

<MUI 할랄인증서>



<HAS 인증서>



* 출처: 중국 식품업체 W社, 한국 식품업체 H社

필리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143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	국가명	필리핀
마크		등록기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 등록(수입업체)
		도입시기	1963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도입함 ◦ 근거규정 - Administrative Order No.2014-0029 - Republic Act No.3720
인증 내용	◦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등록 시스템 ◦ 식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한 등록
적용품목	◦ 가공식품 전반 ◦ 제품의 유형이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됨

□ 취득

취득 유형	필리핀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며 현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함		
취득현황	77,413개의 식품이 필리핀 식약청에 등록됨		
타국가 통용여부	필리핀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3~6개월	소요비용	(일반 가공식품) 품목당 200페소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품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제품 등록제도를 마련함

- 모든 가공식품은 필리핀 식약청에 제품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입면허를 취득한 업체만이 해당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 필리핀에 외국제품을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와 제품 등록이 필수로 요구됨
- LTO를 발급 받은 후 수입업체는 제품등록(CPR)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식품의 분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게 발생함

□ 필리핀 식품 수출 시 식품 관련 품질 및 안전 규정과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필리핀의 식품규정은 일반적으로 코덱스(CODEX)⁴⁵⁾기준에 따르며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해야 하며, 영어로 기재하여야 함

항목	필수 기재사항
제품명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하고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야 함
상품명 혹은 상표	등록된 상품명과 동일한 명칭을 기재
성분 목록	높은 함량 순으로 기재
중량	실중량 표기
업체명 및 주소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혹은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
제품번호	제품 포장용기에 양각 혹은 영구적인 형태로 표기
보관조건	실온보관 이외의 경우 보관조건을 명시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	‘일/월/연’ 으로 표기하며 날짜와 연도는 숫자, 월은 문자로 표기
알레르기 정보	성분 목록 아래에 기재
섭취방법	식품의 적절한 섭취법에 대하여 표기
영양정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칼로리를 표의 형태로 표기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89)

□ 본 인증은 필리핀 내 수입업체가 취득하는 인증이나, 국내 수출업체 또한 인증 프로세스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입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필리핀 식품의약청
홈페이지	www.fda.gov.ph
연락처	담당부서
	식품 규제 및 연구센터
	전화번호
	+63-2-857-1900
팩스번호	-
	-
이메일	cfrr@fda.gov.ph
	-
기타	-

45)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제식품규격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 제품등록은 총 6단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평가 신청서 제출	수입업체	3~6개월	Room No.107 Annex Building에 제출
2	결제지시서(Order of Payment) 발행	필리핀식약청		-
3	결제	수입업체		-
4	CPR 신청서 제출	수입업체		-
5	기술평가	필리핀식약청		-
6	CPR 발급	필리핀식약청		-

* 출처: 필리핀 FDA,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Application Process

- 하기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등록 가능함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계정개설 및 로그인	수입업체	3~6개월	-
2	제품등록 신청	수입업체		New Case 클릭 후 Application type에 Initial 선택
3	관련 정보 입력	수입업체		제품, 브랜드, 원료정보, 업체정보, 유통기한, 보관조건, 알레르기 정보 등 입력
4	요구서류 업로드	수입업체		각 파일 용량 최대 2MB, 전체 용량 최대 25MB, PNG 또는 PDF 파일
5	결제	수입업체		FDA 오프라인 납부 혹은 Bancnet 온라인 납부
6	검토완료 후 서류발급	필리핀식약청		-

* 출처: 필리핀 FDA, Food Registration Requirements To Secure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 소요비용

- 제품 유형에 따라 등록비용에 차이가 있음

구분	비용	
	최초 발급(1년간 유효)	갱신 발급(5년간 유효)
제품 유형(1)	품목당 200 페소	품목당 1,000 페소
제품 유형(2)	품목당 250 페소	품목당 1,250 페소
식품보충제	품목당 1,000 페소	품목당 5,000 페소
생수	품목당 1,000 페소	품목당 5,000 페소

* 주: Category 분류는 하기 표 참조

* 출처 : 필리핀 보건부, Administrative Order No.50, 2001

〈제품 유형 분류〉

제품 유형(1)	제빵, 알코올 성분이 없는 음료, 사탕 및 제과, 코코아 관련 제품, 커피, 차 및 비유 제품 크리머, 조미료, 소스, 젤라틴, 디저트, 낙농품, 드레싱, 밀가루, 수산물, 과일, 채소류 및 버섯류, 면류, 파스타, 견과류, 오일, 쇼트닝, 스낵, 시리얼, 설탕 등
제품 유형(2)	알코올 음료, 식품첨가제, 차류(허브), 생수, 유아 및 영아용 식품, 특수 식이목적 식품, 유전자변형식품, 필리핀에서 혼하지 않은 해외 민속음식

* 주: 필리핀 보건부, Administrative Order 37

□ 필요 서류

- 하기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밀봉되어야 함
 - 수입제품은 녹색, 현지제품은 황색, 재신청제품은 적색, 자동갱신 제품은 청색의 색상 태그(Size 5" × 8")가 부착되어야 하며, 폴더는 플라스틱의 확장 가능한 폴더여야 함

-
- 평가표(Assessment Slip)
 - 수입업체/유통업체의 신청서
 - 공증된 진술서(Affidavit of Undertaking)
 - 제품 분류에 따른 제품 리스트
 - 라벨, 다각도(최소 2개 측면)에서 촬영된 제품사진
 - 다음 서류 중 하나의 원본 스캔본:
 - 대리점계약서 / 판매인증서 / 위촉장 / 견적송장 / 제조업체의 양해각서
 - 다음 서류 중 하나:
 - 제조자 GMP 인증서 혹은 동등한 서류 / 유효한 위생증명서 / 유효한 ISO 22000 인증서 / 원산국에서 발행한 HACCP 인증서 / 원산국에서 인증된 기관이나 상공회의소 혹은 원산국의 필리핀 영사관의 자유판매증명서
 - 가능한 경우 기술 혹은 영양연구 또는 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검사증명서 등 입증 서류
 - 표준과 규제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

[별첨]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제품 등록 양식

□ Assessment Slip

PAICS COPY

Bureau of Food and Drugs
Policy, Planning, and Advocacy Division
ASSESSMENT SLIP
FOOD

DATE: _____	RSN: _____
Applicant Company : _____	
Address/Tel no. : _____	
LTO No./Validity : _____	
☐ Manufacturer ☐ Distributor/Wholesaler ☐ Importer ☐ Exporter ☐ Wholesaler	
PRODUCT INFORMATION	
Brand name and Product Name : _____	
Product Classification (Category/Code) : _____	
List of Products : _____	
Number of Products Applied : _____	
Packaging Types and Sizes : _____	
Registration Number (FR) : _____ Validity: _____	
Applicant Company : _____	
Manufacturer : _____	
Repacker : _____	
Distributor : _____	
Others (Pls. specify) : _____	
Number of Samples : _____ Loose Labels: _____	
APPLICATION DETAILS	
Application Type	Category I Category II Food Supplement Bottled Water
Initial	☐ ☐ ☐ ☐
Renewal	☐ ☐ ☐ ☐
Renewal with Surcharge	☐ ☐ ☐ ☐
Re-application (OLD RSN: _____)	☐ ☐ ☐ ☐
No. of CPR Validity Applied for (year/s) : _____	
OTHER REQUESTS	
☐ Amendment of CPR ☐ Provisional Permit to Market (PPM) ☐ Re-issuance/Reconstruction of CPR ☐ Export Certificate ☐ Referral to ACB ☐ Others, pls. specify	
PAYMENT DETAILS	
EVALUATOR	CASHIER
Fee : _____	Amount : _____
Surcharge : _____	OR Number : _____
TOTAL : _____	Date Issued : _____
Evaluated by : _____	Received by : _____
RECEIPT DETAILS	
Name : _____	
Signature : _____	

ACCOUNTING SECTION'S COPY

Annex E

Bureau of Food and Drugs
Policy, Planning, and Advocacy Division
ASSESSMENT SLIP
FOOD

DATE: _____	RSN: _____
Applicant Company : _____	
Address/Tel no. : _____	
LTO No./Validity : _____	
☐ Manufacturer ☐ Distributor/Wholesaler ☐ Importer ☐ Exporter ☐ Wholesaler	
PRODUCT INFORMATION	
Brand name and Product Name : _____	
Product Classification (Category/Code) : _____	
List of Products : _____	
Number of Products Applied : _____	
Packaging Types and Sizes : _____	
Registration Number (FR) : _____ Validity: _____	
Applicant Company : _____	
Manufacturer : _____	
Repacker : _____	
Distributor : _____	
Others (Pls. specify) : _____	
Number of Samples : _____ Loose Labels: _____	
APPLICATION DETAILS	
Application Type	Category I Category II Food Supplement Bottled Water
Initial	☐ ☐ ☐ ☐
Renewal	☐ ☐ ☐ ☐
Renewal with Surcharge	☐ ☐ ☐ ☐
Re-application (OLD RSN: _____)	☐ ☐ ☐ ☐
No. of CPR Validity Applied for (year/s) : _____	
OTHER REQUESTS	
☐ Amendment of CPR ☐ Provisional Permit to Market (PPM) ☐ Re-issuance/Reconstruction of CPR ☐ Export Certificate ☐ Referral to ACB ☐ Others, pls. specify	
PAYMENT DETAILS	
EVALUATOR	CASHIER
Fee : _____	Amount : _____
Surcharge : _____	OR Number : _____
TOTAL : _____	Date Issued : _____
Evaluated by : _____	Received by : _____
RECEIPT DETAILS	
Name : _____	
Signature : _____	

□ Affidavit of Undertaking

ANNEX C

TEMPLATE
[[COMPANY LETTERHEAD]]

AFFIDAVIT OF UNDERTAKING

I, _____ Filipino Citizen, of legal age, with residence address at _____,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the Law, do hereby certify that:

1. I am the President/General Manager of _____, with business address located at _____, a duly registered company with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nder LTO Number _____ issued on _____ valid until _____.
2. That I hereby appoint and authorize _____, of legal age, residing at _____ as the company's Regulatory Officer in replace of _____ whose name appears as representative in the E-Registration System of the Philippin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3. That _____ is also hereby authorized to transact in behalf of the company for E-Registration concerns and matter.

Subscribed and sworn to me this _____ day of _____ at _____.

NOTARY PUBLIC

Doc No. _____
Page No. _____
Book No. _____
Series of _____

싱가포르



싱가포르 식품청(SFA) 업체등록151



WAREES(MUIS) 할랄 인증155

싱가포르 식품청(SFA) 업체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싱가포르 식품청(SFA) 업체등록	국가명	싱가포르
마크		등록기관	싱가포르 식품청 (SFA, Singapore Food Agency)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등록(수입업체)
		도입시기	-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싱가포르는 식품의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업체등록을 통해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등록 내용	◦ 싱가포르 내 식품 수입 시 필수 취득 ◦ 육류 및 어류, 과일 및 채소류, 신선란은 수입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 가공식품은 제품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적용품목	육류 및 어류, 과일 및 채소류, 신선란,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식품 전반

□ 취득

취득 유형	싱가포르 소재 수입업체가 신청하며 현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함		
취득현황	◦ 총 14,384개社 수입면허 및 등록 승인 - 육류 및 어류 수입업체 2,483개社 면허 취득 - 과일 및 채소류 수입업체 1,230개社 면허 취득 - 계란 및 가공식품 수입업체 10,671개社 등록 승인		
타국가 통용여부	싱가포르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1~5일	소요비용	연간 84~378 싱가포르달러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싱가포르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수입업체의 수입면허 및 등록제도를 운영함

- 식품의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싱가포르는 모든 식품을 수입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식품 수출이 가능함
- 식품의 유형에 따라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식품과 등록이 필요한 식품으로 구분됨
 - 육류 및 어류, 과일 및 채소류, 계란류는 수입면허(License) 취득이 요구됨
 -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업체등록(Registration) 절차를 거쳐야 함

□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의 수입면허 취득 혹은 등록에 있어 부가적인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 식품의 수입면허 취득 및 등록은 식품청에서 주관함
 - 기존 AVA(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에서 수행하였으나 2019년 4월 식품관리체계를 통합하면서 싱가포르 식품청(SFA)이 출범함
 - 2019년 4월 1일 이전 발급된 면허 및 등록은 서류상에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
- 해당 절차는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함
 - ACRA는 업체에 사업자등록번호격인 UEN(Unique Entity Number)를 부여함
 - UEN을 발급받은 업체는 싱가포르세관에 UEN을 등록하고 GIRO(지로) 계정을 개설해야 함

□ 수입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은 용이하나, 이후 식품 수입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식품의 유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Sale of Food Act(Chapter 283)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Chapter 283은 식품의 판매에 있어 안전하고 적합하며 공공보건을 보장할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육류 및 어류 관련 규정은 Wholesome Meat and Fish Act(Chapter 349A)로 도축 및 가공, 포장, 검사, 수입, 유통, 판매, 운송, 수출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음
 - 과일 및 채소류관련 규정은 Control of Plants Act(Chapter 57A)으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재배 및 병충해로부터의 보호, 수입, 운송, 수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신선란 관련 규정은 Animals and Birds Act(Chapter 7)는 동물 및 조류의 질병, 복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식품 유형별 관련법령>

식품유형	관련법령
육류 및 어류	- Wholesome Meat and Fish Act - Sale of Food Act
과일 및 채소류	- Control of Plants Act - Sale of Food Act
신선란	- Animals and Birds Act - Sale of Food Act
가공식품	- Sale of Food Act

- 식품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함

<식품 라벨링 요건>

- 상품명
- 원료
- 과민증(Hypersensitivity)을 일으키는 성분 표시
- 순중량
- 생산자 혹은 제조사의 업체명 및 주소
- 원산지



기재사항

라벨링 예시

* 주: 라벨링에 표시되는 글자의 높이는 1.5mm 보다 작지 않아야 함

* 출처: SFA

- 수입허가는 Networked Trade Platform⁴⁶⁾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 수입허가의 경우 실험보고서(Laboratory report)가 요구될 수 있음
 - 수입허가가 승인되면 수입업자는 CCP(Cargo Clearance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본 인증은 싱가포르 내 수입업체의 등록제도이나, 국내 수출업체 또한 인증 프로세스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입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홈페이지		www.sfa.gov.sg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65-6805-2871
	팩스번호	-
	이메일	-

46) <https://www.ntp.gov.sg>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 제출	수입업체	1일 (신선란은 5일)	GoBusiness Licensing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2	비용 납부	수입업체		GIRO 혹은 전자결제로 납부
3	면허 취득/등록 완료	SFA		-

* 주: 육류 및 어류, 과일 및 채소류는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당일처리가 가능함

* 출처: SFA

- GoBusiness Licensing 웹사이트를 활용한 신청방법은 하기와 같음⁴⁷⁾
 - CorpPass ID를 이용해 로그인하여 UEN 번호를 입력함
 - CorpPass는 전자행정서비스용 기업등록번호이며 UEN(Unique Entity Number)은 싱가포르의 사업자등록번호임
 - License Application 탭을 선택하여 식품의 유형에 맞게 필요한 항목을 선택함
 - 면허가 필요한 경우와 등록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됨
 - Apply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업체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함
 - 이후 정보를 확인하고 Start를 클릭하면 제품유형과 업체주소, 비상연락망을 입력함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페이지를 통해 비용을 납부해야하며, 면허 혹은 등록 승인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신청업체에 고지함
 - 비용 납부는 GIRO 혹은 전자결제를 통해 납부 가능함

□ 소요비용

- 수입면허에 발급 시 소요되는 비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계란류 및 가공식품의 면허 취득 및 등록에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육류 및 어류, 과일 및 채소류는 당일 처리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할 수 있음

품목	수입면허 발급비
육류 및 어류	연간 84 싱가포르달러
과일 및 채소류	연간 378 싱가포르달러
신선란	없음
가공식품	없음

* 출처: SFA

47) www.sfa.gov.sg/docs/default-source/e-service/step-by-step-guide/guide-on-application-for-licence-and-registration.pdf

WAREES(MUIS) 할랄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WAREES(MUIS) 할랄 인증	국가명	싱가포르
마크		등록기관	Warees Halal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도입시기	1978년
		유효기간	2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싱가포르는 젊은 무슬림 층의 비율이 높고 무슬림 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비이슬람 국가로서, 무슬림 인구의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할랄 인증제도를 도입 ◦ 근거규정 - 싱가포르 할랄 표준(Singapore MUIS Halal Standard)
인증 내용	◦ 할랄 품질경영시스템(Hal-MQ)을 중심으로 할랄 식품에 대해 심사하고, 음식이나 식품관련 산업의 성격에 따라 7종류의 할랄 인증이 가능함 ◦ MUIS에서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산하 Warees Halal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적용대상	◦ 음식,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를 이루는 기초원료, 부자재 등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 식품·음료류(장·소스류, 생수, 음료, 냉동식품, 가공식품, 제과제빵, 전통식품, 유아식, 보존식품, 건조식품, 캔가공품) ◦ 농·축·해산물류(우·계육, 유제품, 소시지류, 어묵류, 과일가공품, 곡물제품) ◦ 원재료류(당·염류, 향신료·색소, 밀가루, 조미료, 용매제, 식용류)

□ 현황

취득유형	승인받은 국내 인증대행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제품 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		
취득현황	◦ 전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18년 기준 4630개이며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기준 32,330개, 2018년 38,362개임 ◦ Warees Halal을 통해 인증을 취득한 한국 기업은 약 20개임		
타국가 통용여부	싱가포르의 무이스(MUIS)는 인도네시아의 무이(MUI)와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과 모두 교차인정이 가능하며,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MF)와의 교차인증도 인정하고 있음		
소요기간	2개월~4개월	소요비용	약 500만 원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MUIS(싱가포르 이슬람종교위원회)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⁴⁸⁾

□ 할랄 식품은 이슬람 종파별로 ‘할랄’ 인정기준이 달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어려움

- 알코올·도축방식 등에서 각 나라별·종파별로 차이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 내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0%, 알코올(에탄올) 0.1%(원재료 내 0.5% 미만) 미만이어야 하고 기계식 도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할랄이 아닌 원·부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며 생산라인, 창고, 작업자, 이동수단 등에 할랄 라인을 별도로 갖춰야 함

□ MUIS 할랄 인증은 2011년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 인증과 교차인증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KMF인증을 취득하여 싱가포르로의 할랄 식품 수출이 가능함

- MUIS 할랄 인증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안 이슬람 국가와 걸프 협력회의(GCC) 국가의 교차인증을 인정하고 있음⁴⁹⁾

□ 할랄 품질경영시스템(Hal-MQ)을 중심으로 할랄 식품에 대해 심사하고, 음식이나 식품관련 산업의 성격에 따라 7개 유형의 할랄 인증이 발급됨

-
- 레스토랑, 푸드코트 등 식당
 - 해외 할랄 인증을 받은 외국산 수입·수출품
 - 주방 등의 음식 조리 공간
 - 도축장
 - 싱가포르 내에서 생산·가공된 제품
 - 제조시설
 - 창고 및 보관시설
-

□ 싱가포르 지역사회개발 및 법적 정부기관인 MUIS에 의해 할랄 인증관련 표준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적용범위에서부터 할랄 식품의 취급과 가공까지 다루고 있음

〈싱가포르 할랄 표준의 구성(Singapore MUIS Halal Standard)〉

1조	할랄의 적용범위
2조	일반지침 및 위생관련 타 규정
3조	용어 정의 1)식품 2)할랄 3)할랄 인증 4)할랄 인증 마크 5)취급 6)장소/위치 7)나지스 ⁵⁰⁾ 8)가공 9)샤리아 법
4조	할랄 식품의 취급과 가공에 대한 일반 요건 및 시설요건

48) 온라인 뉴스 중기이코노미(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016)

49) 걸프협력회의(GCC)에는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이 속함

50) 나지스란 이슬람 율법상 의식적으로 불결한 자를 가리키는 말임

- 할랄 표준에서는 제품의 원료나 시설, 도구의 오염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최소 2명의 이슬람교도가 할랄 식품의 모든 취급, 가공 과정에 입회하거나 감독해야 함
- 모든 할랄 식품은 현지 위생상태 및 위생시설 요건과 기타 관련 Codex 규격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 및 보관을 실시하여야함
 - 비할랄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샤리아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도축된 동물의 성분의 함유가 없는 제품이어야 함
 - 비할랄 식품 및 나지스 품목과 섞이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들과 관련된 장소와 분리되어야 함

□ MUIS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Warees Halal의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야 함

- 싱가포르가 아닌 외국에 위치한 시설이나 제품에 대해서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Warees Halal을 통해 할랄 인증 신청이 가능함
- 국내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Warees Halal의 할랄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대행기관 활용 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사전심사는 공장방문이나 서류검토 등으로 이루어지며, 제품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시험을 의뢰하기도 함
 - 사전심사 시 필요한 서류에는 공장등록증, ISO인증서, 공정도, 원재료 목록 등이 있음
 - 취득 선(先)조건으로 ISO9001, ISO 22000 혹은 HACCP 인증 중 최소 1종류 이상은 취득을 완료해야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Warees Halal
홈페이지		www.wareeshalal.sg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65-6291-2702
	팩스번호	+60-03-8892 5005
	이메일	info@wareeshalal.sg
기타		MUIS 산하 비영리 기관

<MUIS 인증 취득제품>



* 출처: 페이스북(www.facebook.com/yolkychips/photos), 온라인 쇼핑몰(www.qoo10.sg)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할랄 인증 온라인 신청	제조업체	14일	LicenceOne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2	신청수수료 지급	제조업체	-	-
3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공인인증기관	-	-
4	승인 및 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	2~3개월	-
5	정기 감사/사후관리	공인인증기관	-	-

* 출처 : MUIS 홈페이지(https://eservices.muis.gov.sg/ifaq/apps/fcd_faqlmain.aspx#FAQ_155736)

- 할랄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MUIS 할랄 원칙에 따라 원료·직원·시스템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하며 빠른 인증취득을 위해서는 사전확인이 필요함
 - 원료 요구 사항: 사용된 모든 원료는 할랄이어야 하며 증빙 서류로 입증되어야함
 - 직원 요구 사항: 할랄 인증을 신청한 각 구내에 최소 2명 또는 3명의 무슬림 직원이 있어야함(요식업 또는 중앙 주방의 경우 3명)
 - 시스템 요구 사항: 싱가포르 MUIS 할랄품질관리시스템(HalMQ)의 10가지 원칙을 준수함
-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LicenceOne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⁵¹⁾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일반 신청과 빠른 신청이 있으며,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정보와 할랄 담당자 정보, 보조문서(메뉴/제품 목록, 재료 목록, 평면도, 레이블 등)를 입력함
- 신청 이후에 각 업체 내에서의 할랄 담당자 및 보조직원이 MUIS가 임명한 교육 제공 기관인 Warees Halal의 할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업체별로 사전 서류 준비정도나 할랄 인증기준 부합 정도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약 2~3개월 소요됨
 - 인증 발급 2년 동안 유효하며, 취득 이후에도 사후관리 및 인증 갱신이 필요함
- 갱신은 할랄 인증서 소유업체는 인증서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실시하여야하고, 정기적으로 불시 감사를 시행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인증 취득을 취소할 수 있음

51) <https://licence1.business.gov.sg>

□ 소요비용

〈싱가포르 MUIS 할랄 인증 소요비용 기준〉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신청비	일반	건당 159 싱가포르달러
		신속	건당 340 싱가포르달러
	실사비	실비	항공료 및 숙박비
	할랄 인증서 발급비	가금류 도축장	시설당 250 싱가포르달러
		케이터링/주방	매장당 1,000 싱가포르달러
			매장당 1,200 싱가포르달러
		유치원 내 주방시설	매장당 375 싱가포르달러
		보관시설	시설당 963 싱가포르달러
		레스토랑	면적 186m ² 이하
			면적 186m ² 이상
		스낵바/제과점	매장당 710 싱가포르달러
		제품	제품당 750 싱가포르달러
			제품당 800 싱가포르달러
			제품당 910 싱가포르달러
			제품당 1,210 싱가포르달러
			제품당 40 싱가포르달러
	할랄 인증서 발급 수수료	건당 150 싱가포르달러	-
대행비		500만~1,500만 원	-

- * 주1: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주2: 상기 비용에 개별적으로 싱가포르 상품서비스세(GST, 7%)가 부과됨
- * 출처: MUIS 홈페이지(www.muis.gov.sg/Halal/Halal-Certification/Application-Fees)

□ 필요서류

필요서류 및 기재사항

- 제품/메뉴 항목 및 원료의 목록
- 제품 레이블 그림 (제품 / 전체 공장 구성표)
- 배달 차량 사진 (요식업 / 제품 / 전체 공장 구성표)
- 인증을 받을 건물의 평면도
- 할랄 인증, 규격 및 시험 분석 보고서와 생산 원료의 할랄 인증사본
- 무슬림 직원(할랄 팀)이 승인한 모든 원료의 구매송장 및 배달 주문서
- 할랄팀 구성원의 임명장 또는 공고장
- 할랄팀 관리 회의록
- 무슬림 직원과 할랄팀 구성원 한명의 할랄 교육인증서
- 제품 생산과정 플로우차트
- HAPs의 목록과 허용한계 및 처방지침
- 각 HAP에 대한 승인 모니터링 절차 및 기록
- 각 HAP에 대한 승인 시정조치 절차 및 기록
- 내부 감사 보고서 할랄 시스템 변화에 대한 기록

* 출처: MUIS 홈페이지(www.muis.gov.sg)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163



JAKIM 할랄 인증

.....166

SIRIM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SIRIM 인증	국가명	말레이시아
마크		인증기관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 (SIRIM,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시험 및 인증대행기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인증
		도입시기	1994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인증 도입을 통해 제품 품질 및 안전이 입증된 제품만 말레이시아 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함 - 근거규정 - 말레이시아 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 회사법(Companies Act 1965) - 말레이시아 식품법(Food Act 1983)
인증 내용	- 말레이시아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SIRIM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식품의 경우 임의인증 품목에 해당되며 말레이시아 내 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증이 가능함 -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직접 규정을 제시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적용품목	- 설탕, 밀가루, 소스류, 인스턴트 면류 등 가공식품 일부에 대해 적용됨 - 이외에도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 취득

취득 유형	말레이시아에서 제품 검사를 진행한 후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말레이시아 내에서만 통용됨		
소요기간	2개월 이상	소요비용	2,500링깃 이상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SIRIM 인증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이 말레이시아 표준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함을 인증기관인 SIRIM을 통해 확인받은 것을 의미함

- SIRIM 인증과 관련된 말레이시아 기관은 인증 및 시험기관(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과 말레이시아 표준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부 산하 표준청(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이 있음

□ SIRIM 인증은 임의인증이 원칙이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품목만 의무인증 대상임

- 말레이시아 표준(MS, Malaysian Standard)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의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인증 받고자 하는 표준을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에 제시해야 함
 -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은 이를 확인하여 해당 표준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인증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함
 - 표준에 대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표준청 홈페이지⁵²⁾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 기준 설탕, 밀가루, 칠리소스, 인스턴트 면류 등이 SIRIM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⁵³⁾에 따르면, 상기 품목 외에도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은 SIRIM 인증을 적용할 식품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 강제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기기기, 가스공급제품, 방화시설, 오토바이 헬멧, 안전벨트 등으로 주로 에너지, 화재 안전, 교통, 통신 등 산업제품이 해당됨

□ 인증 취득 후 제품에 ‘M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며, 인증 제품 및 라이선스 사용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⁵⁴⁾에 자동으로 등록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홈페이지		www.sirim-qas.com.my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60-3-5544-6400
	팩스번호	+60-3-5544-6810
	이메일	cserviceqas@sirim.my
기타		-

52) 말레이시아 표준청(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홈페이지(www.msonline.gov.my)

53) New Straits Times

(www.nst.com.my/news/nation/2017/12/316102/all-food-drink-products-may-require-sirim-certification-future)

54) www.malaysiancertified.com.my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 문의	제조업체	-	신청 전 질의서 제출
2	인증 신청	제조업체	1~2주	신청서 제출 및 비용 납부
3	서류심사	SIRIM QAS International	2개월 이상	-
4	현장실사	SIRIM QAS International		-
5	최종보고서 작성 및 인증서 발급	SIRIM QAS International		미납 비용을 추가 납부함

- 제조업체는 인증 신청에 앞서 인증 질의서(Questionnaire)를 제출하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은 인증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견적서를 발송함
 - 인증 질의서는 정해진 양식(PCS/FOR/01-1)에 작성해야 하며, 의무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경우 제조업체는 적용할 표준을 제시해야 함
- 견적서를 수취한 후 제조업체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관련 비용을 납부함
- 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신청 표준과 제출 서류를 검토하며 현장실사 단계에서는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검사장비 적합성, 기록관리시스템 검사 등을 실시함
 - 필요 시 샘플테스트를 진행하며, 현장실사 시 확인한 제품 샘플은 말레이시아에서 실험실 시험이 실시됨
- 인증 발급 후에도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은 불시 검사를 실시하며 인증은 1년간 유효함
 - 인증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갱신해야 함

□ 소요비용

- 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신청비 건당 500링깃(한화 약 14만원), 현장실사 수수료 1일 1,000링깃(한화 약 29만원), 최종보고서 작성 수수료 1일 1,000링깃(한화 약 29만원)이 소요됨⁵⁵⁾
 - 시험비용은 제품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현장실사를 위한 항공 및 숙박비용은 실비로 별도 지불해야 함

□ 필요서류

- 인증 취득 시 인증 질의서(Questionnaire) 및 신청서, 관계당국의 승인 문서, 상표 및 제품명에 관한 승인서, 제조업체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함

55) www.sirim-qas.com.my

JAKIM 할랄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JAKIM 할랄 인증	국가명	말레이시아
마크		인증기관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도입시기	1994년
		유효기간	2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말레이시아의 인구 60%이상이 무슬림인 거대 할랄 시장이며, 무슬림 인구의 올바른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서 인증을 도입함 - 근거규정 - 할랄 식품표준(MS1500:2009) - 할랄 인증을 위한 절차매뉴얼 (2014년 3차 개정)
인증 내용	- 육류 및 육류기반의 제품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외 식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후에 수수료납부가 완료되면 서류검토, 현장실사, 최종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됨 -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적용품목	- 음식,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를 이루는 기초원료, 부자재 등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 식품·음료류(장·소스류, 생수, 음료, 냉동식품, 가공식품, 제과제빵, 전통식품, 유아식, 보존식품, 건조식품, 캔가공품) - 농·축·해산물류(우·계육, 유제품, 소시지류, 어묵류, 과일가공품, 곡물제품) - 원재료류(당·염류, 향신료·색소, 밀가루, 조미료, 용매제, 식용류)

□ 취득

취득 유형	- 국내 검사기관의 결과를 인정하나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최종 발급받을 수 있음 -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KMF 인증과 교차인증을 허용함
취득현황	2018년 한국에서 약 7개 업체의 140여개의 품목에 대해 인증 취득
타국가 통용여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포함한 약 40개국 70여개 이상에서 인정됨
소요기간	4개월~6개월
소요비용	약 250만 원~1,500만 원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말레이시아에서의 할랄 인증은 1953년 동물법에 근거하여 육류 및 육류기반의 제품만이 의무로 취득해야 하며, 이외 식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음
- JAKIM 할랄 인증 신청 대상자로는 제조업체, 포장업체, 도축업장, 물류업체 등이며 인증대상으로 모든 식품 가공 산업뿐만 아니라 도축장이나 식당·연회 서비스업체 까지도 적용됨
 - 술을 제조하는 목적으로 생산된 품목은 할랄 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며, 알코올 허용 수치는 식음료 0.5%, 청량음료 1%임

인증신청 대상자	- 제조업체/생산자 - 대리점/상인 - 재포장업체 - 도살장/도축장 - 물류 기업
인증신청 대상	- 음식,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를 이루는 기초원료, 부자재 등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할랄) - 쇠고기, 버팔로, 양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 가공 생선제품, 우유 및 유제품, 유아식품, 계란 제품, 식물 및 가공식물 제품, 과일류, 밀가루, 전분 제품, 밥과 반찬, 파스타제품, 빵과 케이크, 유화제, 베이커리용 설탕, 연화제, 간식 및 스낵류, 초콜릿, 아이스크림, 물과 음료, 젤라틴, 해초가루, 곤약, 껌, 조미료, 식초, 감미료, 카페인, 방부제, 유산균, 단백질 및 아미노산, 비타민 등 영양소

-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할랄 제품들은 JAKIM인증 또는 JAKIM과 교차인정되는 할랄 인증마크만 부착할 수 있음
 - JAKIM 인증과 교차인정이 가능한 외국 할랄 인증기관은 약 40개국 70여 개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할랄 인증도 해당됨
 - 일반적으로 할랄 인증 신청 시 제품의 원재료 증빙 서류로서 타 할랄 인증서를 평가하며, 인정되지 않는 기관의 할랄 인증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 할랄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JAKIM 인증을 취득하거나 KMF 인증을 취득하여 교차인정을 받을 수 있음
 - 교차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JAKIM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JAKIM의 할랄 인증을 직접 받는 경우가 다수 있음⁵⁶⁾

56) 「말레이시아 할랄식품시장 진출가이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 할랄 인증 기준은 말레이시아 표준관리부 산하의 표준개발청에서 규정한 할랄 관련 MS표준을 따르며, 할랄 식품 생산에서부터 배달까지의 지침이 존재함

-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율법과 관련사항에 대한 말레이시아 지침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함

〈할랄 인증 기준 MS표준〉

MS 1500:2009	할랄 식품 생산, 제조, 처리 및 저장 관련 지침
MS 2594:2015	식수 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요건
MS 1900:2005	이슬람 관점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MS 2610:2015	할랄 관광 및 서비스 제공 시 관리지침
MS 2300:2009	이슬람 관점에서 요구하는 조직 설립 및 관리 시스템 기준
MS 2400-1:2010	제품 및 화물의 운송 요건
MS 2400-2:2010	배달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창고 저장 관련 지침
MS 2400-3:2010	소매 단계에서 할랄 무결성 관리 요건

* 출처: 말레이시아 표준(MS)기구 온라인 사이트(www.jsm.gov.my)

- 할랄 식품 표준을 바탕으로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Manual Procedure for Halal Certification Malaysia, Third Revision, 2014)을 발표하였고, 현재 할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업무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할랄보장시스템(HAS)이란 식품을 생산하고 운송·보관함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할랄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이며,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의 할랄보장시스템 지침서(Guidelines for Halal Assurance Management System of Malaysia Halal Certification)를 마련하고 있음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사항
기관명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홈페이지		www.halal.gov.my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60-03-8892 5000
	팩스번호	+60-03-8892 5005
	이메일	pr_halal@islam.gov.my

〈JAKIM 인증 취득제품〉



* 출처: 온라인 쇼핑몰(www.jayagrocer.com)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 및 서류 제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신청 후 5일 이내	추가서류 하기 참조
2	수수료 청구서 발송 및 납입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5일~14일 이내	-
3	현장실사 및 샘플링 분석	인증기관	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	-
4	심사보고서 작성	인증기관	-	-
5	인증서 승인 및 발급	인증기관	승인 후 5영업일 이내	-

* 출처: JAKIM 홈페이지(www.halal.gov.my)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홈페이지(<http://apps.halal.gov.my>)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사를 시행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함
- 서류심사 통과 및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현장실사 스케줄이 정해지고 현장실사가 진행되는데,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샘플링을 통해 실험실 분석이 진행됨
- JAKIM은 인증기간 동안 모든 할랄 표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업체, 식품 취급 사업장 및 도축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함
 - 갱신의 경우, 신청서는 인증서 유효기간(2년) 만료 3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재승인 신청 후 동일한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쳐 인증 기간을 연장해줌
- 온라인 할랄 인증 절차 및 필요서류는 국내(KMF) 및 국제인증(JAKIM)이 모두 동일하며, 소요기간은 제품별 업체별로 차이를 보임
 - 신청자가 할랄 인증 증명의 모든 조건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의 경우, 4~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소요비용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신청비	신청업체 유형 및 연간 매출에 따라 상이		하기 참조
	실사비	실비		항공료 및 숙박비
	외국 기업 인증 수수료	ASEAN 회원국 소재	2,100링깃	외국 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수료 부과
		외국 소재	2,100달러	
컨설팅비		품목당 250만~500만 원(인증대행 수수료 제외)		품목별 업체별 상이
대행비		품목당 1,000만~2,000만 원(신청비 등 제반비용 포함)		품목별 업체별 상이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JAKIM 홈페이지(www.halal.gov.my),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8개社 유선 및 서면조사

<신청업체 유형별 인증 신청비 구분>

유형	구분	비용(연간)
제품, 물류 및 제조서비스	연간 매출 300,000링깃 이하	100링깃
	연간 매출 300,000~15,000,000링깃	400링깃
	연간 매출 15,000,000~50,000,000링깃	700링깃
	연간 매출 50,000,000링깃 초과	1,000링깃
호텔, 주방, 레스토랑	4성급 및 그 이상	매장당 500링깃
	3성급 및 그 이하	매장당 200링깃
식품 케이터링 서비스	연간 매출 500,000링깃 초과	100링깃
	연간 매출 500,000~5,000,000링깃	400링깃
	연간 매출 5,000,000링깃 초과	700링깃

* 출처: JAKIM 홈페이지(www.halal.gov.my)

□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향후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에서 감사의 항목으로 적용됨

필수 서류 및 기재사항	- 회사명 - 사업자등록증 - 사업·제조 라이선스 - 제품명과 제품설명 - 포장재료 타입 - 제품 라벨·디자인 - 식품원료 - 식품 원료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 식품원료의 할랄 상태, 필수 식품원료의 설명서 또는 할랄 인증서 (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만) - 제조과정 순서도와 생산 절차 - HACCP, ISO, GHP, GMP, TQM 등과 같은 다른 인증서 - 공장 및 부지 지도 - 배치도 - 육류 및 육류 기반 제품용 말레이시아 수의국의 수입허가서 사본 - 연간 손익계산서 사본 - 기간이 유효한 식품원료의 할랄 인증 사본 및 제품설명서 사본 - 생산 공장·식당·도축장에서 근무하는 2명 이상의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신분증 및 제안서 사본 - 도축 자격증 - 도축장을 위한 수의국 발급 수의학 건강증명서(VHC) - 기간이 만료된 할랄 인증서 사본
--------------------	---

* 출처: JAKIM 홈페이지(www.halal.gov.my)

캄보디아



캄보디아표준기구(ISC) 인증175

캄보디아표준기구(ISC)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캄보디아표준기구(ISC) 인증	국가명	캄보디아
마크		인증기관	캄보디아표준기구(ISC)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인증
		도입시기	2004년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제품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함 ◦ 근거규정 - Law on Standards of Cambodia(2007) - Law on Management of Quality and Safety of Product and Services(2000)
인증 내용	◦ 제품이 캄보디아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임 ◦ ISC를 통한 제품인증으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ISC Mark 부착이 가능함 ◦ 식품의 경우 국제식품규격(CODEX)를 따르며,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면 됨
적용품목	◦ (필수) 전기 및 전자제품류⁵⁷⁾ ◦ (자율) 식품 등 기타 품목

□ 취득

취득 유형	캄보디아에서 시험 및 인증 취득을 진행해야 하나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캄보디아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	소요비용	1,500,000 KHR

57) PRAKAS On The Determination of type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to be complied with Cambodian industrial standards as mandatory standards, 2006

2. 세부정보

□ 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보호의 목적으로 2004년 10월부터 제품인증제도가 시행됨

- 캄보디아표준기구(ISC, 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로부터 제품 인증을 취득하면 제품에 인증마크 부착이 가능함
- ISC는 국가 표준화 및 무역 원활화를 목표로 2008년 설립된 산업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 산하 기관임
 - 캄보디아 표준개발 및 적합성평가, 각종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표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캄보디아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증제도가 미비하며, 식품의 경우 CODEX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법적체계가 미흡하여 자체적인 인증제도가 미비하고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인증을 인정함
- 캄보디아 표준법(Law on Standards of Cambodia(2007) Article 24) 상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국제식품규격인 CODEX를 따름
 - 코덱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운영하는 국제 식품규격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제식품규격임
- 국내 식품규정에 부합하게 생산된 제품은 캄보디아 제품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을 것임

□ 제품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CS 001:2000(Labelling of Food Products)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캄보디아 제품 라벨링에 표기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라벨링 표기사항>

-
- 브랜드명
 - 품목명
 - 제조·포장·유통업체 혹은 수입업체의 업체명 및 주소
 - 성분
 - 총량/부피
 - 원산지
 - 크메르어 라벨(외국어 표기 가능하나 크메르어보다 작게 표기)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섭취방법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	수출업체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작성
2	심사비용 납부	수출업체		-
3	예비심사	ISC		-
4	정규심사 및 샘플링	ISC		-
5	PC위원회에 의한 추천	ISC		-
6	협약 체결 및 인증비용납부	수출업체		-
7	인증서 발급	ISC		-

* 출처: ISC, Flow Chart of Products Granting License

- 캄보디아 제품인증 절차는 총 7단계에 걸쳐 진행됨
 - 수출업체는 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ISC에 제출하고 심사비용을 납부하면 심사과정이 시작됨
 - 샘플검사가 필요한 경우 ISC가 인증한 시험기관 ILCC(Industrial Center of Cambodia)에서 진행됨
 - 최종 승인 완료 후 협약을 체결하고 잔여 비용을 납부하여 인증서 발급을 완료함

□ 소요비용

- 인증 취득 시 심사비로 150만KHR(크메르 리엘) 또는 약 375달러(한화 약 45만 원)가 소요됨

□ 필요 서류

- 제품인증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필요 서류 목록

- 유효한 생산면허 사본
- 공장 레이아웃 및 위치
- 공정도
- 생산설비 목록
- 생산원료 목록
- 인증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라벨
- 상표등록증 사본
- 바코드 등록증 사본

[별첨] ISC 제품 인증 신청서 양식

□ 신청서

	PRODUCT CERTIFICATION		
	Appendix-OM-2 Format of Application Form		
	Issue No : OM-02	Issue Date : 22-09-2016	Ref. No.: OM-AF-01
	Rev No : 01	Rev. Date : 22-09-2016	Page 1 of 5

APPLICATION FORM

PRODUCT CERTIFICATE AND LICENSE FOR THE USE OF STANDARD MARK

NAME:.....AGE:.....NATIONALITY:.....STATUS:.....

COMPANY/FACORY/ENTERPRISE/HANDICRAFT:.....

ADDRESS:.....

PHONE:.....EMAIL:.....

DEAR

HIS EXCELLENCY 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

ACTION: To request product certification and to grant license for the use of standard mark ☐ or to renew license for

the use of standard mark ☐.

for intended trade mark.....

produced by company/factory/enterprise/handicraft.....

address.....

phone:.....email:.....

NAME AND CAPACITY OF THE REQUESTED PRODUCT (1)	CONFORMED STANDARDS (2)	RELATED PRINCIPLE AND CONDITION (3)
.....		1. Cambodian standard law 2. Prakas on general condition for granting license to use standard mark 3. Licensing agreement for use of the product certificate and Cambodian standard mark 4. Specific condition

Approved by
Director

Issued by
Management Representative

	PRODUCT CERTIFICATION		
	Appendix-OM-2 Format of Application Form		
	Issue No : OM-02	Issue Date : 22-09-2016	Ref. No.: OM-AF-01
	Rev No : 01	Rev. Date : 22-09-2016	Page 2 of 5

PLEASE ATTACH DOCUMENTS:

1. Copy of PRAKAS/Production license of company/ factory/ enterprise/ handicraft in valid (1)
2. Factory layout, Location of establishments and (1)
3. Process flow chart or diagram (1)
4. List of machineries and production equipment (1)
5. List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1)
6. Product label intended to use standard mark (1)
7. Copy of brand/trade mark Registration (1)
8. Copy of barcode registration (GS1 Cambodia) (1)
9. Original Product Certificate and License for use of Standard Mark (in case of recertification) (1)

Note: Product Sampling will be performed by nominated staff of DoC-ISC and product sample shall be analyzed by laboratory which recognized by DoC-ISC. Recognized laboratory:

- Industrial Laboratory Center of Cambodia (ILCC)

.....Day.....Month.....Year.....
 Director of Company/ factory/ enterprise/ handicraft.
 Signature/Name

Approved by
 Director

Issued by
 Management Representative

	PRODUCT CERTIFICATION		
	Appendix-OM-2 Format of Application Form		
	Issue No : OM-02	Issue Date : 22-09-2016	Ref. No.: OM-AF-01
	Rev No : 01	Rev. Date : 22-09-2016	Page 3 of 5

LIST OF RAW MATERIALS

FOR PRODUCTION.....

No	Raw material	Usage	Quantity as percent of end products	Others
1				
2				
3				
4				
5				
6				
7				
8				
9				

Note: Please clarify the source of raw material (Ex. Raw material is municipal water or river water. .)

.....Day.....Month.....Year.....
 Director of Company/ factory/ enterprise/ handicraft.
 Signature/Name

Approved by
 Director

Issued by
 Management Representative

	PRODUCT CERTIFICATION		
	Appendix-OM-2 Format of Application Form		
	Issue No : OM-02	Issue Date : 22-09-2016	Ref. No.: OM-AF-01
	Rev No : 01	Rev. Date : 22-09-2016	Page 5 of 5

List of machineries and production equipment

FOR PRODUCTION.....

No	MACHINERIES AND PRODUCTION EQUIPMENT	DATE OF INSTALLATION	DATE OF MANTENANCE	Others
1				
2				
3				
4				
5				
6				
7				
8				
9				

.....Day.....Month.....Year.....
 Director of Company/ factory/ enterprise/ handicraft.
 Signature

Approved by
 Director

Issued by
 Management Representative

3. 북미권 인증



미국



미국 FDA 등록187



공정무역 인증195



IFANCA 할랄 인증200



코셔(Kosher) 인증204



글루텐프리 인증214



NON-GMO 인증219



USDA Organic 인증224

미국 FDA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FDA 등록	국가명	미국
마크		등록기관	미국 식품의약청(FDA)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등록
		도입시기	2003년
		유효기간	시설등록: 2년마다(짝수 해) 갱신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근거규정 - 미국 연방규정집(21 CFR,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 -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 415조 - 미국 식품현대화법(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미국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 대응법률(Bioterrorism Act) 305조 - 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등록 내용	○ 미국으로 식품 수출 전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식품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며,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됨 ○ 식품시설의 유형과 기본정보, 취급하는 식품의 카테고리 등을 미국 식품의약청 시스템에 등록하여 번호를 발급받는 방식임
적용대상	○ 과일 및 채소, 생선(메기목에 해당하는 생선 제외) 및 해산물, 달걀 및 유제품, 음료류, 베이커리 제품 및 스낵류, 통조림 및 냉동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 시설등록의 경우 식품접촉물질, 살충제, 농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이 해당함 ○ 식품라벨링 규정은 포장된 식품에 한하여 적용됨 - 빵, 시리얼, 통조림 및 냉동식품, 스낵, 디저트, 음료 등

□ 현황

취득유형	시설등록은 국내에서도 가능하나, 미국 식품의약청과의 실시간 연락을 위한 미국 내 대리인(에이전트) 지정이 필요함		
취득현황	미국 내 소비되는 모든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2016년 기준 약 30만 여개의 식품시설이 식품의약청 시스템에 등록됨		
타국가 통용여부	미국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약 2개월 이상	소요비용	자체 시설등록 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약 200만 원 이상(성분검사 별도)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전 식품 및 시설 등록, 식품성분검사, 라벨링 등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요구하는 주요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을 통해 미국 FDA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 대응법률에 의해 미국 내 소비되는 식품 및 식품을 제조, 처리, 포장, 보관하는 식품시설은 미국 FDA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해당 제도는 잠재적인 바이오테러리즘 사건 또는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하고자 도입됨
 - 또한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식품시설 등록 요건이 개정됨
- 식품 라벨링의 경우 미국 공정포장표시법에 의거하여 포장된 식품에 적용됨

□ 미국 FDA 등록은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과 기업 정보, 공장 정보 등을 시험 및 검사를 거치기 전 제출하는 절차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함

- 미국 FDA에 제출해야 할 정보로는 식품 및 식품시설의 유형, 업체명 및 주소, 담당자 정보, 미국 대리인 정보 등이 있음⁵⁸⁾
 - 식품 유형은 주류, 유아용 식품, 제과류 등 해당하는 품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식품시설은 제조·가공·포장·보관 등의 유형 중 해당사항을 기재함
 - 미국 FDA에 등록하는 업체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소재 업체도 등록할 수 있으며, 해외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FDA와의 연락을 위해 미국 내 상주하는 대리인(에이전트)을 지정해야 함
 -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FDA는 대리인에게 대리인 지정 동의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검증하며 미국 내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FDA는 등록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다른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약 30일 간 대리인이 검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FDA 등록시스템에서 등록 내용이 모두 삭제됨에 주의해야 함

□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FDA에 최초로 1회 등록한 이후 2년마다 등록 갱신이 필요함

- 등록 갱신은 매 짝수 연도 10~12월 중에 접수하며 홀수 연도에 최초 등록한 경우 다음 짝수 연도에 반드시 갱신하여야 함
 - 지정된 기간 동안 갱신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시설로 간주함
- 미국 FDA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계정은 추후 등록 갱신 시에도 필요하므로 대행기관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였더라도 기존 계정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58) 자세한 사항은 하기 ‘3. 취득절차’ 참조

□ 산성화 및 저산성식품은 제품의 등록이 필수적이며 해당 품목의 제조시설은 기본 시설등록 이외에 별도의 산성화 및 저산성식품 제조시설등록 및 공정등록이 필요함

- 산성화식품(AF, Acidified Food)은 pH 농도 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으로 규정되며, 저산성통조림식품(LACF, Low-Acid Canned Food)은 pH 농도 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임
 - 파우치, 통조림, 음료류, 병 등 열가공을 통해 장기보관용 살균제품이 해당
- 산성화식품 및 저산성식품은 유통 전 제조시설등록 및 공정등록을 필수로 수행하여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번호 및 SID(Submission Identifier)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공장등록(FCE)의 경우 제조시설에 대해 최초 1회 등록이 필요하나, 공정등록(SID)는 제품별 제조공정에 대해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동일 제품이라도 용량이 다를 경우 용량별로 각각 등록해야 함
- 산성화 및 저산성식품 등록 시 pH 농도 및 수분활성도 정보, 용기 크기, 성분, 살균처리에 관한 정보, 처리시설에 관한 영문 매뉴얼 등을 미국 FDA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함

□ 2016년 2월 기준 약 30만 개의 전 세계 식품시설이 등록된 상태로⁵⁹⁾, 시설의 유형은 창고 및 보관시설(32.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뒤이어 제조 및 가공시설(29%), 포장시설(16.2%), 라벨링시설(11.3%) 등이 등록됨
- 미국 외 국가의 식품시설은 약 21만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한국 시설은 약 4,000개 이상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됨⁶⁰⁾
 - 일본은 약 14,000개로 외국시설 중 가장 많은 시설이 등록되었고, 뒤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총 24개 국가별 900개 이상의 식품시설이 등록됨

□ 미국 식품의약청 시설등록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하기와 같음

-
- 개인 가정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경우
 - 식품을 일반적인 형태로 운송하는 경우
 - 작물을 재배, 수확하며 수산물 등 동물을 키우는 1차 생산농장의 경우(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포장, 보관하거나 가공된 식품을 포장, 보관하는 특수 상황을 포함)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을 직접 준비해서 판매하는 경우(레스토랑)
 - 가공 이외의 조업, 운송, 선상 보관활동을 수행하는 어선의 경우
 - 미국 농무부(USDA)에서 독점 관리하는 육류 및 가금류 제품, 달걀 등의 경우
-

59) 등록된 시설이 제조 및 보관 등 여러 유형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집계됨

60) 미국 FDA 시설등록 현황 (www.fda.gov/food/registration-food-facilities-and-other-submissions/food-facility-registration-statistics)

□ 일반 식품의 경우 FDA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별도의 등록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샘플조사 등을 거쳐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유통이 금지됨

- FDA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약 80% 이상을 규제하고 있으나 육류 및 육가공품, 가금류, 달걀 등의 경우 미국 농무부에서 별도로 감독하는 품목임에 주의해야 함

□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식품첨가물 성분 확인, 알레르기 항원 표기 등에 주의하여야 함

- 2018년 기준 미국 연방규정(Title 21 Part 182)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사용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 FDA는 식품첨가물을 ‘식품에 첨가 및 접촉하여 직·간접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래의 사용 목적 및 조건 하에서 전문가 및 과학적 단계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성분은 GRAS에 해당함
- 미국 FDA에서 제공하는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 및 규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분규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일례로 미국 FDA는 2018년 6월 이후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제가공유지(부분경화유, PHOs)를 식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판 전 FDA에 안전성을 입증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식품첨가물 및 GRAS에 관한 정보 및 성분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EAFUS) 또는 미국 연방규정집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EAFUS)에 접속하여 성분별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⁶¹⁾
 - 미국 연방규정집 전자시스템(www.ecfr.gov)에서는 사전승인된 특정 성분, 일반 GRAS 성분, 식품포장용 성분 등 조항에 따라 구분하여 GRAS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⁶²⁾
- 식품에 첨가되는 색소의 경우 FDA의 승인을 받은 색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미국 연방규정집 전자시스템에서는 승인된 색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⁶³⁾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함
 - 미국 식품 알레르기 항원 표시 및 소비자보호법⁶⁴⁾은 주요 식품 알레르기 항원을 ‘땅콩, 콩(대두),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8가지로 규정함
 - 식품 라벨링에 주요 알레르기 항원을 표기할 경우 ‘성분명(항원명)’ 또는 ‘(항원명) 함유’의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함
 - 예를 들어 ‘레시틴(대두)’ 또는 ‘대두 함유’로 표기함

61) 식품첨가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accessdata.fda.gov/scripts/fdcc/?set=FoodSubstances)

62) 해당 내용은 미국 연방규정집 Title 21(식품 및 의약품) 1장 하위 181, 182, 184, 18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방 규정집 전자시스템에 접속하여 규정 원문 및 성분명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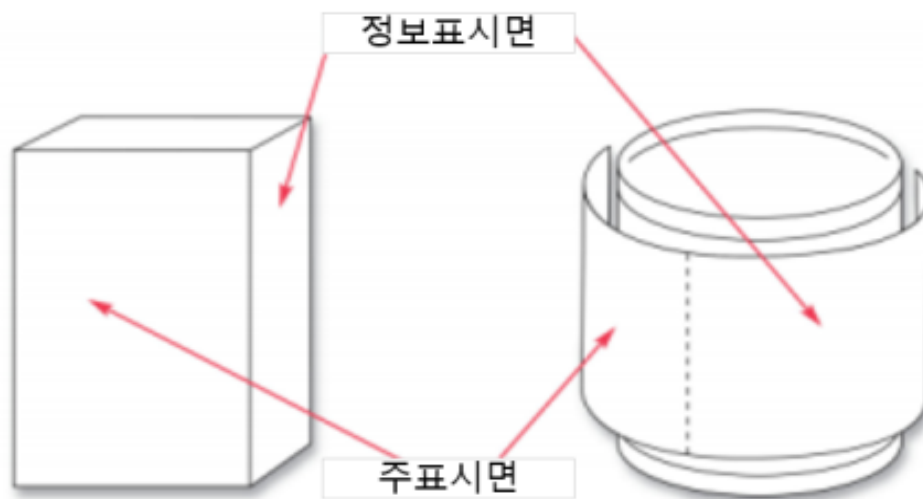
63) 미국 연방규정집 Title 21(식품 및 의약품) 1장 74항

64) Food Allergen Label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FALCPA)

□ 포장식품 수출 시 FDA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정해진 규격에 따라야 함

- 미국 FDA는 식품 라벨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빵, 시리얼, 통조림 및 냉동식품, 스낵, 디저트, 음료 등 사전 포장된 식품으로 규정함
 - 과일 및 채소 등 신선식품, 수산물 등에 대한 영양성분 라벨링은 자발적으로 수행함
- FDA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라 제품명, 중량, 영양성분 정보, 알레르기 항원 표기, 제조사 및 유통사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식품 포장의 주 표시면에는 △식품명, △(순)중량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성분목록, △영양성분표, △알레르기 항원 △제조사 및 유통사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함
-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성분의 함량과 일일섭취기준량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작성해야 함
 - 영양성분표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항목은 열량(Calories), 지방(Total 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지방(Trans fat), 콜레스테롤(Cholesterol), 나트륨(Sodium), 탄수화물(Total Carbohydrate), 식이섬유(Dietary fiber), 당(Total sugars), 첨가당(Added sugars), 단백질(Protein), 비타민 D, 칼슘, 철분, 칼륨 등이 있음

<식품 라벨링 표시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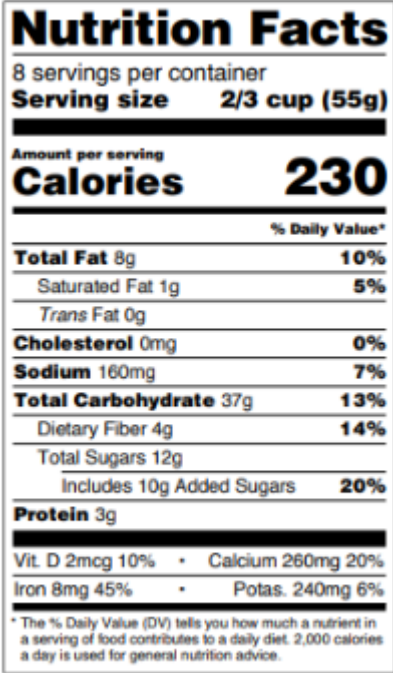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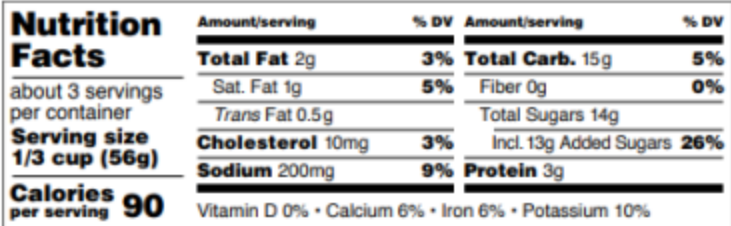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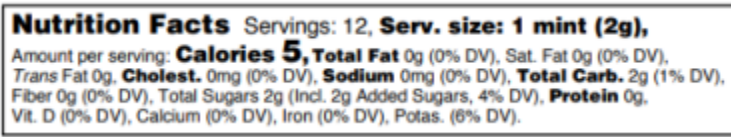
* 출처 : 미국 FDA 식품 라벨링 안내서

- 2016년 포장식품의 영양성분표시 규정이 개정되며 연간 매출액이 천만 달러 이상⁶⁵⁾인 식품 제조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함
 - 연간 매출이 천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며 단당류 식품 제조업체는 2021년 7월 1일, 특정 건조 크랜베리 제품의 제조업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65) 수출액 등을 포함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기존 영양정보표시와 달라진 점은 △글자 크기 확대(1회제공량, 총 제공 횟수, 열량 등), △일일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 및 실제 성분량(비타민D, 칼슘, 철분, 칼륨) 기재 △당분 함유량 정보 추가 기재 △제공량 기준 변경 등이 있음
- 미국 FDA는 식품 라벨링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홈페이지(www.fda.gov)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음

<신규 영양성분표 예시>

기본 수직형	중소형 포장용
	 

* 출처 : 미국 식품의약청 홈페이지(www.fda.gov)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미국 식품의약청(FDA)
홈페이지	www.fda.gov
연락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3. 취득절차(시설등록)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시스템 로그인 및 시설등록 페이지 접속	수출업체	-	고유시설식별번호(UFI) 제출 및 FDA산업시스템 계정 등록 (www.access.fda.gov)
2	식품시설정보 기재	수출업체	-	하기 기재사항 참조
3	미국 대리인 검증	미국 FDA	최대 30일	미국 대리인의 확인 필요
4	등록 정보 검증	수출업체	-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가능함
5	등록 확인 및 등록번호 발급	미국 FDA	-	FDA에서 발급한 시설등록번호를 기록해두어야 함

* 주 : 해당 절차는 2017년 10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청이 명시한 시설등록 지침에 따름

- 미국 FDA온라인 시스템(www.fda.gov/furls)을 통해 국내 기업 자체적으로 식품 및 시설을 등록할 수 있으며, 기재해야할 사항은 하기와 같음

구분	항목명	세부내용	필수여부
1	등록 유형	시설 위치(미국 내 소재/해외 소재), 시설 소유자 변경사항 등	필수
2	시설명 및 상세주소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필수
3	추가 주소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선택
4	업체명 및 주소	업체명(시설 소유업체), 주소, 전	선택
5	비상연락정보	담당자명(또는 미국 대리인명), 전화번호	필수
6	대체 상호명	항목2에서 등록한 시설명 이외에 대체 상호명을 사용하는 경우	필수
7	미국 대리인 정보	미국 대리인 유형(개인, 기업, 협회 등), 대리인 정보	필수
8	시설 운영시기	시설을 운영하는 시기(개시월-종료월)	선택
9	제품 유형 (9a 식용 제품)	식품 유형 선택(주류, 유아용 식품, 제과류, 음료베이스류, 사탕류, 시리얼류 등), 시설 활동유형 선택(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필수
10	담당자 정보	소유자 및 운영자(또는 대리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필수
11	FDA검사 승인란	FDA가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을 승인함	필수
12	본인 확인란	등록 제출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함	필수

□ 소요비용

- 미국 식품의약청 시설등록은 국내 기업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체 등록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내 등록대행 및 컨설팅기관 이용 시 품목 및 서비스 범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발생함
- 미국 대리인 지정 수수료에 따라 등록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시설등록비	없음	자체 온라인 등록 시 별도 비용 없음 (미국 대리인 별도 지정 필요)
	산성화 및 저산성식품 공정등록(SID)	건당 약 120만 원	품목별 업체별 상이
	성분 검사비	품목별 상이	-
대행비	등록대행 수수료	업체당 약 25~80만 원	미국 대리인 지정 여부에 따라 상이
컨설팅비		업체당 90~250만 원	컨설팅기관 및 컨설팅 범위에 따라 상이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등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미국 FDA 홈페이지, 국내 등록대행 및 컨설팅기관 9개社 유선 및 서면조사

공정무역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공정무역 인증	국가명	미국
마크		인증기관	국제공정무역기구 (Fairtrade International)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도입시기	1980년대 후반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기존 무역거래에서 배제된 저개발국가의 농민 및 생산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거래 관계를 조성하고자 도입됨 ◦ 근거규정 - 국제공정무역기구 공정무역 표준(Fairtrade Standards)
인증 내용	◦ 공정무역 기준을 준수한 식품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공정무역 식품은 원재료 사용에서부터 공정무역 기준이 적용됨 ◦ 인증 취득과 별개로 인증마크 사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거쳐야 함
적용대상	바나나, 코코아, 커피, 목화, 꽃, 과일, 꿀, 금, 주스, 쌀, 허브, 설탕, 차, 와인 등

□ 현황

취득유형	국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73개국 1,411개 생산업체에서 공정무역인증을 취득함 ◦ 국내 약 450개의 기업이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마크를 취득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적인 인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함		
소요기간	약 2주	소요비용	신청비 550유로 연회비 2,870유로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공정무역이란 기존의 무역질서에서 소외된 생산자 및 노동자를 보호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무역제품은 이러한 규칙에 따라 거래되는 제품을 의미함
 - 기존 무역질서에서는 저개발국가의 농민, 생산자, 노동자들이 상품의 가격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이익이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시민운동으로 공정무역의 개념이 등장함⁶⁶⁾
 - 따라서 공정무역제품이란 생산 및 제조, 유통, 수입 과정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기준을 준수하고 독립감사기구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적인 투명성이 확보된 공정무역인증 제품을 의미함
 - 공정무역제품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어야 하며, 국제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채 공정무역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대안무역(alternative trade)제품으로 정의함⁶⁷⁾
- 공정무역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공정무역기구(FLO)는 각 국가의 공정무역기관들을 통솔하며 산하에 독립적인 인증담당기관(FLOCERT)를 두어 공정무역 규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함
 - 한국에는 2011년 개소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Fairtrade Korea)가 있으며, 국내 소비자에게 공정무역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며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 모니터링을 담당함
- 공정무역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사용에서부터 공정무역기준을 준수해야 함
 - 커피, 바나나 등 단일재료 식품의 경우 제품 재료구성이 공정무역기준에 100% 부합해야 함
 - 쿠키,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복합제품의 경우 생산 및 제조에 투입된 재료 중 공정무역 범주에 해당하는 재료는 공정무역기준에 부합해야 함
 - 각 공정무역 재료 함유율은 제품 후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전체 20% 이상의 원료가 인증을 받아야 함

66) 한국공정무역협의회(<http://fairtrade.or.kr>)

67)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http://fairtradekorea.org>)

□ 제품 제조에서 포장까지 전 단계를 관여하는 기업은 FLOCERT 인증을 취득하여 ID를 발급받아야 함

- FLOCERT ID란 공정무역 인증원료를 국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며 해당 ID가 있어야만 공정무역 원료를 통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음
 -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금액 및 프리미엄은 분기별로 FLOCERT에 보고하며, FLOCERT는 ID를 보유한 생산자 및 기업을 모니터링하여 공정무역 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함
- 인증 신청 시 550유로(한화 약 71만 원)가 발생하며, 신청 승인 후 연회비로 2,870유로(한화 약 373만 원)를 납부해야 함
 - 소분포장, 로스팅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가 있을 경우 하청업체 비용(업체당 330유로, 한화 약 43만 원)이 추가로 발생함
 - 인증 신청기업은 ID당 하청업체를 3개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는 독립된 ID를 보유하지 않으나 인증기관의 감사 대상에 해당됨
 - 또한 신청 제품군이 1개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제품군부터 제품당 330유로(한화 약 43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 자세한 인증절차는 ‘3. 취득절차’를 참조할 수 있음
- FLOCERT ID는 제조 및 생산, 유통, 수출입 등 거래를 위한 자격이며, 인증마크 부착은 별도 신청을 통해 사용을 승인받아야 함

□ 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를 통해 라이선스 인증 신청 후 라벨 디자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 신청에 앞서 FLOCERT 인증 신청을 통한 FLOCERT ID 발급이 우선되어야 함
 - FLOCERT ID 발급 신청과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 신청은 각각 독립된 절차임
- 라이선스 인증은 올바른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FLOCERT ID가 있고 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 오너기업은 라이선스 인증이 필요함
 - 공정무역 원료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FLOCERT ID를 확인하며 공정무역 원료 함량 기준 등을 평가하여 승인함
 - 인증마크 사용 시 라이선스비가 발생하며 매 분기마다 제품 납품액의 2%를 온라인으로 보고하고 납부해야 함
 - 제품별로 라이선스비에는 차이가 있음
 -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신규 제품을 출시할 경우 보고가 필요하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라이선스 인증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를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함
- 신청 시 서류 및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 디자인 시안을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에는 제품 정보(제품명, 사이즈, 브랜드명 등), 공정무역 원료 함유량, 제품의 전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생산자 및 기업의 FLOCERT ID 등이 있음
 - 제품 디자인 시안에는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 설명(선택사항), 공정무역 인증마크(전면), 공정무역 성명(후면)이 포함되어야 함

<제품 디자인 시안 예시>



* 출처 :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홈페이지(www.fairtradekorea.org)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홈페이지		http://fairtradekorea.org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82 (0)2 725 0381
	팩스번호	+82 (0)2 725 0383
	이메일	info@fairtradekorea.org
기타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FLOCERT ID)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	생산업체	-	온라인 신청 (www.flocert.net)
2	1차 검토(온라인 신청서)	공인인증기관	약 2주	신청비 납부
3	신청서 제출	생산업체		필요서류 하기 참조
4	검토	공인인증기관		-
5	연회비납부	생산업체		연회비 납부 후 송금영수증 제출
6	승인	공인인증기관		-

* 출처 :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www.fairtradekorea.org)

- FLOCERT 홈페이지(www.flocert.net)를 통해 1차 신청을 하며, 인증기관(FLOCERT)은 접수된 온라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서 패키지를 발송하며 신청비(550유로) 납부를 요청함
 -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영문), 신청비 송금영수증, 계약서 사인본을 스캔하여 함께 제출함
-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연회비(2,870유로) 인보이스를 발송하며, 신청 기업은 연회비 납부 후 송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연회비는 인증기관의 방문감사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송금 확인 후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및 ID를 발급하며, ID를 발급받은 신청기업은 공정무역 원료를 거래할 수 있음
- ID 발급 후 6개월~1년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첫 방문감사를 실시하며, 이후 3년마다 방문감사를 실시함
 - 감사 시 기준 미달 및 불이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이행 사항을 시정하고 증빙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소요비용

항목		비용
취득비	신청비	품목당 550유로
	연회비	품목당 2,870유로
라이선스 이용 수수료		없음
컨설팅비		1회당 약 360~600만 원

* 주: 컨설팅비는 품목별 업체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국내 컨설팅기관

IFANCA 할랄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IFANCA 할랄 인증	국가명	미국
마크		등록기관	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 (IFAN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도입시기	1982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할랄 식품 소비자에게 허용되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할랄 표준 준수 여부를 감독함
인증 내용	IFANCA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적용대상	◦ 모든 허용된 할랄 식품 - 신선농산물, 유제품, 생선, 밀, 쌀, 호밀 등 곡물류 -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된 육류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닭, 오리 등, 돼지제외)

□ 현황

취득유형	국내에서 시험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2017년 전 세계 약 2만 개 제품이 IFANCA 할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국내 30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함		
타국가 통용여부	북미 시장의 대표적인 할랄 인증으로, 65개국에서 통용됨		
소요기간	3~6개월	소요비용	약 3,500달러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합법적이거나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이슬람 율법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음⁶⁸⁾

- 할랄 식품이란 이슬람 율법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하람) 어떤 재료도 포함하지 않고, 율법에 어긋나는 시설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조·가공·운반·저장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함
 - 채소, 과일, 곡류 등 비육류성 식품은 일반적으로 할랄 식품에 포함되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기준이 다름
- 식품 원재료 및 조리·가공 과정에서 까다로운 할랄 규정을 준수한 경우 할랄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반대로 하람(HARAM)은 불법이거나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하람 식품을 제외한 식품은 할랄로 간주됨

- 돼지고기 및 부산물
-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 동물 및 도살 전 죽은 동물⁶⁹⁾
- 양서류 및 비늘이 없는 생선
- 중독성이 있는 식물
- 알코올성 음료
- 피 및 부산물
- 상기 재료로 오염된 식품

□ IFANCA(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인증은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할랄 인증으로, IFANCA는 국제적으로 주요 할랄 인증기관 중 하나임

- IFANCA는 말레이시아 정부 할랄 인증기관(JAKIM), 인도네시아 민간 할랄 인증기관(MUI LPPOM), 싱가포르 정부 할랄 인증기관(MUIS), 태국 중앙 이슬람 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 월드리그, 아랍 에미리트 연합(GSM) 등의 인정을 받는 공신력 있는 할랄 인증기관임⁷⁰⁾

68) 한국할랄인증원(<http://koreahalal.kr>)

69) 정맥을 끊는 방식으로 도살된 육류만 허용함

70) IFANCA 한국지사

□ IFANCA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기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이슬람 식품기준에 부합될 것
- 모든 서류요건을 충족할 것
- 할랄 인증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모든 식재료가 할랄일 것
- 식재료 준비, 생산가공, 포장, 보관, 저장, 운반 등의 모든 단계에서 하람 식품이 제외될 것
- 이슬람 방식의 청결과 위생 절차를 따를 것

□ IFANCA 한국 지사에서 IFANCA 할랄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IFANCA 한국지사는 2017년 3월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국내 약 30여 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IFANCA	IFANCA KOREA
홈페이지		www.ifanca.org	www.ifanca.co.kr
연 락 처	담당부서	-	-
	전화번호	+1-773-283-3708	+82-070-7530-2290
	팩스번호	+1-773-283-3973	+82-02-553-0021
	이메일	contact@ifanca.org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 제출	제조업체	3~6개월	홈페이지 신청 가능 ⁷¹⁾
2	서류심사 및 비용 산정	IFANCA		제출 서류는 하기 참조
3	현장실사	IFANCA		별도 서류 제출
4	평가서 작성	IFANCA		-
5	할랄인증서 발부	IFANCA		-

- 인증 신청 시 신청서와 제품 상세정보, 원재료 세부 목록, 위생관련 정보, 기타 인증 취득정보 등을 제출해야 함
- 현장실사는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에는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 △제품별 공정흐름도, △품질 관련 인증서 사본, △제조 관련 기록물, △공급원 목록 및 공급내역,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명칭 및 수량 정보 등이 있음
- 인증 취득 후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지속해서 준수해야 하며, 6개월마다 해당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함

□ 소요비용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심사비 및 등록비	품목당 3,500달러	품목별 업체별 상이(출처: IFANCA KOREA)
	실사비	-	(출처: IFANCA KOREA)
컨설팅비		약 800~1,500만 원	품목별 업체별 상이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IFANCA KOREA, 국내 등록대행 및 컨설팅기관 4개社 유선 및 서면조사

71) www.ifanca.org/Pages/HalalApplication.aspx

코셔(Kosher)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코셔(Kosher) 인증		국가명	미국
마크			인증기관	OU(Orthodox Union) Star-K 등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도입시기	1924년(OU)/1947년(Star-K)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유대인의 유대교 율법에 기반을 둔 올바른 식품 소비를 위해 도입함 ◦ 근거규정 - 유대교 경전 ‘토라’, 유대인 식품 금기법 ‘카슈루트(Kashrut)’
인증 내용	◦ 유대교의 율법에 기반을 둔 식품과 그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인증이며,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제품, 설비 등 전 제조공정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 코셔 인증기관 중 세계적 인지도를 지닌 OU의 인증
적용품목	◦ 육류, 유제품 파르브(Pareve, 중성제품) ◦ 제조공정, 생산설비

□ 취득

취득 유형	국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세계 104 개국 9,011개 공장에서 생산된 8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인증(OU)		
타국가 통용여부	세계 각국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타국가에서도 인정 가능		
소요기간	3~6개월	소요비용	품목당 약 400만~1,000만 원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코셔는 유대인의 식품 금기법인 ‘카슈루트(Kashrut)’에 근거하여 생산된 식품인증으로 OU, Star-K, OK Kosher 등 다수의 사설 인증기관이 존재함

- 카슈루트는 허용된 식품과 허용되지 않는 식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조법·조리법·섭취방법 등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의 경우 육류, 유제품, 파르브(중성식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코셔라이징(Kosherizing)은 주방시설 및 조리도구를 코셔화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온으로 처리하는 과정임
- OU(Orthodox Union)은 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닌 코셔 인증기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 세계 104개국 9,011개 공장에서 생산된 100만 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 인증은 OU(파르브), OU-D(유제품), OU-Meat(육류), OU-P(유월절, Passover)로 나뉨
 - Passover(유월절)에 대한 인증은 유대인에게 유월절 기간에도 허용된 식품에 대한 인증임
 - 유대인은 8일간의 유월절 기간에 평소보다 까다로운 식품 기준을 준수하며,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섭취함
 - 미국 시장의 코셔 인증 제품 중 약 70%가 OU 인증제품으로 조사됨⁷²⁾
 -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호주, 중국, 아프리카, 한국 등에 지부를 둠
 - 한국에는 2019년 1월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기타 미국 내 소재하는 인증기관으로 OK Kosher, KOF-K, cRc(Chicago Rabbinical Council) 등이 있음

□ 코셔에 부합하는 식품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반추동물, 맹금류를 제외한 조류,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어류, 과일 및 채소 등임

- 허용되는 육류와 도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고기는 소, 양, 염소와 같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반추동물이어야 함
 - 돼지, 토끼, 낙타 등은 섭취할 수 없는 육류로 분류되며, 자연사한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닭, 거위, 칠면조 등의 조류는 허용된 육류이나 독수리, 올빼미 등 맹금류는 제외됨
 - 도축 시(어류 제외)에는 코셔 전문도축인 쇼체타(Shochet)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72) Orthodox Union, Evolution of Kosher Certification

- 유제품은 코셔 동물에서 나온 경우 모두 코셔로 인정됨
 - 육류와 유제품은 함께 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 시설도 혼용할 수 없음
 -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육류용과 유제품용의 조리도구를 별개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생활관습이 반영됨
- 파르브(Pareve, 중성제품)는 어류, 과일, 채소류 등 육류와 유제품 이외의 식품군을 지칭하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어류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연어, 참치, 청어 등을 코셔로 인정함
 -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뱀장어, 고래, 오징어 등은 허용되지 않음
 - 조개, 새우, 게, 가재 등 갑각류도 코셔 식품에서 제외됨
 - 과일과 채소는 씨를 맺는 것은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지식품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어류, 갑각류, 곤충, 피, 맹금류 등이 해당됨

□ 코셔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원료, 제조공정, 제품, 포장 등 전 과정에서 코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코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료, 조리법, 제조공정 등을 모두 공개하여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함
 -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모두 코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제조공정 중에는 육류와 유제품의 동시 취급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동시에 취급하는 제조 시설은 코셔 인증 취득이 불가함
 - 비코셔 제품을 취급하는 라인이 있으면 인증 취득이 불가하며, 시설 전체가 코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시설 심사를 담당하는 랍비의 성향에 따라 심사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인증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랍비가 방문하여 시설의 코셔 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함

□ 코셔 인증 제품은 유대인을 위한 인증으로서 기능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코셔 제품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인증기관정보

- OU의 한국지부가 2019년 1월부터 설립되면서 뉴욕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함
 - 기타 대행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Kosher Asia (OU 한국지부)
홈페이지		www.kosherseasia.com/south-korea.html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070-8098-1805
	이메일	stevehong@kosherseasia.com

3. 취득절차

□ OU 인증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 제출	제조업체	3~6개월	-
2	담당 랍비 배정	인증기관		-
3	시설 심사	인증기관		코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준비
4	서류 및 시설심사 보고서 검토	인증기관		-
5	계약서 검토 및 서명	제조업체 및 인증기관		-
6	라벨링 송부 및 최종 승인	제조업체 및 인증기관		-

* 주: 소요기간 확인 필요

* 출처: OU Kosher 홈페이지(<https://oukosher.org>)

◦ OU 인증은 6단계의 절차를 통해 코셔 인증 취득이 가능함

- 업체의 정보와 제품 및 원료 정보 등을 기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담당 랍비가 배정됨
 - 업체정보, 공장정보, 원재료 목록, 제품허가요청서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구체적인 기재정보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회사정보	-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회사의 기본정보
공장정보	- 생산책임자, 원재료 책임자, 포장 디자이너, 마케팅 담당자 등의 구체적 정보 요구 - 하나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정보를 모두 요구
공장 원재료 목록	- 모든 원재료가 코셔에 부합 필요
제품허가요청서	- 제품분류에 대하여 지정(육류, 유제품, 파르브, Passover)을 요구 - 브랜드명을 고지해야하며, PB상품의 경우 유통업체의 업체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주: 신청서는 별첨 참고

- 담당 랍비 배정 후 약 1~2일 간의 시설 심사가 진행되며, 해당기간은 제품과 시설에 따라 상이하게 소요될 수 있음
 - 시설 심사 진행을 원할 시, 초기비용을 입금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출장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임
- 현장 실사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OU에서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여 코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업체에 계약서를 송부함
 - 계약서 내용은 표준조항, 인증비용, 특별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케줄 A, B를 포함함
 - Schedule A는 시설에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목록이며, Schedule B는 인증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목록으로 구성됨
- 계약서 서명 후 제품에 부착될 라벨을 송부하여 이에 대해 최종승인을 득하여 코서 인증 취득을 완료함
 - 라벨에는 코서에 금지된 식품의 이미지가 사용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Star-K 인증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 제출	제조업체	3~6개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제출 업체와 제품의 기본정보 입력
2	추가서류 제출	제조업체		시설, 원료, 공급자 등에 대한 정보 제출
3	서류 검토 및 비용 산정	인증기관		-
4	시설 심사	인증기관		-
5	계약	제조업체 및 인증기관		-
6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 출처 : STAR-K 홈페이지(www.star-k.org)

- Star-K 인증절차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6단계의 절차를 거침
 - 간략한 업체정보를 기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검토 진행 확인을 위한 연락을 취함
 -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업체명, 주소, 연락정보, 코서 인증 여부 등임
 - 신청서는 다음과 같음
 - 서류 검토 진행을 원할 시, 시설·원료·공급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추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후 인증기관은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비용을 산정하여 고지함

- 시설 심사 단계에서는 코셔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랍비와 식품분야 전문가가 시설에 방문하며 부합할 경우 계약이 진행되고 인증서가 발급됨

□ 소요비용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 취득비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사비 및 실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제품 유형, 시설의 규모와 복잡성, 실사 조건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사비는 담당 실사위원이 연 1회 방문할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됨

구분	비용	비고
취득비	400만~1,000만 원	일반적으로 검사비 및 실사비 포함하여 산정 품목별 업체별 상이
대행비	1,000만 원 이상	대행수수료 등 제반비용 포함
컨설팅비	약 3,000~5,000달러	대행비 제외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OU Kosher, STAR-K,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4개社 유선 및 서면조사

[별첨] OU 코셔 인증 신청서 양식⁷³⁾

APPLICATION FOR KOSHER CERTIFICATION

ORTHODOX UNION - KASHRUTH DIVISION

11 Broadway ♦ New York, NY 10004
 Applications Desk: 212-613-8115 ♦ Fax: 212-613-0775
 E-mail: newapp@ou.org ♦ <http://www.oukosher.org/>

Date:

COMPANY HEADQUARTERS PROFILE PAGE

COMPANY NAME:

Address:

City:

State:

Zip:

Country:

Phone:

Toll Free ()

Fax:

Company Contact:

Title:

Phone:

E-mail:

Alternate Contact:

Title:

Phone:

E-mail:

Billing Contact:

Title:

Phone:

E-mail:

Marketing Contact:

Title:

Phone:

E-mail:

Company President/CEO:

E-mail:

Please explain why you are seeking certification (i.e. what are your marketing goals?):

Under which category of foods would you list the product(s) (e.g. snacks, fish, acidulants etc.)?

Where did you hear about the Orthodox Union (e.g. show, supplier, customer, website)?

❖ Have any of your products ever been certified Kosher?

☐ Yes☐ No

If yes, by whom:

❖ Are any of them currently certified Kosher?

☐ Yes☐ No

If yes, by whom:

How many plants are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Attach a set of forms for each plant).

Would you be interested in any of the following certifications?

____ Food Safety Certification ____ Gluten Free Certification ____ Organic Certification

FOREIGN APPLICANTS: PLEASE PROVIDE INFORMATION FOR A US OFFICE
AND/ OR CONTACT WHERE AVAILABLE. Name: Phone:

PLEASE NOTE: The OU symbol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the Orthodox Union. Its unauthorized use is a violation of trademark laws. Our rights in this regard are enforced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The OU symbol may not be used until a written contract has been executed with the Orthodox Union.

FOR INTERNAL USE ONLY

ID#

Received: / /

NCRC

PRC

1 of 6

73) OU Kosher 홈페이지(<https://oukosher.org>)



APPLICATION FOR KOSHER CERTIFICATION

ORTHODOX UNION - KASHRUTH DIVISION

11 Broadway ♦ New York, NY 10004

Applications Desk: 212-613-8115 ♦ Fax: 212-613-0775

E-mail: newapp@ou.org ♦ <http://www.oukasher.org/>

Note: Please complete a separate *Manufacturing Plant Profile* page for each facility.

Date:

PLANT NAME:

Address:

City:

State:

Zip:

Country:

Phone:

Toll Free():

Fax:

Plant Contact:

Title:

Phone:

E-mail:

Alternate Contact:

Title:

Phone:

E-mail:

R&D Contact:

E-mail:

If the facility is not located in a major city, please indicate the closest major city and the distance to the facility:

Describe all the manufacturing process(es) in the facility:

THIS FORM IS INTENDED FOR APPLICATIONS OF NON-CERTIFIED COMPANIES AND/ OR PLANTS. CERTIFIED COMPANIES SEEKING APPROVAL FOR NEW PRODUCTS SHOULD COMPLETE A NEW PRODUCT REQUEST FORM.

FOR INTERNAL USE ONLY

Mi

F

E

Approved by RKC

Inspection Frequency

Special Comments

Page 2 of 6

MANUFACTURING PLANT PROFILE PAGE



APPLICATION FOR KOSHER CERTIFICATION

ORTHODOX UNION - KASHRUTH DIVISION

11 Broadway ♦ New York, NY 10004

Applications Desk: 212-613-8115 ♦ Fax: 212-613-0775

E-mail: newapp@ou.org ♦ <http://www.oukasher.org/>

PLANT:

LOCATION:

A) Please indicate the geographic areas where you plan to market the product(s):

B) Are any of these products also produced in a plant not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 Yes ☐ No

If yes, where and by whom:

Are any other products produced in this plant? ☐ Yes ☐ No

C)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regarding products for which you are seeking certification

- I. Please list the name of each product for which you are seeking certification. Check the appropriate column(s) for Retail or Industrial/Institutional distribution. Please specify if you desire Passover certification
- II. Please list each brand name for the product that you are seeking certification. Check the appropriate column(s) to indicate if the brand name is an In-House and / or Private Label
- III. For Private Label brand name: Enter the name of the Private Label Company that owns the brand name. On the last page of this application, provide the company name, address and contact name

PLEASE SUBMIT A COPY OF A LABEL FOR EACH PRODUCT & BRAND NAME

I. Product Name	Retail	Industrial	Passover	II. Brand Name	In-House	Private Label	III. Private Label Company	For Internal Use Only DPMF

For additional products, continue to the next page. If not skip to page 5 (Raw Material Information Page)



APPLICATION FOR KOSHER CERTIFICATION

ORTHODOX UNION - KASHRUTH DIVISION

11 Broadway ♦ New York, NY 10004

Applications Desk: 212-613-8115 ♦ Fax: 212-613-0775

E-mail: newapp@ou.org ♦ <http://www.oukasher.org/>

RAW MATERIAL INFORMATION PAGE

Plant name

1. List all raw materials in the facility (including release agents, processing aids, antifoams etc.) even if not intended for kosher use.
2. Identify with an asterisk (*) any ingredients intended for use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you do not wish to certify.
3. Submit a Letter of Kosher certification and clearly identify the exact ingredient being used. If you submit via fax, do not highlight. Where no Letter of Certification is available, supply a process flow diagram. Both the ingredient name and source name must match the Letter of Certification.

Definitions:

RMC#: List the raw material code, if any, that plant uses internally.

INGREDIENT NAME: Give the name exactly as it appears on the label. Include all flavor and product code numbers

SOURCE: Give the manufacturing source exactly as it appears on label. Do not list distributor or broker unless it appears on label. Include all Plant #'s/USDA#'s or other regulatory, plant mfg. Codes, where applicable

BRAND NAME: List Brand Name exactly as it appears on the label.

BULK: Indicate if ingredient is received in tankers, rail cars, trailers or containers that are not normally refilled.

CERTIFYING AGENCY: Indicate the Kosher certifying agency that certifies this ingredient.

RMC#	INGREDIENT NAME	SOURCE	BRAND NAME	BULK	CERTIFYING AGENCY
<i>Use the following examples as guidelines</i>					
654	Non Fat Dry Milk	Crystal Cream #06-01			OU
655	All Purpose Shortening 101-50	Cahokia Flour	Cahokia Pride	Tankers	OU
656	Vanilla Pecan F69S764	McCormick Flavor			OU
657	Honey Liquid	Albertson's	Lucky		OU
RMC#	INGREDIENT NAME	SOURCE	BRAND NAME	BULK	CERTIFYING AGENCY

For additional ingredients, please continue to the next page.

Page 5 of 6

글루텐프리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글루텐프리 인증	국가명	미국
마크		인증기관	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GFCO)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기능성 인증
		도입시기	2005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식품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글루텐프리 식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식품 의약국에서는 글루텐프리 식품에 대해 정의하고, 올바른 라벨링 방법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글루텐프리 식품 기준을 마련하였음 ○ 근거규정 - 식품 알레르기 항원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 - 글루텐프리 라벨링에 대한 규정(FDA 21 CFR 101.91)
인증 내용	○ 글루텐 성분함량이 10ppm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에 대해서 인증을 취득하여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음 ○ 글루텐 성분 시험과 설비검사가 진행되며, 기관에서 승인하고 있는 타 인증기관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함
적용품목	○ 글루텐-함량 곡물(밀, 호밀, 보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성분의 모든 식품 원재료 혹은 가공제품 ○ 글루텐이 10ppm 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모든 식품 원재료 및 가공제품

□ 취득

취득 유형	○ 해외에서 제품 검사 및 인증 취득이 진행 - 인증기관에서 승인한 타인증기관을 통해서 검사와 인증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체 글루텐프리제품의 약 26%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약 22,000제품, 27개 국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통용되고 있음		
소요기간	약 6~18주	소요비용	품목당 약 180만원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글루텐프리 식품이란 일반적으로 제조 시 글루텐 성분함량을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식품을 의미함
 - 글루텐(Gluten)은 밀, 보리, 귀리 등에 함유된 불용성단백질(insoluble protein)의 일종으로 글루텐을 함유한 식품은 셀리악병⁷⁴⁾ 환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서유럽·북미·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셀리악(Celiac disease, 밀가루 알레르기) 환자 비중이 높아지며 글루텐프리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 글루텐프리 인증프로그램(GFCO)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소비자가 비슷한 식품 중에서도 글루텐프리 제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 글루텐프리 검색어가 2014년 9월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⁷⁵⁾
-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글루텐프리 식품 라벨링 최종 규칙을 발효하였으나 제조업체의 자발적 준수에 머물고 있어 글루텐프리 식품에 관한 민간인증이 주목받음
 - 미국은 2004년 식품 알레르기 항원 라벨링 및 소비자보호법(FALCPA)을 통해 ‘글루텐프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2013년부터 글루텐프리 식품 라벨링 규칙이 시행됨
 - 모든 원재료 및 가공식품을 글루텐프리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규정(FDA 21 CFR 101.91)을 준수해야 함
 - 북미 지역에서 글루텐프리 인증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GFCO, GFCP, Celiac Support Association 등이 있으며, 이 중 GFCO의 규모가 가장 크고 글루텐 프리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
- 글루텐프리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GFCO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글루텐을 제거하는 처리과정을 거친 모든 식품(완제품)은 글루텐 성분을 10ppm 이하로 함유해야 함
 - 10ppm 이하 함량은 전체 1,000g 중 글루텐 성분은 10mg 함유한 것을 의미함
 - 보리 기반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은 인증을 취득할 수 없음
 - 완제품 및 고위험 원자재 및 장비는 지속적인 테스트를 받아야 함

74) 글루텐 단백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잦은 설사와 소화불량 등으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며 결국 영양부족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75) GFCO 홈페이지(<https://gfco.org/get-certified/why-get-certified/>)

-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제조 공장은 최소한 연간심사를 받아야 하고 완제품을 인증기관(GFCO)으로 제출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받아야함
- 인증 취득을 위해서 제조업체는 알레르기 및 우수제조관리기준에 관한 모든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GFCO
홈페이지		https://gfco.org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1-253-218-2956
	팩스번호	+1-253-833-6675
	이메일	admin@gluten.org
기타		Gluten-Free 인증기관

<Gluten-Free 인증 취득제품>



* 출처: 온라인 쇼핑몰(www.instacart.com, <https://shop.advantagenutrition.com>), 김노리 홈페이지(www.kimnoriusa.com)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제조공장 등록	제조업체	-	-
2	인증기관 확인	제조업체	-	GFCO에서 인정한 인증기관 확인
3	인증 신청	제조업체	-	신청서와 제품리스트 제출
4	신청서 검토 후 견적	인증기관	-	-
5	견적승인 및 수수료 납부	제조업체	-	-
6	공장실사 실시	인증기관	2~3일	-
7	감사보고서 수령	제조업체	10일 이내	-
8	부적합 사항 시정	제조업체	60일 이내	-
9	인증 결정	인증기관	-	-

* 출처 : GFCO Certification Body Manual Rev. 2019

- GFCO 자체적으로 공장실사와 성분 테스트를 통한 인증을 발급하며, GFCO에서 승인한 타 인증기관에서도 동일한 감사와 인증 발급을 진행하나 인증 신청 전 홈페이지⁷⁶⁾에서 제조공장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수수료 납부 후 8~12주 이내 공장실사가 실시되며 공장실사는 최소 3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제품의 성분이나 공장 설비에 관한 서류를 검토함
 - 이후 제조업체(신청인)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 및 감사원의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사본을 수령하며 60일의 기간 동안 부적합 사항을 시정할 수 있음
- 제조업체는 적어도 2년 동안 글루텐프리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함

□ 소요비용

- 인증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설비등록 및 인증기관 수수료가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금을 납부해야 함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설비등록비	연간 100달러	온라인 등록비
	GFCO 운영수수료	연간 400달러	매년 증가함
	라이선스 계약	브랜드당 1,000달러	최대 5개 브랜드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시 2,500달러
	제품시험비	업체 규모 및 성분별 상이	하기 참조
대행비	대행기관 수수료	품목당 약 50만 원	품목별 업체별 상이
	컨설팅비	약 3,000~5,000달러	품목별 업체별 상이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GFCO 홈페이지,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2개社 유선 및 서면조사

76) www.gfco.org/plant-registration

-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감사비용은 회사 규모와 보유 설비 수 및 성분 위험에 따라 결정됨

〈글루텐프리 인증 시험비〉

(단위 : 달러)

항목	설비 수(개)	순매출	저위험	중간 위험	고위험
10인 이하의 작은 사업규모 시험비	1-5	-	1,100	1,600	2,600
	6-10	-	1,600	2,100	3,100
	11+	-	2,100	2,600	3,600
100인 이하의 중간 사업규모 시험비	1-5	-	1,600	2,600	3,600
	6-10	-	2,100	3,100	4,600
	11+	-	2,600	3,600	5,600
100인 초과 의 큰 사업규모 시험비	1-5	500M 이하	3,600	4,600	5,600
		0.5-1B		5,100	6,600
		1B 이상		6,100	7,600
	6-10	500M 이하	4,600	5,600	6,600
		0.5-1B		6,100	7,600
		1B 이상		7,100	8,600
	11+	500M 이하	5,600	6,600	8,100
		0.5-1B		7,100	9,600
		1B 이상		8,100	11,600
감사비용	700달러(한화 약 82만원) (회사규모나 위험수준과 상관없이 동일)				
	신속 감사는 시설 당 추가 250달러(한화 약 24만원)				
출장비용	미국 내	출장비 400달러(한화 약 47만원)			
	한국	- 일당 180달러(한화 약 21만원) - 출장비에는 호텔, 교통편, 식사 및 부대비 포함(항공료별도)			

* 주1: 순매출의 M은 백만달러(Million), B는 십억달러(Billion)

* 주2: 성분은 백만 분의 일(ppm)이상의 글루텐성분 함유에 따라 저/중/고 위험도로 구분함

* 출처: GFCO 홈페이지(<https://gfco.org/get-certified/standards/>)

□ 필요서류

구분	서류 목록
공장 감사 시 필요 서류	- 글루텐 프리 제품의 현재 제품 및 성분 목록 - 조직도 - 직업 세부설명 - 구매 문서 - 승인 된 공급 업체 목록 - 글루텐에 대한 공급 업체 명세서 - 교육 자료: 직원 교육 기록 - 검사 확인 문서 - 글루텐에 대한 위험 분석 - 포장 / 라벨 점검 문서 - 작년의 시정 조치 보고서

NON-GMO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NON-GMO 인증	국가명	미국
마크		인증기관	Non-GMO Project
		기술관리기관	Where Food Comes From Inc. SCS Global Services FoodChain ID NSF International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기능성 인증
		도입시기	2010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Non-GMO Project는 Non-GMO 식품 및 제품에 대한 북미 유일의 3자 인증 및 라벨링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GMO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해 유전자 변형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인증 내용	- 식품에 대해 GMO변형 물질이 일정 이상으로 함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받은 후, 인증마크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인증기관과 기술 관리기관 두 곳에 각각 취득 신청을 해야 하며, 발급 후 인증기관에서는 마케팅활동을 지원함
적용품목	유아식 및 유아용 조제식, 디저트류(사탕·초콜릿) 및 감미료, 오일류, 소스류, 주류, 유제품, 과일 및 채소, 곡물, 육류, 생선, 계란, 두부, 포장된 냉동식품, 파스타, 스프, 비타민 및 보충제, 허브·향신료 및 기타 성분 등

□ 취득

취득 유형	인증기관이 승인한 인증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내에서 시험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 세계적으로 1056개 소매 업체와 3,000개 이상의 브랜드, 50,000개 이상의 제품이 Non-GMO 마크를 취득하였음 ⁷⁷⁾		
타국가 통용여부	미국과 캐나다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북미 시장에서 통용가능		
소요기간	3~6개월	소요비용	제품당 약 200만 원~500만 원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77) Non-GMO Project(www.nongmoproject.org/product-verification/verification-faqs/)

2. 세부정보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회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Non-GMO 라벨링이 중요한 마케팅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식품정보위원회(IFIC)의 2019 Food and Health Report에 따르면 소비자의 40%가 GMO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 50%의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Non-GMO마크를 꼽음
- Non-GMO 인증관리기관인 Non-GMO Project는 3,000개가 넘는 브랜드의 50,000개 이상 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며 인증 검증 제품의 연간 매출이 2018년 260억 달러를 돌파함
 - 소비자를 비롯하여 식품 공급업체들 역시 매출 증대를 위해 인증마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계적인 유전자변형 농산물 생산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추진되고 있음
 - 미국 농무부는 2018년 12월,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포함된 일부 제품의 경우 2022년까지 해당 정보를 표시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NFDS(국가생명공학 식품공시표준) 최종 규정을 발표함
 - 캐나다는 판매되는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해 자발적인 라벨표시를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품은 유전자 변형 정도에 따른 3단계 위험수준으로 구분됨

- 유전자변형(GMO) 식품은 자연적인 교배 방법이 아닌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유전자 구성이 변형된 식물·동물·박테리아 등을 이용한 식품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포장식품에는 옥수수, 대두, 카놀라 및 사탕무에서 추출한 성분이 포함되며 미국 총 재배면적의 약 70%의 면적에서 GMO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짐⁷⁸⁾

〈위험수준에 따른 상품작물 분류〉

구분	상품작물 예시
고위험군	알팔파(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속씨식물), 카놀라, 옥수수, 면, 파파야, 간장, 사탕무, 노란 여름 호박/호박, 동물성 제품, 미생물 및 효소, 감자
저위험군	렌틸콩, 시금치, 토마토, 참깨, 아보카도
추적관찰 위험군 ⁷⁹⁾	아마, 겨자, 쌀, 밀, 사과, 버섯, 오렌지, 파인애플, 카멜리나(가짜 아마), 연어, 사탕수수, 토마토

*출처: Non-GMO 홈페이지(www.nongmoproject.org/gmo-facts/what-is-gmo)

78) 농림수산식품부, 수입 GMO 농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79) 곧 확산 될 것으로 보이거나 GMO 오염 사례를 통해 현재 약 100개의 제품을 추적하고 있음

□ Non-GMO 인증은 유전자변형 물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0.9~5% 수준까지 유전자변형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시험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법적 및 과학적으로 유전자변형 물질 함유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0.9~5% 함유량 수준을 허용하고 있음
- 완제품이나 가공된 투입물이 아닌 원재료 물질에 대해서도 시험을 수행하며 승인된 실험실에서만 수행해야 함

□ 인증기관 및 기술관리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Non-GMO Project
홈페이지		www.nongmoproject.org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1-360-255-7704
	팩스번호	-
	이메일	verification@nongmoproject.org
기타		-

		기술관리기관(TA)	기술관리기관(TA)
기관명		SCS Global Services	FoodChain ID
홈페이지		www.scsglobalservices.com/services	www.foodchainid.com
연락처	전화번호	+1-800-326-3228	+1-641-469-6181 / +1-888-229-2011
	팩스번호	+1-510-452-8001	-
	이메일	info@SCSglobalservices.com	-
	기타	승인받은 기술관리기관	승인받은 기술관리기관
기관명		NSF Korea (한국지사)	Where Food Comes From Inc
홈페이지		http://nsfkorea.org	www.wherefoodcomesfrom.com
연락처	전화번호	-	+1-866-395-5883
	팩스번호	+82-02-511-8305	-
	이메일	foodkorea@nsf.org	info@wherefoodcomesfrom.com
	기타	승인받은 기술관리기관	승인받은 기술관리기관

<Non-GMO 인증 취득제품>



* 출처: 미국 온라인 쇼핑몰(www.amazon.com), Non-GMO project 홈페이지(www.nongmoproject.org)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기술관리기관(TA) 선택	제조업체	3~6개월	승인된 기관 확인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제조업체		제출 서류 목록은 하기 참조
3	서류 검토	기술관리기관		-
4	사전평가 및 견적	기술관리기관		-
5	현장심사	기술관리기관		-
6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제조업체		인증기관과 계약 체결
7	인증마크 부여	인증기관		-

* 출처: Non-GMO project(www.nongmoproject.org/wp-content/uploads/Verification-Overview-Flowchart-graphic.pdf)

- Non-GMO 인증마크 부여는 인증기관(Non-GMO Project)에서 주관하며 성분 검증은 기술관리기관에서 담당함
 - 기술관리기관은 인증기관에서 승인한 기관으로, 제품 제조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검토하며 고위험 작물과 그 파생물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함
 - 제품이 고위험군 성분을 함유한 경우 GMO 테스트 및 현장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현장심사는 미국 유기농인증(USDA organic), BRC(글로벌 식품안전표준)을 비롯하여 NSF(미국위생협회), GFSI(국제식품안전협회)의 승인을 받은 인증과 결합이 가능하며, 이미 관련 승인서를 보유한 경우 대체 가능함
- 검증을 완료한 제조업체는 인증기관(Non-GMO Project)과 이름·로고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Non-GMO Project Verified seal의 아트 파일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매년 제품에 대한 검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 검증 수수료가 발생함

□ 소요비용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제품 확인 수수료	제품당 70달러	인증기관(Non-GMO Project)이 부과
	기술관리기관 심사비	품목별 업체별 상이	하기 참조
컨설팅비		품목당 3,000~5,000달러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Non-GMO Project 홈페이지, 기술관리기관 홈페이지,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유선 및 서면조사

-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증을 위해 제출하는 제품 수와 해당 제품에 옥수수나 콩과 같은 고위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인증기관에는 제품 확인 수수료를 지불하며, 2018년 10월 1일부터 Non-GMO 프로젝트의 수수료는 제품 당 50달러(한화 약 6만원)에서 70달러(한화 약 8만원)로 인상됨
- 기술관리기관이 자체 검증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각 기술관리기관을 통해 수수료 안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구분	평균 소요비용	
	A社	B社
신청료	250달러	999달러
등록비	제품 1~5개: 개당 1,250달러 (추가 시 개당 100달러 별도 부과)	-
제품 평가비용	평가비 300달러 평가 변경비 50달러	제품 1~10개: 999달러 일괄 부과 제품 11개~50개: 999달러 일괄 부과 제품 51개 이상: 999달러 일괄 부과
	고위험 제품의 경우 개당 50달러	고위험 제품의 경우 개당 99달러
현장심사비	기본 1,500달러 + 출장비(실비)	미국 및 캐나다: 개당 1,299달러 그 외 지역: 개당 1,899달러
추가비용	국제클라이언트비용 2,500달러 라벨 발급비용 250달러 (추가발급 70달러) 사전검토비용 250달러 원료규정 준수 통지서 발급비용 장당 100달러 컨설팅비용 시간당 250달러	신속평가비용 개당 699달러 컨설팅비용 시간당 250달러

* 주: 현장 검증이나 데스크 검토 비용 등은 위치에 따라서 출장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승인받은 기술관리기관 중 2개社

□ 필요서류

- 인증 신청 시 하기 서류를 기술관리기관에 제출함

-
- 송장
 - 구매 증명서
 - 시설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
 -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재료, 시설의 수
 - 라이선스 계약서
 - 원료 리스트, 생산 설비 정보, 검사 결과 등
 - 재료에 대한 분석 증명서
-

USDA Organic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USDA Organic 인증	국가명	미국
마크		인증기관	미국 농무부(USDA)
		시험 및 인증대행기관	공인인증기관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기능성 인증
		도입시기	2002년(전면 시행)
		유효기간	5년(만료 전 갱신)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투입되는 원료와 생산 공정에 대해 유기농업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함 ◦ 근거규정 - 미국연방규정집 제7권(농업) 205장(7 CFR Part 205) - 유기농식품 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 1990) - 미국 농무부 국가유기프로그램(NOP)
인증 내용	◦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 토지 상태 및 작물의 영양관리, 금지물질 사용 등에 관한 미국 농무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유기농’, ‘100%유기’, ‘유기로 만든’ 등의 표기를 위해서는 국가유기프로그램(NOP)에 따라야 함
적용품목	곡물, 과일 등 농산물, 유제품, 축산물, 수산물 등

□ 취득

취득 유형	국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유럽연합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통용됨		
소요기간	6~10주	소요비용	최초 신청 시 품목당 800달러 (현장실사비용 별도)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미국 유기농인증(USDA Organic)은 유기농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 유제품, 축산물, 수산물 등에 발급함
 - 제품에 ‘유기’, ‘100% 유기’, ‘유기로 만들어진’ 등으로 표기된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등 과정에서 유기농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미국 국가유기인증프로그램(NO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유기농 라벨을 부착하거나 판매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미국 유기농인증은 미국 농무부가 공인한 미국 내 인증기관 및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농무부 마케팅지원청은 온라인⁸⁰⁾을 통해 공인 인증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기준 미국 공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4개의 한국 인증기관이 확인됨
- 유기농 제품은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 원료 함유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디자인에 차이가 있음
 - 미국 국가유기프로그램은 농작활동 수행 전(前) 단계를 포함하며, 작물 생산농장이 유기농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3년간 유기농 규정을 준수하여 유기농 농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농산물을 재배하는 동안 합성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방사선조사 또한 허용되지 않음
 - 유기농 원료 함유비율이 70% 이상인 제품은 유기농인증을 취득해야 하나, 유기농 표시는 95% 이상부터 가능함

〈USDA Organic 인증 라벨 구분〉

100% 유기농	95% 이상 유기농	70~95% 유기농	70% 미만 유기농
			
인증 필요	인증 필요	인증 필요	인증 불필요
유기농 표시 사용가능	유기농 표시 사용가능	유기농 표시 사용불가	유기농 표시 사용불가

* 출처 : 미국 농무부(USDA), 유기농협회(OTA)

80) 미국 농무부 마케팅지원청 홈페이지(<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Certifiers/CertifiersLocationsSearchPage.aspx>)

- 2014년 7월 발효된 「한·미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 받은 가공식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하지 않아도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음⁸¹⁾
- 한국(또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⁸²⁾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상의 정의에 따름
 - 특히 유기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하여 인정함
 - 라벨 표시사항은 각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항생제 및 농약 등은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함
 - 한국에서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를 사용한 사과·배를 원료로 한 제품은 유기로 표시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는 항생제 사용 축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에 유기 표시가 불가함
 - 화학합성 농약, 유전자변형 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 또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수입국 규정에 따라 통관 및 유통 시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한국 유기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수입증명서(NOP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 국내 인증기관은 유기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입증명서를 발급함
 -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양국 인증마크 중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인증마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미국 농무부(USDA)
홈페이지		www.usda.gov
연락처	담당부서	미국 농무부 산하 마케팅지원청(www.ams.usda.gov)
	전화번호	+1-202-720-9556
	팩스번호	+1-202-720-0810
	이메일	amsadministratoroffice@ams.usda.gov

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82) 한국 또는 미국에서 최종 제조되어야 하며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음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USDA 공인인증기관 검색	수출업체	-	미국 농무부 마케팅지원청 홈페이지 ⁸³⁾ 참고
2	인증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수출업체	-	하기 소요비용 참고
3	서류심사	공인인증기관	약 6-10주	-
4	현장실사 실시	공인인증기관		-
5	조사결과 종합 및 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		-

- 현장실사 시 금지물질 사용여부 확인, 시설 및 장비 검사, 생산물 품질 및 관리방법 평가 등을 진행하며 필요 시 농작물 재배토양 및 제품 샘플을 채취함
- USDA Organic 인증을 취득한 후에도 매년 유기농 규정 준수여부에 관한 정기심사를 통과해야 함
 - 정기심사 시 전년도 유기시스템 계획과 달라진 사항에 관한 설명자료, 신규 유기시스템 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인증서에는 인증 대상 정보(이름 및 주소), 인증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작물·축산물·가공식품 등, 인증기관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됨
 - 인증을 취득한 후에는 유기농 생산방식을 포기하거나 인증 대리인 또는 국가유기 프로그램 담당자 등에 의해 중단 또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함

□ 소요비용

구분	항목		평균 소요비용
취득비	최초	신청비용	품목당 약 800달러
		현장실사	품목당 약 1,600달러
		현장실사 감독관 출장비	1일 기본 90달러 + 실비
		종합 심사	품목당 약 800달러
		발급수수료	품목당 약 50달러
	연간	현장실사	품목당 약 1,600달러
		종합 심사	품목당 약 800달러
	인증범위 확대	서류심사	품목당 약 400달러
		현장실사	품목당 약 400달러
컨설팅비(대행 수수료 포함, 실사비 제외)			품목당 약 200~600만 원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USDA Organic 공인인증기관,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유선 및 서면조사

83) <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Certifiers/CertifiersLocationsSearchPage.aspx>

□ 필요서류

- 인증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하기와 같음
 - 신청인 정보(사업자명, 주소 및 연락처, 대리인 정보 등)
 - 제품 정보
 - 이전에 신청한 모든 유기인증제 정보(인증명, 신청연도, 인증 거부사유 등)
 - 최근 3년간 재배 등에 사용한 화학물질 이력
 - 유기농 생산 또는 취급 시스템 계획서

[별첨1] 유기농시스템 계획서(예시)

Organic System Plan Template for Crop Production			
Farm / Ranch / Business Name			Date
Application			7 CFR §205.401
Applicant(s)			
Farm, Ranch or Business Name			
Scope of Organic Production Activities (Crop Production, Livestock Production, Handling):			
Mailing Address			
Physical Address			
City		State	Zip Code
Primary Phone Number	Alternate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Website or Social media (specify):	
County (or Counties) where farm(s)/ranch(es)/facility(ies) are located			
Organizational Structure/ Legal Status: ☐ Sole Proprietorship ☐ Legal Partnership ☐ S-Corporation ☐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 Trust ☐ Non-Profit Organization (specify IRS type) ☐ Government/Public Agency (Specify) ☐ Other (Specify):			
If a Corporation, List the State of incorporation and Name			
Name the Person(s) Authorized to action on the Applicant's behalf, their Address(es) and Telephone Number(s)			
List the Name(s) of any Certifying Agent(s) to which an application has be previously made, Date(s) of Application, and Outcome of the Application Submission(s) ☐ NONE			
Have you received any notification of noncompliance or denial of certification? ☐ No ☐ Not Applicable (e.g. first-time application) ☐ YES Please attach a copy of these, with a description of actions taken to correct non-compliances, including evidence of correction. ☐ Attached are the notice, descriptions and evidence of correction.			
This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completed Organic System Plan that includes all Production and Handling Activities and for which you are seeking certification. ☐ Attached			
☐ The signature below is from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operation applying for certification.			
Signature of Applicant(s)		Date	
Note: All business information submitted/collected is confidential and exempt from public inspection and copying.			

*출처 : 미국 농무부 마케팅지원청(www.ams.usda.gov)

[별첨2] 미국 유기제품 수입인증서(NOP Import Certificate) 국문설명

원산지 생산. 모든 재생산에 대한 양식번호와 일자 포함.

승인양식- OMB NO. 0581-0191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청 국가유기프로그램 수입증명서			본 인증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기재 또는 수정할 경우 11,000달러 이상의 벌금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18 USC 1001).
2. 도착지(도시 및 주)		1. 인증받은 유기 기준		4. 수입증명서 번호	
5. 수출업자(명칭 및 주소)		3. 일자		6. 제품 수출지	
7. 수령인 (명칭 및 주소)		8. 증명서 발행기관(명칭 및 주소)			
9. 총 순중량	10. 총 컨테이너 수				
11. 표시된 제품명	12. 관세 코드	13. 선적 식별	14. 최종 취급자	15. 최종 취급자의 인증기관	
16. 특기사항 및 증명					
본 인증서에 명시된 농산물은 USDA가 인정한 유기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적어도 1990SUSEH 유기식품생산법(OPFA)의 요구사항과 동등함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USDA에 의한OPFA와 국가유기프로그램 7 CFR part 205에 따른 USDA 유기법을 따라 생산되고 취급되었음을 간주한다.					
17. 인증기관의 서명				18. 일자	

USDA가 인정한 유기인증기관의 담당자가 서명하지 않은 인증서는 무효이다.

문서업무감축법 1995에 따라, 기관은 수행 또는 주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은 OMB 유효한 관리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에 응할 필요가 없다. 본 정보수집에 대한 유효 OMB 관리번호는 0581-0191이다. 안내검토, 기존 데이터출처 검색, 필요 데이터 수집 및 유지, 정보수집 작성 및 검토 등 이 정보수집 작성에 요구되는 시간은 개인당 평균 30분이다.

미국 농무부 (USDA)는 해당 프로그램과 활동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국적, 연령, 장애, 해당되는 경우, 성별, 혼인상태, 부모관계, 가족관계, 종교, 성적취향, 유전적 정보, 정치성향, 보복성, 또는 개인소득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공지원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모든 금지 조건이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프로그램정보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체수단(점자, 확대인쇄물, 오디오테이프 등)을 요구하는 장애인은 (202) 720-2600 (음성 및 TDD)로 USDA의 TARGET Center에 문의한다. 차별과 관련한 민원제기는 USDA,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로 서면 제출, 또는 (800) 795-3272 (음성) 또는 (202) 720-6382 (TDD)에 연락한다. USDA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NOP2110-1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캐나다



캐나다 식품 수입라이선스233

캐나다 식품 수입라이선스

□ 기본정보

인증명	캐나다 식품 수입라이선스	국가명	캐나다
마크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Agence canadienne d'inspection des aliments Canada	인증기관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등록(수입업체)
		도입시기	2019년 1월
		유효기간	2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기존 14개의 식품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식품안전법(SFCA) 규정을 시행하였으며, 식품 수입업체는 수입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함 - 근거규정 - 식품안전법(SFCA), 식품의약품안전법(FDA), 식품의약품규정(FDR),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FCR)
인증 내용	- 캐나다 수입·유통업체가 식품 수입을 위해 취득하는 라이선스로,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 전 수입업체로부터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함 - 식품 품목별로 규정 시행일이 상이한 가운데, 특정 비가공 식품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식품첨가물 및 주류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취득이 불필요함 -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방관리계획(PCP)을 업체차원에서 개발하고 구현해야함 - 수입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식품을 제조, 가공, 처리, 보존 및 포장 등의 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식용 동물 및 육류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업무시간에 대한 조건이 추가됨
적용품목	- 유제품, 알류, 가공란 제품, 가공 과일 또는 채소 제품, 육류제품 및 식용동물, 어류, 꿀 및 메이플 제품, 신선 과일 또는 채소, 비가공식품 - 식품첨가물 및 알코올음료를 제외한 그 외 식품

□ 취득

취득 유형	수입품에 대해 캐나다 내의 수입업자가 취득하는 라이선스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캐나다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2개월	소요비용	250달러(한화 약 25만 원)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2019년 1월 신규 시행된 캐나다 식품안전법(SFCA)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행정절차를 축소하되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
 -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규제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한국에서 주로 수출되는 가공식품은 수출 전 별도의 가공식품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신규 규정에는 △생산 및 수출입 라이선스 발급 도입,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변경, △교차오염·식중독·세균감염 등 식품안전 관련 규정 변경, △식품이력추적관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김
- 캐나다 식품 수입·유통업체는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한국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함
 - 캐나다 내에서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생산 및 수출입을 희망하는 캐나다 업체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 수출업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는 없음
 - 캐나다 당국이 식품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선스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이 이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예방관리계획(PCP)⁸⁴⁾ 및 이력추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수입자는 수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예방관리계획에는 식품 제조공정 상 위해요인 분석과 중요 관리지점 모니터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김
 - 최종 예방관리계획서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보관되어야 함
 - 수입자는 상품명, 로트 기호, 공급자 등의 명칭 및 주소를 기록·보관하고, 해당 정보를 제품 라벨에 표기해야 함
 - 제품의 유통이력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이름 및 주소, 판매 및 구매일자 기록을 보관하여야함

84) Preventive Control Plan

□ 수입식품 품목별로 라이선스 발급기한이 상이하며 식품첨가물 및 주류는 라이선스 취득이 불필요함

〈수입식품 품목별 라이선스 발급 및 예방관리계획 등록기한〉

품목명	라이선스 발급기한	예방관리계획(PCP) 등록기한
유제품, 알류, 가공된 제품, 가공 과일 또는 채소 제품	2019.1.15.	2019.1.15.
육류제품 및 식용동물	2019.1.15.	2019.1.15.
어류	2019.1.15.	2019.1.15.
꿀 및 메이플 제품	2019.1.15.	2019.1.15.(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불필요(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이하)
신선 과일 또는 채소	2019.1.15.	2020.1.15.(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불필요(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이하)
비가공 식품 (곡물, 오일, 설탕 또는 음료로 사용)	2020.7.15. (가공의 의도 및 “추가 준비 한정” 표시가 없는 경우)	2020.7.15.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및 직원수 4명 초과) 2021.7.16.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및 직원수 4명 이하) 불필요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이하)
식품첨가물 및 알코올음료	불필요	불필요
그 외 식품	2020.7.15.	2020.7.15.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및 직원수 4명 초과) 2021.7.16.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및 직원수 4명 이하) 불필요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이하)

* 출처: 캐나다 식품검역청 (<http://inspection.gc.ca/food/timelines/eng/1528199762125/1528199763186>)

□ 모든 수입식품은 캐나다 식품안전법(SFCA) 및 식품의약품법(FDA) 규정에 따라야 함

- 품목별 기재사항을 영어, 프랑스어로 병기하여 표기함
 - 예방 관리 계획의 일부로써 추적에 용이하기 위해 라벨에 제조 사업자 또는 제조 위탁 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 정보를 기재해야 함
- 라벨링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벌금, 판매 금지, 리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유념해야 함
 -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12월 14일 이후에는 모든 포장 식품에 신규 규정이 적용됨
- 식품 라벨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식품검역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⁸⁵⁾

85) <https://inspection.gc.ca/food/requirements-and-guidance/labelling/industry/eng/1383607266489/1383607344939>

〈수입식품 라벨링 규정〉

라벨링 주요 기재사항	품목별 라벨 기재사항
- 제품명 - 원산지 - 날짜 표시 및 저장 방법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이름과 주소 - 방사선조사 식품 여부 - 성분 및 알레르기 항원 - 순중량 - 영양 표시 - 감미료 및 식품첨가물 - 강화 성분 - 등급 - 동일성 표준 요구사항	◦ 과자·초콜릿·스낵류 - 품명, 원재료, 용량 - 견과류의 함유율 - 영양 표시 - 자체 성분 강조 및 선언 ◦ 청과물 - 품명, 용량, 유통 기한 - 원재료 표시 -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 - 등급, 제품 크기, 원산지 - 등록 번호, 유기농 여부

□ 수입라이선스는 만료일 전에 부정한 사실로 취소되지 않는 한, 발행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함

□ 관련 법령의 요구조건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거나 라이선스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정지될 수 있음

◦ 라이선스 기(既) 취득자가 라이선스행위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에 상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도 라이선스 정지가 가능함

□ 본 인증은 캐나다 수입업체가 취득하는 인증이나, 국내 수출업체 또한 인증 프로세스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입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홈페이지		https://inspection.gc.ca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1-800-442-2342 / +1-613-773-2342
	팩스번호	-
	이메일	cfia.media.acia@canada.ca
기타		-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CFIA 계정 생성	수입업체	약 2개월	식품검역청 홈페이지 접속
2	라이선스 유형 결정	수입업체		-
3	라이선스 신청서 작성	수입업체		서류 제출
4	라이선스 발급	CFIA		-

* 출처: 캐나다 식품검역청

- CFIA 홈페이지⁸⁶⁾에 접속하여 계정과 비즈니스 프로필을 입력해야 하며, 이 계정을 통해 라이선스 신청 및 인증서 내보내기, 전자지불을 설정할 수 있음
 - 라이선스 보유를 위해서는 예방관리계획(PCP)을 준비하고 구현해야 함
- 식품안전법(SFCA)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 가능한 라이선스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예방관리계획(PCP)을 준비하고 구현
 - 복수 라이선스를 보유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식품 범주 및 활동에 중복이 없어야 하며 추후 식품검역청에서 각 라이선스에 대한 검사에 대비해야 함
- 실제 수입라이선스 발급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됨

□ 소요비용

- 라이선스 발급비용으로 250 캐나다달러(한화 약 25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함

□ 필요서류

- 수입업체는 하기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를 식품검역청(CFIA)에 제출해야 함
 -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
 - 활동이 수행될 시설의 위치
 -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 캐나다 농산물법, 어류검사법 또는 육류검사법에 따라 발급된 등록 또는 라이선스 (보유한 경우)
- 식품검역청(CFIA)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하기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수입 허가 신청서 양식 NO.5083
 - 수생 동물 및 동물의 수입 허가 신청서 양식 NO.5670
 - 캐나다인을 위한 안전한 음식 라이선스
 - 식물 보호법에 따른 식물 및 기타 수입 허가 신청 양식 NO.5256

86) www.inspection.gc.ca/about-the-cfia/my-cfia/eng/1482204298243/1482204318353

4. 유럽권 인증



유럽 공통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243
----------------------	----------



지리적 표시(GI) PDO·PGI·TSG 인증	247
------------------------------	----------



EURO LEAF 인증	253
--------------	----------



V-Label 인증	259
------------	----------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국가명	유럽
마크		인증기관	유럽 식품안전청(ESFA)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인증
		도입시기	2002년
		유효기간	무기한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전문기관으로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설립됨 ◦ 근거규정 - 유럽 식품안전기본법(EC No.178/2002) -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Regulation 1169/2011) - 신규 식품 결정절차에 관한 법(EU 2018/456)
내용	◦ 유럽 식품안전청은 EU 역내 식품안전을 감독하며 영양, 식이요법, 위해성에 관한 EU 정책을 보조함 ◦ 과학적 자문과 위해성 평가 내용 등의 정보를 EU 소비자에게 전달함 ◦ 노블푸드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승인을 담당함 - 노블푸드란 기존에 EU 국가 내에서 소비되거나 원료로 사용되지 않은 식품으로, 시판 전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유통이 승인되어야 함
적용품목	가공, 부분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인간이 섭취하도록 의도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물질 또는 제품

□ 취득

취득 유형	국내 식품기업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전 식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EU 회원국 내 통용가능		
소요기간	별도의 소요기간 없음 (유럽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소요비용	별도의 비용 없음 (유럽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세부정보

- EU 회원국 수출 시 식품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 또는 판정하는 별도의 인증 및 등록 제도는 확인되지 않으나 불시 검사를 통해 수입거부 및 반송,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자문을 참고하여 유럽연합 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식품관련 규칙이 제정되므로 식품 수출업체는 EU 식품안전기본법을 유념해야함
- EU 식품안전기본법(EC No 178/2002)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및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유럽 식품안전청(EFSA)이 설립됨
 -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독립적인 법인체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함
 - 식료품 체인의 글로벌화로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위해요인 관리(Risk Management) 및 통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유럽 식품안전청은 위해요인 평가(Risk Assessment)를 각각 분담하고 있음

〈유럽 식품안전청의 역할〉

-
- EU 내에서 식품안전을 감독하며 EU정책 보조를 위해 영양, 식이요법, 위해성 사안을 다루는 과학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식품첨가물, 유아용 식품, 유기농 식품 등 특정용도 식품과 기능 식품,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평가
 - 새롭게 발생하는 식품안전 위해성 식별
 - 식품안전 위기 발생 시, 유럽위원회 보조
 - 과학적 자문과 위해성 평가 내용 등의 정보를 EU시민들에게 전달 및 소통
-

-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EU 회원국 내 유통되는 식품은 EU 규정에 따라 위생 기준, 라벨링 규정,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의 경우에도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라벨링 규정은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전반에 적용되며 EU 수입 및 유통업체에 표시 의무가 있으나 국내 수출업체 또한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라벨 표기 시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공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함
 - 자세한 사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음⁸⁷⁾

8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식품안전 페이지(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food-safety-and-quality_en)

<라벨링 기재사항 및 세부내용>

기재사항	세부내용
상품명	상표와 브랜드는 표기할 수 있으나 상품명으로 사용 불가함
원료목록	- 중량 순으로 표시하며 전체 2%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다른 형태로 열거 가능함 - 복합 원재료 또한 명칭·총 중량을 기재 한 후 원재료 목록을 기재함 -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 사용용도(보존제) + 화학물질 명’으로 표기함 - 원재료가 “인공 나노물질”의 형태로 제품에 존재할 경우 당해 ‘원재료명 + (Nano)’로 표기함
알레르기 항원	- 글루텐 포함 곡물(밀, 보리, 귀리 등) - 갑각류 제품, 계란 제품 - 어류제품 (일부 예외 있음) - 땅콩과 같은 제품, 콩 제품 (일부 예외 있음) - 유제품 (일부 예외 있음) - 견과류 및 그 제품 - 셀러리와 같은 제품 - 겨자, 참깨 및 동제품 10mg/1l 이상 농도의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염 - 루피너스(콩과 식물) 제품 - 연체동물 제품
순 용량	- 무게 단위로 “킬로그램” 또는 “그램”으로 표시 - 부피 단위는 ml(밀리리터), cl(센티리터), l(리터) 중 하나를 표시함
원산지	- 최종 제품의 원산지와 최종 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원료의 원산지를 기재 하거나 ‘(주원료)는 (최종 제품의 원산지)에서 유래 하지 않음’ 을 기재해야함 -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원산지 국기 등이 패키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됨(위원회 실시 규칙 (EU) 2018/775)
영양 표시	- 에너지 (kJ / kcal를 모두 기재) - 지방 (g) - 포화 지방산 (g) - 탄수화물 (g) - 당류 (g) (단당류 및 이당류의 총 가치) - 단백질 (g) - 염분 (g) - 각 항목에 대해 100g 또는 100ml 당 영양소를 표시해야함 - 한 끼 당 영양소를 표시 할 수 있고, 영양 표시는 가능한 표 형식으로 기재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
저장조건 및 사용조건	있는 경우 기재함
EU 역내 사업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과 주소	-
사용방법에 대한 지침	-

□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 노블푸드(Novel Food)에 대한 등록 및 승인절차를 담당함

- 노블푸드란 기존에 EU 내에서 소비되지 않았던 식품 또는 성분⁸⁸⁾으로, EU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획득해야 수출될 수 있음
- 노블푸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 당국에 식품 정보를 제공하여 노블푸드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식품 설명서, 생산 공정, 사용 조건 등을 제출함⁸⁹⁾
- 또한 유럽 식품안전청 NDA(영양·신규식품 및 알레르기 패널)에서 안전성평가 및 영양섭취량 판정을 수행하고 있어 제품 특징, 생산 공정, 미생물독성학적 정보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EU 회원국은 식품접촉 소재에 대한 EU 공통 규정 및 독자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No.2023/2006)는 식품접촉 소재의 제조공정 우수제조관리 기준(GMP)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EU 회원국 규제는 하기와 같음

국가명	규제사항
프랑스	- 모든 식품접촉 포장용기에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하며 고무,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등에 대한 개별 규정이 제정됨
네덜란드	- 종이, 코팅 제, 고무, 금속, 목재 · 코르크, 섬유, 염료, 에폭시 수지, 유리, 에나멜 등에 대한 개별 규정을 시행 중임
이탈리아	- 재생 셀룰로오스, 고무, 종이, 골판지, 유리, 알루미늄 등 사용에 대해 규제함
독일	- 접착제, 종이, 고무, 실리콘, 왁스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권고)가 있으며, 독일 식품용품법(LFGB)에 따라 식품과 접촉하는 도구 및 소재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실시함

□ FSSC 22000인증 등 GFSI 인증⁹⁰⁾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럽 식품 수입업자가 요구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유럽 식품안전청(EFSA)
홈페이지	www.efsa.europa.eu
연락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88) Regulation (EC) No 258/97

8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R0456>)

90)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국제식품안전협회) 인증

지리적 표시(GI): PDO, PGI, TSG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원산지 표시 보호(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산물 보증(TSG)	국가명	유럽
마크		인증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권장 인증
		도입시기	2007년
		유효기간	무기한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원산지의 전통과 문화, 지리에 기반을 둔 제품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도입됨 - 지역별 전통 및 문화를 진흥시키고 로컬 푸드를 보호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유럽 의회·위원회 규정(EU)No.1151/2012, (EU)No.668/2014, (EU)No.664/2014 - 유럽연합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 와인에 관한 규정(No. 1234/2007), 주류에 관한 규정(110/2008), 농수산물식품류 관련 규정(510/2006)
인증 내용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고유한 명칭을 보호하는 3가지 인증 유형이 있음 - PDO는 원재료의 생산 및 가공 등의 전 과정이 전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만 취득할 수 있고, PGI는 일부 과정만 이루어지더라도 취득 가능함 - TSG는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생산, 가공된 식품에 대해 취득 가능함
적용품목	- 맥주, 식물추출 음료, 빵, 천연검, 겨자, 파스타, 소금 등 가공식품 - 신선육, 가공육류, 치즈, 계란, 꿀, 유제품, 버터·마가린·오일, 과일·채소·시리얼, 해산물, 후추, 식물성 정유 등

□ 취득

취득 유형	국내에서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적합할 시 유럽위원회 심사 및 등록을 통해 취득 가능함		
취득현황	2019년 11월 기준 총 1,721건(PDO 741건, PGI 619건, TSG 80건)이 등록됨		
타국가 통용여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동등성 인정을 받은 역외국에서 통용이 가능함		
소요기간	3년 이내	소요비용	없음

* 주1: 소요기간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주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https://ec.europa.eu/agriculture/quality/door/list.html>)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가능

2. 세부정보

□ 유럽연합(EU)의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란 특정 국가의 원산지와 관계된 제품의 명칭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원산지의 전통, 문화, 지리 등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제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는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자 도입됨
- GI는 지적재산권으로 인식되어 등록된 명칭은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모방할 수 없으며 출처·원산지 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표시를 할 수 없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무단 사용과 모방이 증가함에 따라 EU는 GI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략 지리적 표시에는 원산지 표시 보호(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지리적 표시 보호(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전통 특산물 보증(TSG,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이 있음

- 원산지 표시 보호(PDO)는 제품 생산의 모든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되는 반면, 지리적 표시 보호(PGI)는 최소 하나의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여됨
 - PDO와 PGI는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서 등록하거나 마크를 라벨에 표시할 수 있음
- 전통 특산물 보증(TSG)은 원료 사용과 생산방식에 있어 전통적인 관행을 적용한 제품에 부여되며 다른 유사 제품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함
 - PDO나 PGI와 달리 제품과 원산지 사이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음

□ 각 인증별로 신청 가능한 품목, 근거규정, 자격요건 등에 차이가 있음

〈인증별 대상 품목〉

구분	품목
원산지 표시 보호(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 신선 육류 제품, 기타 동물성 제품, 계란, 꿀, 치즈, 유지(버터, 마가린, 오일 등), 버터 외 유제품, 과일, 채소 및 곡물, 신선 생선, 연체동물 및 갑각류와 그로부터 유래된 제품 ◦ 맥주, 초콜릿 및 빵, 과자, 케이크, 비스킷, 식물 추출물로 만든 음료, 파스타, 소금, 겨자 페이스트, 면
전통 특산물 보증(TSG)	◦ 맥주, 초콜릿 및 과생 제품, 빵, 과자, 케이크, 제과, 비스킷 및 제빵류, 식물 추출물로 만든 음료, 파스타, 소금

*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EU) No.1151/2012, 규칙 668/2014

〈인증별 자격 요건 및 특징〉

구분	세부내용
원산지 표시 보호(PDO)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EU)No.1151/2012 제 5조(1)의 자격 요건에 따름 ◦ 제품이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 및 가공되어 해당 지역의 고유한 환경적 특징과 생산기술이 제품의 품질 및 특성에 반영된 경우가 해당됨 - 제품의 품질과 특성이 특정 자연적·인적 요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모든 생산 공정(생산·가공·준비)이 특정 지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함 ◦ 등록된 제품명과 PDO 마크를 함께 표시하며 원어나 약어 모두 표기할 수 있음
지리적 표시 보호(PGI)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EU)No.1151/2012 제 5조(2)의 자격 요건에 따름 - 제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원산지에 기인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의 일부가 명시된 지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등록된 제품명과 PGI 마크를 함께 표시하며 원어나 약어 모두 표기할 수 있음 - 원산지에 대한 묘사나 원산지가 소재하는 회원국 또는 지역을 나타내는 문장·그래픽·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전통 특산물 보증(TSG)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EU)No.1151/2012 제 18조(1)(2)의 자격 요건에 따름 -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료 또는 성분에서 생산된 상품 및 식품이어야 하며 생산, 가공 방법 등 역시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야 함 - 명칭이 전통적으로 특정 제품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 온 것임을 식별 할 수 있어야 함 ◦ 등록된 제품명과 TSG 마크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명칭이 제품의 전통적 속성이나 특정한 속성을 명확히 나타내야 함

*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https://ec.europa.eu>)

〈유럽 지리적 표시 취득제품〉

원산지 표시 보호(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산물 보증(TSG)		

* 출처 : 온라인 쇼핑몰(www.amazon.co.uk, www.carrefour.fr, www.jumbo.com, www.bell1869.com), Open Food Facts 홈페이지(<https://world.openfoodfacts.org>), tromberger-pflaume 홈페이지(www.stromberger-pflaume.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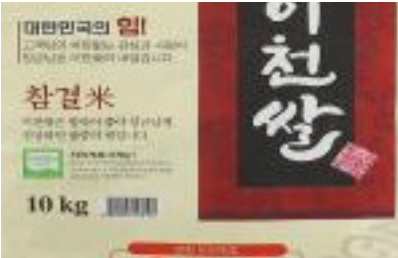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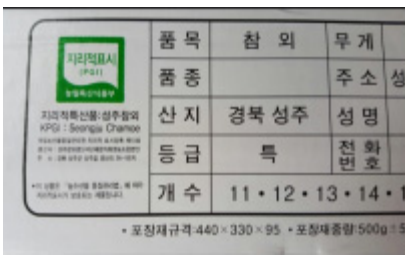
□ 한-EU FTA 협정에 따라 한국 지리적 표시(PGI) 등록 시 EU의 지리적 표시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음

- EU측은 농산물 및 식품 60건·와인 105건, 한국 측은 각각 63건과 1건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영토에서 보호하기로 합의함
- 동등성 인정을 받은 한국 지리적 표시 추가 정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⁹¹⁾에서 확인 가능함

<한국에서 동등성 인정받은 지리적 표시(예시)>

보성녹차 Boseong Nokcha	고창북분자 Gochang Bokbunja
성주참외 Seongju Chamoe	고흥유자 Goheung Yuja
이천쌀 Icheon Ssal	광양매실 Gwangyang Maesil
정선황기 Jeongseon Hwanggi	괴산고추 Goesan Gochu
철원쌀 Cheorwon Ssal	구례산수유 Gurye Sansuyu
하동녹차 Hadong Nokcha	남해마늘 Namhae Maneul
홍천한우 Hongcheon Hanwoo	무안백련차 Muan Baengnyeoncha
강화약쑥 Ganghwa Yakssuk	무안양파 Muan Yangpa
경산대추 Gyeongsan Daechu	밀양얼음골사과 Miryang Eoreumgol Sagwa
고려백삼 Goryeo Baeksam	봉화송이 Bonghwa Songi
고려수삼 Goryeo Susam	산청곶감 Sancheong Gotgam
고려태극삼 Goryeo Taekusam	상주곶감 Sangju Gotgam
고려홍삼 Goryeo Hongsam	순창전통고추장 Sunchang Jeontong Gochujang

<한국의 지리적 표시 취득제품>

		
이천쌀 Icheon Rice	성주참외 Seongju Chamoe	의성마늘 Uiseong Garlic

* 출처: 온라인 쇼핑몰(<http://traders.ssg.com>)

□ 인증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홈페이지		https://ec.europa.eu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32-2295-6185 / +32-2295-2509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91)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ood-farming-fisheries/food_safety_and_quality/documents/list-gis-non-eu-countries-protected-in-eu_en.pdf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등록 신청	생산 및 가공업체	-	국내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에 신청
2	심사	국내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	-	-
3	유럽위원회 송부	국내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	-	출원서와 상품명세서 제출
4	심사 및 유럽공동체 관보 공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소 18개월	-
5	이의제기 및 상호합의	생산 및 가공업체		-
6	지리적 표시 등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국내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두 곳에서 진행되며, 국내 기관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유럽위원회로 송부함
 - 국내 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산림청 등이 있으며, 신청 제품의 특징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함
-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 내 식품·농산물의 유일한 생산자여야 함
 - 지역 내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생산자가 있을 경우 지역관청에 단체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제출 시 제품과 생산지역에 대한 설명과 생산방법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제품이 신청자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검사 기관을 지명해야하며 신청 서류에 언급한 정보의 사실여부가 파악되어야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심사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 의견조정이 완료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등록되어 제품에 마크 사용이 가능함

□ 소요비용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없으나 생산업체에서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⁹²⁾
- 생산자 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비용, 등록을 위한 기술적 분석 실시비용, 생산 공정 제어 및 설정정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지리적 표시 인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임

□ 필요서류

- 신청서 제출 시 하기 사항에 주의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함

필요서류	유의사항
제품사양 초안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 내 다른 생산자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제품명	제품명은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상업적 사용의 증거를 제출해야 함
신청자 정보(개인/단체)	- 신청자는 동일한 농산물 또는 식료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기준에 충족하면 개인 신청도 가능함 - 신청자에 해당하는 모든 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제품 분류	‘유럽연합 규정(EU)No.1151/2012 적용에 관한 규칙668/2014’의 신청 대상품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제품 설명	원료의 세부사항, 주요 물리적·관능(맛과 냄새)적 특성을 포함해야 함
제품 원산지 증명	제품의 생산 방식과 관련하여 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사료 또는 기타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사용하는 원자재 및 소재	-
생산 방법 설명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가 충족해야 하는 기준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제품의 품질과 특성 및 관련 지역과의 연관성 설명서	제품의 품질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적 요소를 비롯한 지리적 영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함
검사기관 관련 정보	이름, 전화번호, 우편 및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9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https://ec.europa.eu>)

EURO LEAF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EURO LEAF 인증		국가명	유럽
마크			인증기관	EU Organic Farming (EU 집행위원회)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기능성 인증
			도입시기	2008년
			유효기간	1년마다 검사 실시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근거규정 - 유기농제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834/2007) - 유기농 생산, 라벨링 및 제어에 관한 규칙(EU regulation 889/2008) - 제3국 유기농제품 수입에 관한 규칙(EU regulation 1235/2008)
인증 내용	◦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유기농인증을 부여함 ◦ 생산 및 제조 시 첨가물 및 화학물질 사용 제한, 방사선조사 및 유전자변형성분 사용 금지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적용품목	종자 등을 포함한 농작물, 가축류, 사료, 농식품 등

□ 취득

취득 유형	승인된 시험기관을 통해 심사를 받을 경우 국내에서도 취득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 EURO LEAF 인증은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의 유기농 인증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음 -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튀니지		
소요기간	품목에 따라 상이함	소요비용	품목당 300만~500만 원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EURO LEAF 인증은 유기농 기준 및 규정을 준수했다는 의미로 유기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제품임을 보증함

- EURO LEAF 인증을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가 제품 성분의 95% 이상 사용되어야 하며 유전자변형(GMO)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유전자변형 성분이 고의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함량이 0.9%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유전자변형 성분 또는 식품이 원료로 사용된 경우 인증 발급이 불가함
- 생산 및 제조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첨가물 등은 사용이 금지됨
 - 이외에도 전리 방사선 사용금지, 인공비료 및 살충제 사용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또한 유기농 생산자는 토양 비옥도 및 생산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윤작, 천연 해충방제 기술사용, 미네랄 질소 비료 사용금지 등 요건을 수행해야 함

□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유기농 포장식품에는 EURO LEAF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의 경우 자율사항임

- 유기농 식품 수입에 관한 EU 규정을 준수하는 수입식품이나 포장되지 않는 유기농 식품일 경우 선택적으로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유기 성분이 95% 미만인 식품이나 전환(conversion) 제품⁹³⁾일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

EURO LEAF 인증마크	인증마크 사용규정
	◦ 인증마크 크기는 13.5mm x 9mm보다 커야 하며, 해당 크기로 표시가 불가능한 포장일 경우 9mm x 6mm 크기가 허용됨 ◦ 인증마크는 표준 녹색 및 흰색 색상표로 표시되어야 하며, 단색 인쇄만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색상 변경이 허용됨 ◦ 투명한 배경을 사용하거나 3D 효과를 추가하는 등 스타일을 설정할 수 없음
	

9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전환 제품은 유기농 방식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토양 등에 비유기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음(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farming/organic-farming/organics-glance/organic-logo_en)

- 유기가공식품의 라벨에는 유기농 인증로고, 원산지, 제조사명, 연락처, 포장지 회사명,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 EU국가의 라벨링 요구사항으로는 제품명, 제품성분 목록, 알레르기 항원, 영양정보, 성분 함유량, 실제 중량, 보관법 및 사용법,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 유효기간, 알코올 강도 등이 있음
- 인증마크와 승인번호도 함께 표시되어야 함

□ 2015년 2월 한국과 유럽연합(28개국)⁹⁴⁾ 간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발효되어 국내에서 유기인증을 취득한 식품은 ‘유기’로 표시하여 유럽 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음⁹⁵⁾

- 해당 협정은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이며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유기인증을 취득한 식품에 대해 인정됨
- 가공식품의 범위 및 라벨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기준을 적용함
- 또한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 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통관 및 유통 시 수입국 규정에 따라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가 시행됨
- 한국 유기인증을 취득하여 유럽연합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검사증명서(COI, certificate of inspection)⁹⁶⁾를 발급받아야 함
-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유럽연합 도착항에서 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 2018년 6월 기준 EU 수출용 국내 인증기관은 24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참고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홈페이지		https://ec.europa.eu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32-2295-6185 / +32-2295-2509
	팩스번호	-
	이메일	daniel.rosario@ec.europa.eu / clemence.robin@ec.europa.eu
기타		-

94)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96) [별첨] 참고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생산업체	품목에 따라 상이함	하기 ‘필요서류’ 참조
2	서류심사	시험기관		-
3	현장실사	시험기관		-
4	최종 검토 및 인증 결정	시험기관		-
5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 EURO LEAF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함
-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모든 생산업체는 ‘전환기’를 거쳐야 하며, 전환기 동안 유기농 생산방식을 유지해야 하나 생산된 제품을 유기농으로 판매할 수는 없음
 - 전환 기간은 생산되는 유기농 제품의 품목에 따라 다름
 - 다년생 덩굴 과일류: 3년
 - 방목형 돼지와 가금류: 12개월
 - 농장의 다년생작물: 2년

□ 소요비용

- EURO LEAF 인증 취득비용은 품목별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만~500만 원 가량 소요됨⁹⁷⁾

□ 필요서류

필수 서류 목록

- 회사의 행정 정보
- 지정된 단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상세설명
- 지정된 단위, 시설, 운영 등의 유기농 규정 준수와 관련된 기록문서

97) 해당 비용은 인증대행기관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비용으로 품목, 업체 규모, 심사일수, 인증기관 등에 따라 실제 취득비용은 다를 수 있음

[별첨] 유기농제품 검사증명서(COD)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IMPORT OF PRODUCTS FROM ORGANIC PRODUCTION INTO THE EUROPEAN
COMMUNITY**

1. Issuing body or authority (name and address)	2.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rticle 33(2) ☐ or Article 33(3) ☐ or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 Article 19 ☐	
3. Serial number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4. Reference No authorisation under Article 19	
5. Exporter (name and address)	6. Control body or control authority (name and address)	
7. Producer or preparer of the product (name and address)	8. Country of dispatch	
	9. Country of destination	
10. First consignee in the Community (name and address)	11.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er	
12. Marks and numbers. Container No(s). Number and kind. Trade name of the product	13. CN codes	14. Declared quantity
15. Declaration of body or authority issuing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box 1.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certificate has been issued on the basis of the checks required under Article 13(4)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and that the products designated above have been obtained in accordance with rules of production and inspection of the organic production method which are considered equival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EC) No 834/2007. Date _____ Nam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person _____ Stamp of issuing authority or body _____		

16. Declar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who granted the authorisation or its designat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roducts designated above have been authorised for marketing in the European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Article 19 of Regulation (EC) No 1235/2008, under the authorisation number mentioned in box 4.

Date

Name and signature of the authorised person

Stamp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its designate in the Member State

17. Verification of the consignment by the releva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Member

State:

.....

Import registration (type, number, date and office of the customs declaration):.....

Date:

Nam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person

Stamp

18. Declaration of the first consigne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reception of the goods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4 of Regulation (EC) No 889/2008.

Name of the company

Date

Name and signature of the authorised person

V-Label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V-Label 인증	국가명	유럽
마크		등록기관	유럽채식협회 (EVU, European Vegetarian Union)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기능성 인증
		도입시기	1996년
		유효기간	1년(만료 3개월 전 자동연장)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채식식품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식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 ◦ 근거규정 - 유럽채식협회 규정(2018.05)
인증 내용	◦ 채식식품 및 채식 외식서비스에 대해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 사용된 재료 및 함유 성분에 따라 완전채식식품과 일반 채식식품을 구분함
적용대상	◦ 재료를 변형시키거나 가공 처리한 모든 가공식품, 모든 알코올 또는 비알코올 음료, 식품에 사용하는 원재료 또는 첨가물이 해당됨 ◦ 차, 향신료, 미네랄워터 등 단일식품 및 가공되지 않은 채소류 등은 식물성 제품이므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 취득

취득유형	국내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2019년 10월 기준 전 세계 27개국의 약 1,000개 기업에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약 1만 개 이상의 상품에 V-Label 인증이 부여됨 ⁹⁸⁾		
타국가 통용여부	유럽 27개국에서 통용 가능함		
소요기간	2~8주	소요비용	최초 취득 시 약 250유로 연간 라이선스 비용 약 300유로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98) V-Label 홈페이지(www.v-label.eu)

2. 세부정보

□ 유럽채식협회(EVU, European Vegetarian Union)에서 도입한 V-Label 인증은 채식 식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인증하는 대표적인 인증임

- 1996년 스위스에서 V-Label을 처음 사용하였고, 2019년 10월 기준 전 세계 약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음
- 인증마크는 1970년대 이탈리아 채식주의협회에서 처음 개발하였고, 1985년 제1회 유럽채식총회⁹⁹⁾에서 공식 발표된 이후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 2008년부터 스위스의 V-Label GmbH에서 인증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V-label italia srl의 한국 서비스가 시작됨

□ V-Label 인증은 식품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채식 식당 등 채식 메뉴를 제공하는 식품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함

- 원재료 및 첨가물의 원산지와 제품 생산주기 각 단계 재료에 대한 검토품이 이루어지며 전 생산과정에 걸친 교차오염 여부를 확인함
- 식품 서비스의 경우 식당, 식음료 판매점뿐만 아니라 호텔 및 리조트, 이벤트 케이터링에 대해서도 인증 적용이 가능함
- 이 경우 직원 교육에 대해서도 V-Label 기준을 적용해야 함

□ V-Label 인증은 가이드라인¹⁰⁰⁾에 따라 완전채식(Vegan)식품 및 채식(Vegetarian)식품을 구분함

- 완전채식식품이란 비동물성 식품 및 동물성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하며 모든 생산 및 가공과정에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채식식품 또한 마찬가지로 비동물성 식품이지만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성 성분이 일부 함유될 수 있음

□ V-Label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제품의 전체 구성 및 전 과정에 사용된 첨가제 등을 밝혀야 하며 제한 성분을 함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증 취득이 거부됨

- 제조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인증 심사가 이루어지며 자료는 완전채식식품 및 채식식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 원칙적으로 인증 취득이 거부되는 제품과 특히 완전채식식품이 포함하지 않아야 할 동물성 성분은 하기와 같음

99) European Vegetarian Congress

100) 제12차 소비자보호회의(2016.04.22.)

거부제품	완전채식(Vegan)식품 포함 금지성분
- 도살된 제품 - 생선, 생선 부위 또는 기타 해산물에서 유래한 지방 - 동물성 향미료 (유제품 기반 제외) - 캐비아 등 가금류의 달걀 이외의 알 - 동물성 레닛(응고제)이 사용되는 유제품 - 로열젤리 - 코치닐 등 동물성 색소 - 동물 뼈를 연료(animal bone char)로 정제한 설탕 - 동물성 운반체 물질 및 첨가제 - 젤라틴, 부레 풀(isinglass) 등 동물성 물질을 이용한 청징(Clarification)	- 달걀 - 꿀 - 유제품 - 동물성 왁스 - 동물성 색소 - 동물성 운반체 물질 및 첨가제 - 난백 등 동물성 물질을 이용한 청징(Clarification)

- 유전자변형(GMO)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사육된 암탉이 낳은 달걀¹⁰¹⁾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지 않음
- 식품 포장에 동물성 제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조업체는 이를 고려해야 함
- 원재료 재배 시 사용되는 비료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유럽채식협회에서는 유기농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재배 시 비동물성 물질을 포함한 비료 사용이 권장됨
-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알레르기 항원 및 동물성 제품에 의한 오염을 자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최종 제품에서 동물성 성분에 의한 오염은 0.1% (1g/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잠재적인 오염 가능성을 표시한 경우 동물성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면 인증 취득이 가능함
 - 해당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최종 제품에 동물성 제품이 함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는 역할을 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V-Label KOREA
홈페이지		www.vlabel.kr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82-70-7011-3131
	팩스번호	-
	이메일	info@vlabel.kr
기타		-

101) ‘배터리 케이지’ 등 동물복지에 위반되는 사육 시스템에 의한 산란을 의미함

3. 취득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 신청	제조업체	2주~8주 (신속발급 신청 시 약 10일)	회사 및 제품 정보 제출
2	제안	인증기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계약 제안 선행됨
3	라이선스 계약	신청인 인증기관		-
4	인증 심사	인증기관		신청 내용 검토
5	인증 발급	인증기관		-

* 출처: V-Label 홈페이지(www.v-label.eu/wp-content/uploads/2019/01/v-label-flyer-dinlang-en-korr-0905.pdf)

- 스위스에 위치한 유럽채식협회 본부에서 인증을 발급하며, 제조업체의 본사 및 지사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유럽채식협회 사무소에서 인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온라인을 통해 인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회사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V-Label 홈페이지(www.v-label.eu)에 접속하여 회사명 및 주소, 연간 총 매출액 및 순 매출액(인증 제품에 한함), 담당자 정보, 인증대상이 되는 제품 수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함

□ 소요비용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심사비 및 등록비	품목당 약 250유로	-
	연간 인증마크 사용료	제품당 약 300유로	제품 판매 증감률에 따라 변동 가능 (일반적으로 10% 이상 증감을 보일 경우 제품당 약 300유로)
컨설팅비		약 50만원	품목별 업체별 상이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V-Label 홈페이지,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유선 및 서면조사

5. 기타 권역 인증



러시아



TR CU 인증

.....267

TR CU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TR CU 인증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국가명	러시아
마크		인증기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인증
		도입시기	2013년
		유효기간	1~5년 (인증별 상이)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피하기 위해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기존의 러시아 인증제도였던 GOST-R 제도에서 2013년 2월 15일부터 TR CU(유라시아 경제연합(EAEU)통합인증제도) 인증으로 변경됨 ◦ 근거규정 - 식품안전 기술규정 채택에 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동맹 결정(CCC No.880, 2011.12.09.)
인증 내용	◦ 2013년 2월 15일 기존의 GOST 인증제도가 TR CU 인증으로 통일되었고, TR CU 인증 취득 시에는 유라시아 공통 인증마크(EAC 마크)를 부착함 - TR CU 인증 제품에 부착하는 마크를 EAC 마크로 칭함 ◦ 식품과 관련된 10개 규정을 기반으로 적합성을 증명하여 TR CU 인증을 취득함
적용대상	◦ 곡물류, 야채 및 과일음료, 유지제품, 건강 기능성 식품, 식품첨가물, 우유 및 유제품, 육류, 어류 등의 식품안전 관련 규정(TP TC 021/2011)에서 규정하는 모든 식품이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비가공 육류제품, 특화 식료품, 식초 등은 제외됨 ◦ 강제인증 대상에는 Food products(식품류), Alcoholic beverages(주류), Fodder(가축사료), Grain(곡물류) 등이 포함됨

□ 현황

취득유형	유라시아경제연합(EAEA)에 소재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소속된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내에서 통용됨		
소요기간	2~3주	소요비용	품목별 상이

* 주: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2013년 국가별 인증 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협력을 목표로 TR CU 인증을 도입함

- 기존에는 유라시아 각 국가별로 기술적합성평가 인증제도(GOST)를 시행하여 국가별 규격에 맞추어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2014년 통일된 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TR CU(Technical Regulation of the Customs Union)인증제도로 변경됨
 - TR CU 인증 도입을 통해 관세동맹 지역 내 수출입절차가 간소화됨
- 현재 국가별로 상이한 표준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TR CU 기술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기존 GOST-R 인증제도가 적용됨
 - ‘기술 적합성평가 대상 목록’에 명시된 품목은 2015년부터는 기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GOST-R(러시아 기술표준 인증)·GOST-K(카자흐스탄 기술표준 인증)·GOST-B(벨라루스 기술표준 인증), GOST-UZ(우즈베키스탄 기술표준 인증) 인증서도 대체 불가함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 5개국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이 출범하며 TR CU 인증으로 통합되었으며 인증 취득 시 EAC 마크를 부착함
 - EAC 마크는 유라시아 적합성(Eurasian Conformity)의 약자로 ‘유라시아 국가 간 통일성’을 의미하며 TR CU 인증 제품에 부착하는 마크를 EAC 마크로 칭함
- 기존 GOST-R 인증과 TR CU 인증 간 변경사항으로는 공장심사 필수 시행 및 이에 따른 소요기간 증가 등이 있음

〈기존 GOST-R 인증과 TR CU 인증의 비교〉

구분	GOST-R	TR CU
신청자	제조업체 또는 수출입업체 모두 가능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현지법인(지사)
준비서류	영어문서	러시아어 문서
소요기간	적합성인증(CoC)과 적합성선언(DoC) 약 1~2주	적합성인증(COC) 1~2개월 적합성선언(DOC) 2~3주
공장심사 (연속 인증의 경우)	제품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체	샘플테스트를 추가하여 필수심사
인증서 유효기간	단일인증, 연속인증 - 1년과 3년	단일인증, 연속인증 - 1, 3, 5년

□ 식품류는 TR CU 강제인증 대상에 해당되며 각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규정을 준수해야 함

- 통합 적합성평가 대상목록은 러시아 연방정부명령 982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9년 11월 기준 총 47개 이상의 우선순위 규정이 관세동맹에 추가되어 매년 개정되고 있음
- 식품은 10개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하기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식품, 주류, 사료, 곡물 제품은 필수인증 대상에 해당됨
 - 강제인증 대상이지만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러시아를 포함한 관세동맹 회원국 내 통관이 불가하며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됨
 - 신선 및 가공식품은 제품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적합성을 증명하고 검역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TR CU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식품 관련 통합 적합성평가 규정>

- TP TC 015/2011 곡물 안전 관련 규정
 - TP TC 021/2011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TP TC 022/2011 식품 표시 관련 기술규정
 - TP TC 023/2011 야채 및 과일음료 기술 규정
 - TP TC 024/2011 유제품 기술규정
 - TP TC 027/2012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TP TC 029/2012 식품첨가물 안전 규격 관련 기술규정
 - TP TC 033/2013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TP TC 034/2013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TP EAEC 040/2016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 TR CU 인증은 제품 품목에 따라 적합성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과 적합성인증(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으로 구분되며 식품은 적합성 선언을 통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적합성선언이란 신청자 스스로 제품이 유라시아 공통 기술규정기준에 부합함을 알리고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서류심사 만으로도 인증 취득이 가능함
 - 적합성인증은 기계류, 테스트 장비, 전기제품인 경우에 취득함
 - 적합성 선언(DoC)대상 품목도 적합성 인증(CoC)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적합성 선언이 인증보다 절차가 간단함

□ TR CU 인증은 유효기간에 따라 단일(ONE-SHIPMENT)인증과 연속(SERIAL PRODUCTION)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일인증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유효하므로 일회성 계약에 적합하며 인증서는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간 계약서를 바탕으로 발행됨
 - 수출업체는 실질적인 수출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의미하며 수입업체는 관세동맹국 내 등록된 현지법인 또는 지사 등을 포함함
- 연속인증은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수의 딜러 또는 수입업자와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하며 1년에서 5년까지 유효함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발행되므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 검증 및 사후공장심사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TR CU 인증은 권한을 위임받은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에 의해서만 발급되며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속한 국가 내에만 해당 기관이 존재하여, 국내에서는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함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기관명		EEC(Eurasian Economic Commission)
홈페이지		www.eurasiancommission.org
연락처	담당부서	Technical Regulation and Accreditation Department
	전화번호	+7-495-669-24-00
	팩스번호	+8-495-669-24-15
	이메일	dept_techregulation@eeccommission.org
기타		-

<TR CU 인증 취득제품>



* 출처: 온라인 쇼핑몰(www.ozon.ru)

3. 취득 절차

□ 적합성선언(DoC) 절차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류 준비 및 자기선언서 작성	제조업체	2~3주	제출서류는 하기 참조
2	평가원의 방문평가 수행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
3	EAC 마크 부착	제조업체		-
4	자기선언서 온라인 등록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

* 출처: 러시아 연방기술표준청(<http://old.gost.ru>)

- 제조업체가 제품이 해당 규격에 적합함을 보증하는 자기선언서(DoC)를 작성하고, 승인된 자기선언서를 온라인 페이지¹⁰²⁾에 등록함
 - 지정된 자기선언서 양식에 맞춰 해당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기술함
- 필요 시 시험기관이나 공인인증기관의 평가원이 방문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승인된 경우 신청제품에 EAC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적합성인증(CoC) 절차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 제출(러시아 연방기술표준청)	제조업체	1~2개월	자기선언서 동봉 가능
2	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서 평가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
3	샘플 시험 및 현장심사 진행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
4	적합성인증서 발행 및 온라인 등록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

* 출처: 러시아연방 기술 표준청(<http://old.gost.ru>)

-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의 평가원은 제조현장을 심사하고 제조업체의 자기선언서를 평가함
- 적합성인증서(CoC) 발급과 해당 인증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것으로 적합성인증 절차는 완료됨

102) <http://old.gost.ru/wps/portal/pages/main>

□ 소요 비용

- TR CU 인증 품목별로 소요비용에 차이가 있으며 현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단일인증서의 경우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심사비 및 등록비	품목별 상이	-
	현장심사비	품목별 업체별 상이	-
	대행비	품목당 약 300~800만 원	품목별 업체별 상이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공인인증기관 및 대행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TR CU 공인인증기관,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5개社 유선 및 서면조사

□ 필요서류

- 인증신청서와 제품관련 서류, 시험성적서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함
- 또한 인증 취득 시 현지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러시아 대리인이나 제조업체 현지 법인이 있어야 하며 대리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함

구분	서류 목록
필수 서류	- TR CU 인증 신청서 - 공장심사 성적서 - 제품시험 성적서 - 상세 제품 설명서 - 제품사진 - 대리위임장
추가 서류 (구비여부에 따라 수수료 상이)	- 자기선언서 -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CE(유럽공동체마크), TUV(독일기술관리협회 인증) 등 품질 인증서 - 단일인증(One-shipment)을 위한 러시아 수입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UAE



ESMA 할랄 인증

.....275

ESMA 할랄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ESMA 할랄 인증	국가명	UAE(아랍에미리트)
마크		인증기관	UAE 표준측량청(ESMA)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종교 · 문화적 인증
		도입시기	2014년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UAE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도입함 ◦ 근거규정 - UAE.S/ GSO2055-1:2015 할랄 식품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 ESMA 이사회 결의 No.36/2014
인증 내용	◦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 육류 및 육류를 포함한 식품은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적용품목	◦ 가공식품류(장 · 소스류, 생수, 음료, 냉동식품, 가공식품, 제과제빵, 전통식품, 유아식, 보존식품, 건조식품, 캔가공품 등) ◦ 농축산물 및 해산물류(우 · 계육, 유제품, 소시지류, 어묵류, 과일가공품, 곡물제품) ◦ 원재료류(당 · 염류, 향신료 · 색소, 밀가루, 조미료, 용매제, 식용류)

□ 현황

취득 유형	국내 승인받은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 GCC 6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정부에서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은 대부분 통용이 가능 ◦ 말레이시아에서도 ESMA 할랄 인증을 인정하고 있음		
소요기간	3~6개월	소요비용	(한국공인인증기관 기준) 최소 300만 원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UAE로 수출하는 식품에 육류 및 가금류가 포함된 경우 지정된 이슬람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 2014년 1월 할랄 제품에 대한 규제가 제정된 이후 할랄 인증범위가 비(非)육류제품까지 확대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육류를 제외한 식품은 임의인증 대상임
 - 돼지고기 제품뿐만 아니라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의 수입과 판매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알코올음료는 라이선스를 가진 몇몇 회사들만 수입과 판매를 할 수 있음
- UAE는 「No.10/2014」를 통해 ‘UAE 할랄 제품에 대한 규제’를 확정함으로써 할랄 식품의 기술적 요구사항,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 도축장에 대한 특별 요구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음
- ‘UAE 할랄 제품에 대한 규제¹⁰³⁾’에 따라 할랄 식품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 ESMA 이사회 결의 「No.36/2014」에 의거하여 ‘국가할랄마크 National Halal Mark’ 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할랄 인증기관에 대한 표준 「UAE.S 2055-2」’ 및 ‘할랄 인증기관의 인정기관에 대한 표준 「UAE.S 2055-3」’을 개정함으로써 할랄 인증에 대한 기준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UAE의 할랄 제품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서로 규제되고 있음

-
- UAE.S 2055-1 할랄 제품-파트1: 할랄 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UAE.S 2055-2 할랄 제품-파트2: 할랄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UAE.S 2055-3 할랄 인증기관을 승인하는 할랄 인정기관의 요구사항
 - UAE.S 993 이슬람법에 따른 도축에 대한 요구사항
 - UAE.S GSO 713 가금류 도축에 대한 위생 규칙
 - UAE.S GSO 21 식품 기반시설 및 인력에 대한 위생 규칙
 - UAE.S GSO 1694 식품위생의 일반원칙
 - UAE.S/GSO CAC RCP 58 육류를 위한 위생실습 계획
 - UAE.S/ GSO 9 포장된 식품의 라벨링
-

-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제품과 제조시설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로 이루어지며, 할랄 마크는 이러한 평가를 거친 제품에만 부여됨

103) No.10/2014

□ 할랄 식품을 UAE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UAE ESMA 할랄 인증 또는 ESMA에서 인정하는 타국가 할랄 인증이 있어야 함

- 중동의 UAE, 사우디, 쿠웨이트 등의 6개 국가는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만을 승인하고 있으나, 비용과 소요기간 및 절차의 측면에서 타 인증보다 까다로워 많은 기업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음
- 인증 신청 시 영문 매뉴얼 절차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음
- 심사가 ISO 22000을 기반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까다롭고 오래 걸리며, 비용이 비쌈

□ 표준측량청은 UAE 할랄 인증제도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며, 할랄 인정기관(HABs, Halal Accreditation Bodies)에 공인인증기관(HCBs, Halal Certification Bodies)을 평가 및 인정하는 권한을 위임함

- ESMA 할랄 인증 발급 업무는 실질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담당하며, 할랄 인정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임
- UAE 표준측량청은 홈페이지¹⁰⁴⁾를 통해 승인한 할랄 인정기관 및 공인인증기관을 발표함
- UAE,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2018년 기준 48개 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발급을 담당하며 2019년 9월 한국 내 공인인증기관 1곳¹⁰⁵⁾이 등재됨
- 할랄 인정기관 역시 ESMA가 발표한 목록에 한국 내 인정기관이 포함됨¹⁰⁶⁾
- UAE의 대표적인 할랄 인증기관인 RACS(지역인증센터)를 통해서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RACS는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¹⁰⁷⁾ 정부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기관임

□ 인증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세부내용
기관명		UAE 표준기준청(ESMA)	(주)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
홈페이지		www.esma.gov.ae	www.ihcc.co.kr
연락처	전화번호	+971-60-056-5554	+82-2-2088-5632
	팩스번호	+971-4294-4428	+82-2-2088-5647
	이메일	eservice@esma.gov.ae	-
기타		두바이지사	ESMA 승인 한국연락사무소

104) www.halal.ae

105)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C)가 선정되었으며 2020년 9월 29일까지 유효함 (출처: 할랄미디어)

106) 한국인증지원센터

107)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ESMA 인증 취득제품〉



* 출처: open food facts 홈페이지(<https://world.openfoodfacts.org>)

3. 취득절차

□ 취득단계(한국 공인인증기관)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 제출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135일	필요서류 구비여부 확인
2	신청서 검토	공인인증기관		-
3	심사	공인인증기관		-
4	부적합사항 시정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
5	시정조치 확인 및 재심사	공인인증기관		-
6	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		-

* 출처 : 한국 공인인증기관(주)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 현장방문 심사는 서류심사(1단계) 및 생산현장 평가(2단계)로 진행되며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생산현장 평가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심사 시에는 할랄 제품 목록을 식별하고 원재료, 가공보조제, 첨가물 등의 할랄 여부를 판단함
 - 생산현장 평가는 제조·저장·유통제조시설 등 인증 제품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서 실시됨
- 공인인증기관은 할랄 인증조건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12개월 주기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는데, 생산현장 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후관리심사 주기가 결정됨
- 인증 갱신 심사는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생산현장 평가가 추가 진행되기도 함
 - 할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취득단계(RACS)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 신청	제조업체	4~5개월	웹사이트, 우편, 이메일 등 이용가능
2	인증비용 지불	제조업체		-
3	신청서류 제출	제조업체		-
4	적합성 평가	RACS		-
5	인증 승인	RACS		-

* 출처: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halal/uae)

- 서류가 미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
 - 제품 안전성 시험보고서가 할랄 인증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동일한 실험실 시험을 위해 샘플 채취가 수행됨
- 적용 가능한 표준을 완전히 준수한 경우 인증 승인 판정이 내려지며, ESMA가 인정하는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발급되며 인증 제품은 RACS 인증제품 등록소에 등록됨

□ 소요비용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신청비	품목당 100만 원 또는 850달러		한국 공인인증기관 인증비용 기준 (해외 적합성평가기관 이용 시 상이)
	등록비	품목당 50만 원 또는 450달러		
	행정/관리비	15%		
	심사비	1일 80만 원 또는 700달러		
	출장비 (1회 심사 기준)	경기	20만 원 또는 170달러	
		지방	30만 원 또는 260달러	
		제주도	40만 원 또는 350달러	
숙박비	1일 8만 원 또는 70달러			
인증대행비 및 컨설팅비		품목당 1,200만~1,800만 원		품목별 업체별 상이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주)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홈페이지,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5개社 유선 및 서면조사

□ 필요서류

ESMA를 이용할 경우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를 이용할 경우
- 온라인 지원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 등록증
- 유효한 사업자등록/면허	- 생산 공정도
- 성분 목록표	- 설비배치도
- 재료 목록표	- 품목제조보고서
- 성분/원재료 할랄인증서 또는 제품사양서 사본	- 제품설명서
- 제조공정 플로우차트 및 생산절차	- HACCP 매뉴얼
- 라벨 디자인	- 기타 인증서 사본(ISO 9001, ISO 22000 또는 HACCP)
-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원자재, 가공보조제 및 첨가물)
- FSMS/GMP/ GHP or QMS 증명서	- 시험소 및 검사설비
- 자기증명서 (자유양식)	- 외주 프로세스

호주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283
-------------	----------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국가명	호주
마크		인증기관	호주 농업수자원부 및 식품기준청(FSANZ)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수출 시 필수인증
		도입시기	1991년
		유효기간	무기한

□ 배경

근거규정	◦ 근거규정 - 식품표준법(Legislation Act 2003) -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 -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 원산지 라벨 정보에 관한 기준법(2016)
인증내용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수입식품에 관한 검사 및 검역을 담당하며, 식품기준청은 호주 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함
적용대상	곡물, 청과, 고기, 계란 및 생선류, 식용유, 유제품, 무알콜 음료, 주류, 설탕과 꿀, 특수 목적 식품, 기타 음식(식초, 소금, 껌 등)

□ 취득

취득유형	국내 식품기업은 호주로 수출하기 전 식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호주 및 뉴질랜드 내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별도의 소요기간 없음 (호주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소요비용	별도의 비용 없음 (호주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세부정보

□ 호주 내에서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기관은 농업수자원부(DAWR)와 식품기준청(FSANZ)¹⁰⁸⁾이 있으며 농업수자원부는 수입허가 및 검역을 담당하며 식품기준청은 식품과 관련된 위생 및 안전 표준을 제시함

- 호주 정부에서 수입식품에 대해 요구되는 별도의 인증은 없으나 국내 수출업체는 호주 수출 시 식품안전기준, 라벨링, 첨가물 기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수입식품검사체계에 따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서류심사 및 기본 검사를 실시함

-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은 위험 식품, 감시식품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검사를 실시함

〈위험도에 따른 식품 분류〉

위험식품(Risk Food)	- 미생물 및 오염물질을 함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인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음 - 최초 수입 시 100% 검사 대상이며 5회 연속 검사 통과 시 25%, 25회 연속 검사 통과 시 5% 확률로 검사함
감시식품 (Surveillance Food)	- 위험 식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저위험군 식품으로 농업수자원부 생물보안국 검사 결과 확인 전 판매가 가능함 - 무작위 감시(Random Surveillance)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위험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들로서 검역대상의 5%에 해당함

- 수입식품은 1) 미생물 오염 2) 농약 및 동물약품 잔류 3) 중금속 및 자연독소 4) 식품 첨가물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며 시각적 검사와 표시에 대한 검사 또한 진행됨
- 미생물 허용기준 및 첨가물 사용 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책임소재는 제조업자에게 있으며, 표시 오류는 호주 수입업자의 책임임
- 검사에 실패하면 생산국가 대사관등의 무역위원회(trade Commission)와 수입업자에 통지하며 5회 연속 실패하면 수입이 취소됨

□ 호주 식품기준청의 식품기준코드(ANZFSC)¹⁰⁹⁾는 호주 내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됨

- 식품기준코드는 1장 일반 식품기준(General Food Standards), 2장 세부 식품기준(Food Product Standards), 3장 식품안전성 기준(Food Safety Standards), 4장 미가공 농식품 생산 기준(Primary Production Standards)으로 이루어짐

108) 정확한 명칭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표준 제정을 담당하고 있음

109)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1장에서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제품 라벨링, 식품첨가물 기준, 미생물 및 오염물질 허용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¹¹⁰⁾
- 호주에서 판매되는 식품(신선, 가공식품, 주류 및 음료, 조미료 등)은 하기 라벨링 사항을 충족해야 함

〈라벨링 필수 표시 사항〉

- 음식 이름, 로트 식별 정보, 공급업체 및 위치
- 원료 성분 표시
- 원산지 표시
- 유통 기한, 소비 기한 중 하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사용방법 및 저장방법(필요한 경우)
- 알레르기 성분 등에 관한 경고·주의 환기·고지
- 기타 특정 함유 성분
-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한 가공(해당하는 경우)
- 영양 정보 패넬

- 식품 품목별 중금속 및 오염물질 허용기준은 식품표준코드(FSANZ) 1.4.1장 및 Schedule 19에 규정됨
- 이외에도 잔류농약기준(MRL)(Schedule 20), 외인성잔류기준(ERL)(Schedule 21)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중금속 및 오염물질 허용기준(예시)〉

분류	물질	허용기준	비고
S19-4 (금속류)	모든 금속	250mg/kg	통조림 식품
	비소	0.5mg/kg	소금 및 조미료
	카드뮴	0.5mg/kg	소금 및 조미료
	납	2mg/kg	소금 및 조미료
	수은	0.1mg/kg	소금 및 조미료
S19-5 (비금속 류)	아크릴	0.02mg/kg	전체 식품
	클로로에틸렌(염화 비닐)	0.01mg/kg	포장 식수 제외 모든 식품
	3-chloro-1,2-propanediol	0.2mg/kg	간장 및 조미료
	1,3-dichloro-2-propanol	0.005mg/kg	간장 및 조미료
S19-6 (천연독성물질)	시아나화수소산	25mg/kg	과자류
	에루스산	20,000mg/kg	식용유 류
	히스타민	200mg/kg	생선 소스 등 어류 성분 포함

* 출처: JETRO(www.jetro.go.jp/world/oceania/au/foods/exportguide/alcohol.html#02_02)

110) www.legislation.gov.au/Series/F2015L00386

- 하기 품목별 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호주 식품기준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음¹¹¹⁾

〈식품 품목별 표준 현황〉

품목	식품기준코드	세부 표준
곡물	2.1.1	시리얼 및 시리얼 제품
청과	2.3.1	과일과 채소
	2.3.2	잡
고기, 계란 및 생선	2.2.2	계란과 계란
	2.2.1	육류 및 육류 제품
	2.2.3	생선 및 생선 제품
식용유	2.4.1	식용유
	2.4.2	식용유 스프레드
유제품	2.5.1	우유
	2.5.2	크림
	2.5.3	발효유 제품
	2.5.4	치즈
	2.5.5	버터
	2.5.6	아이스크림
	2.5.7	말린 우유, 증발 우유 및 농축 우유
무알콜 음료	2.6.1	과일 주스와 야채 주스
	2.6.2	무알콜 음료 및 양조 청량음료
	2.6.3	Kava(후추과 식물의 뿌리를 이용해 만든 FIJI 전통음료)
	2.6.4	카페인 함유 된 음료
주류	2.7.1	알코올음료 및 알코올 함유 식품의 라벨링
	2.7.2	맥주
	2.7.3	과일 와인, 야채 와인, 벌꿀 주
	2.7.4	와인과 와인 제품
	2.7.5	증류주
설탕과 꿀	2.8.1	설탕과 설탕 제품
	2.8.2	꿀
특수 목적 식품	2.9.1	유아용 조제식
	2.9.2	영유아 식품
	2.9.3	식사대용품 및 식사보충식품
	2.9.4	보충 식 스포츠 식품
	2.9.5	특수의료식품

□ 담당기관정보

		수입식품 검사 및 검역기관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기관
기관명		호주 농업수자원부	호주 식품기준청
홈페이지		www.agriculture.gov.au	www.foodstandards.gov.au
연락처	담당부서	식품수입국	-
	전화번호	+61-3-8318-6700	+61-2-6271-2222
	팩스번호	-	+61-2-6271-2278
	이메일	imports@agriculture.gov.au	-

111) 호주 식품기준청(www.foodstandards.gov.au)

대한민국



KMF 할랄 인증

.....289

KMF 할랄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KMF 할랄인증	국가명	대한민국
마크		인증기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구분	☐ 필수 ☐ 권장 ☒ 선택 ☐ 국제공인 ☐ 국가공인 ☒ 민간인증	유형	종교 · 문화적 인증
		도입시기	1994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 무슬림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제조, 유통된 제품만을 섭취 및 사용할 수 있으며, 할랄 인증은 이러한 제품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함 ◦ 한국 이슬람교 할랄 규정(KMF-BS2016)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규정을 인용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인증 내용	◦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의 과정을 거쳐서 인증서가 발급됨 ◦ 원료입고에서부터 포장 · 보관 · 운송까지 모든 생산라인은 할랄 전용이어야 하고 교차오염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음 ◦ 불시에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고, KMF 주관의 할랄 세미나 교육이수를 완료하면 중간 모니터링이 대체됨
적용품목	◦ 가공식품류(장 · 소스류, 생수, 음료, 냉동식품, 가공식품, 제과제빵, 전통식품, 유아식, 보존식품, 건조식품, 캔가공품 등) ◦ 농축산물 및 해산물류(우 · 계육, 유제품, 소시지류, 어묵류, 과일가공품, 곡물제품) ◦ 원재료류(당 · 염류, 향신료 · 색소, 밀가루, 조미료, 용매제, 식용료)

□ 취득

취득 유형	국내에서 제품 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2018년 기준 약 300개 업체의 900개 품목이 인증을 취득함¹¹²⁾ - 조미김, 녹차, 김치, 면류, 제과류, 유제품, 아이스크림, 홍삼농축액, 치킨 소스 등		
타국가 통용여부	◦ 말레이시아 JAKIM, 싱가포르 MUIS, 대만 THIDA와 교차인증을 시행하고 있어 동등하게 인정받음 ◦ 미국의 IFANCA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음		
소요기간	3개월	소요비용	품목당 약 100만 원 (실사비 별도)

* 주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MF)는 1994년도부터 원재료 수출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기초원료 위주로 인증을 발급하기 시작함
- 현재 KMF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싱가포르 MUIS 인증, 대만 THIDA 인증과 교차인증을 시행함
 -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JAKIM 인증과 교차인증을 체결함에 따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이슬람권 국가로 수출 시 할랄 인증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MUI 할랄 인증과는 교차인증 업무협정 준비 단계에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식품연구원(KFRD), 한국할랄수출협회 및 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IFANCA)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음
- KMF 할랄 인증은 한국 이슬람교 할랄 규정(KMF-BS2016)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규정을 인용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 MS 1500:2004 식품 생산, 준비, 취급 및 보관 일반 지침
 - Gulf Standards Specification GSO 0000/2008, 할랄 식품 일반 요구사항
 - GSO 993/1998 이슬람율법에 따른 가축 도살 조건
 - CODX STAN 1, 포장된 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표준
 - CAC/RCP 1 식품위생 일반원칙에 관한 권장 국제 실행기준
 - CAC/RCP 58 식육의 위생기준규약
 - KS Q 8001, 제품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 KS Q 8002, 서비스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 KS Q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 KS Q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사슬의 모든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 KS Q ISO/TS 22002-1 식품안전에 관한 선행요건 프로그램- 제1부: 식품제조
 - KS Q ISO/TS 22004, 식품안전경영시스템-22000:2005 적용지침
 - KS Q ISO 22005 사료 및 식품사슬의 이력추적 - 시스템 설계와 이행에 대한 일반원칙 및 요구사항
 - KS Q ISO 22006, 품질경영 시스템 - 농작물 생산에서의 ISO 9001 :2008 적용지침
-

- 제조공장 내에서 할랄과 하람 원료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원료 입고에서부터 포장·보관·운송까지 모든 생산라인은 할랄 전용이어야 함
 - 할랄 식품에는 하람으로 규정되는 원료가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된 모든 화학물질과 원료는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알코올(와인, 럼주 등)은 할랄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식품 첨가물로서 알코올은 제조과정 중 0.5%이하로만 사용가능함

112) 한국무역협회 KMF 인증 세미나(<https://www.youtube.com/watch?v=mbF8LP9WoXE>)

- 할랄 인증서 발급 6개월 후 불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생산관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주관하는 할랄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할 경우 중간 모니터링이 대체될 수 있음

□ 인증기관정보

		인증기관
기관명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홈페이지		www.koreaislam.org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82-2-793-6908
	팩스번호	+82-2-798-9782
	이메일	kmfhalal@koreaislam.org
기타		-

<KMF 인증 취득제품>



* 출처: www.havehalalwilltravel.com

3. 취득절차

□ 취득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비고
1	할랄 인증 신청	제조업체	약 3개월	KMF 할랄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서류 접수
2	접수비 및 공장실사비 납부	제조업체		예상 소요비용은 하기 참조
3	서류검토	KMF		-
4	현장실사	KMF		-
5	최종심의	KMF		-
6	인증서발행	KMF		-
7	인증료 납부	제조업체		-
8	인증서 원본 발송	KMF		-

* 출처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islam.org)

- 인증 신청서와 서류를 구비하여 KMF 할랄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음
 - KMF 할랄통합관리시스템(www.halal.koreaislam.org)
 - 이메일 주소(kmfhalal@koreaislam.org)
- 현장실사 시 2인1조의 실사위원이 방문하며 현장 책임자, 현장실무자, 행정실무자 등 실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함께 진행함

〈KMF 할랄 인증 현장실사 항목〉

- 회사 소개 및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프레젠테이션)
- 창고실사: 할랄 원료와 비할랄 원료의 별도보관 검토
- 제조과정 실사: 원료 투입부터 포장단계까지 실사 (포장 후 출고까지도 할랄 상품과 비할랄 상품이 구별 및 별도 보관되어야 함)
- 서류심사: 제품에 사용된 원료와 제출한 서류의 원료를 비교 검토
- 완제품보관창고 실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비할랄 제품과의 분리여부 검토
- 공장주변 실사: 폐수처리, 이물질 등 환경상태, 근처 축사유무 검토

- 필요 시 하람 원료 포함여부에 대한 시험이 실시되며 분석을 통해 하람 원료 불포함이 증명되어야 함
- 샤리아위원회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심사하는 학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의미함

- 샤리아위원회의 최종 승인 후 인증서가 발행되고 발급 후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 짐
 - 샤리아위원회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심사하는 학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의미함
 - 인증 갱신은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규 신청 시와 절차, 서류, 비용은 동일함
- KMF 할랄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이전 발급 이력이 있는 업체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
 - 단, KMF 할랄 교육을 이수하고 할랄 전용 라인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무슬림을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함

□ 소요비용

- 현장실사비는 공장의 위치에 따라 상이하고 비용 역시 품목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구분	항목	비용		비고
취득비	접수비	품목당 10만 원		부가세 10% 별도
	현장실사비	서울	30만 원	
		경기	40만 원	
		충청	50만 원	
		강원·영남·호남	60만 원	
		제주	80만 원	
	인증료	품목당 60만 원		
인증대행 및 컨설팅비		품목당 약 150만~300만 원		품목별 업체별 상이

* 주: 상기 비용은 취득 소요비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량, 업체별 준비상황,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KMF 홈페이지,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유선 및 서면조사

□ 필요서류

- 할랄 인증 신청서는 KMF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대표자 직인과 회사명, 주소, 상품의 이름은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해야 함
- 동일 배합비와 제조 방식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조보고서가 다르면 각기 다른 제품으로 신청해야 하며,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필수 기재사항>

- 회사명(한글회사명, 인증서에 기재될 영문 회사명)
- 판매, 제조회사 주소(한글 주소, 인증서에 기재될 영문회사 주소)
- 상품명(한글상품명, 인증서에 기재될 제품의 영문명)
- 신청인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인증 신청 필요서류〉

- 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 공장등록증(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
- 생산허가서 또는 영업허가서(영업신고증)
- HACCP, GMP, GHP, ISO 또는 기타 인증서의 사본
- 제품 품목제조보고서
- 시험성적서
- 포장지 시험성적서
- 수질검사성적서(정제수 사용 시)
- 제품 제조공정도
- 샘플(생산되는 최소단위) 및 제품 이미지
- 동물성 원료 및 이슬람법에 위배되는 소재 혹은 공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 할랄 원료보증서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홈페이지 양식 참고)
- 주정인 제조공정에 0.5% 이내로 사용 된 경우: 완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
-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효소의 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 각 원료의 제조 공정도, 균주기탁서(제조 공정 중 효소를 사용 할 경우)
- 할랄 제품 생산에 관한 자체 규정 자료
- KMF 할랄 실무자 교육 수료증(실무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수료증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증 진행이 가능하며 추후 보완 가능함)
- 원재료 표기(실제 사용하는 원료를 모두 표기)

* 출처 : KMF 홈페이지(<http://www.koreaislam.org>)

- 제조에 사용된 원료에 관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할랄 인증서 보유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음

〈원료 관련 첨부 서류 목록〉

공통	- 수입신고 확인증 - 사용된 원료의 품목제조보고서
할랄인증서 보유	- 사용된 원료의 할랄인증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거래명세서
할랄인증서 미보유	- 사용된 원료의 제조 공정도 - 제조공정 중 효소를 사용할 경우, 사용된 효소의 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 각 원료의 제조공정도, 균주 기탁서 - 사용된 원료의 시험 성적서 - 납품회사의 동물성 원료 및 금지된 공정(방사선 조사)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 수입원료: 사용된 모든 원료의 각각의 수입신고 확인증 - 국산 농수축산물: 원산지 확인 증명서, 농약, 중금속시험서 - 수입산 농수축산물: 원산지 확인 증명서, 농약, 중금속시험서 - 국내 수산물 및 일본산 생산품- 방사능 확인 증명서(소금포함) - 주정인 제조공정에 0.5% 이내로 사용 된 경우 완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 - 동물성 유래의 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할랄 인증서를 제출(우유, 달걀 제외)

* 출처: KMF 홈페이지(www.koreaislam.org)

[별첨] 할랄 인증 신청서류 및 할랄 인증서

<KMF 할랄 인증 신청서류>

KMF 할랄 인증 신청서

업체명 : _____

	한글명	영문명
회사명	한글 회사명	인증서에 기재될 영문 회사명
주소	한글 주소 (판매원, 제조원이 다를 경우, 명확하게 나누어 기재) 제조원 : 실사 공장 주소 정확히 명시 판매원 :	인증서에 기재될(판매원, 제조원)주소 (판매원, 제조원이 다를 경우, 명확하게 나누어 기재) Manufacturer : Distribute :
제품 카테고리	☐ 식품 ☐ 식품첨가물 ☐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 화장품 ☐ 의약품 ☐ 기타()	
제품명	한글 제품명	인증서에 기재될 제품의 영문명
비용부담업체 (해당 없을 경우 공란)	※ 신청업체와 비용부담업체가 다를 경우 비용 부담회사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신청인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직책 : 직 통 번 호 : 휴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 인증서 원본 받으실 주소	
신청인 주소		

업체명 : _____ (대표자 직인 必)

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수집 기관명: (재)한국이슬람교
2. 정보 제공 범위와 사용 목적
 - 정보 제공 범위: 업체명, 인증품목명, 인증품목 이미지, 주소, 담당자, 연락처
 - 사용 목적
 - 1) 인증 업체 홍보
 - 2) 상호인정기관 정보 공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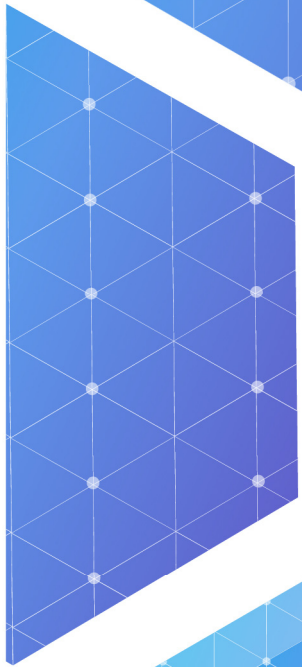
20 년 월 일

업체명 : _____ (대표자 직인 必)

<KMF 할랄 인증서>



* 출처: <http://serim.kr/kr/customer/news.php?returnURL=%2Fkr%2Fcustomer%2Fnews.php&bgu=view&idx=51>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정보



〈국내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 정보〉

구분	컨설팅기관명	컨설팅대상 인증	홈페이지	전화번호	소재지
1	HTC 인증원	미국 FDA 시설등록 러시아 TR CU 인증 FSSC 22000 인증 ISO 22000 인증	https://htcert.com	02-6749-1161	서울특별시
2	ITQ국제표준개발원	미국 FDA 시설등록 러시아 TR CU 인증 FSSC 22000 인증 ISO 22000 인증 HACCP 인증	http://isoebiz.com	02-761-4692	서울특별시
3	(주)펜타글로벌	미국 IFANCA 인증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 UAE ESMA 인증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www.pentaglobal.co.kr	1599-7301	서울특별시
4	(주)비에스알코리아	미국 FDA 시설등록 미국 USDA Organic 인증 베트남 식품청 인증 ISO 22000 인증	www.bsrkorea.com	042-476-2977	경기도 성남시 (경기지사)
5	(주)더포커스	미국 IFANCA 인증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www.tfocuse.co.kr	02-0507-1308 -3550	서울특별시
6	(주)중국검험인증그룹 코리아컴퍼니	중국 유기산품 인증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FSSC 22000 인증 HACCP 인증 GMP 인증	www.ccickorea.com	02-6393-5860	서울특별시
7	산업경영기술원	미국 FDA 시설등록 ISO 22000 인증	-	063-271-4790	전라북도 전주시

구분	건설당기관명	건설당대상 인증	홈페이지	전화번호	소재지
8	(주)한국품질인증원	미국 FDA 시설등록 미국 IFANCA 인증 미국 OU 코셔인증 미국 Star-K 인증 미국 USDA Organic 인증 인도네시아 BPOM 등록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 UAE ESMA 인증 사우디아라비아 WAHES(MJS) 인증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FSSC 22000 인증 ISO 22000 인증 HACCP 인증 국내 KMF 할랄인증	www.kqc.or.kr	070-8824-9001	경기도 수원시
9	(주)해외인증센터	미국 FDA 시설등록 미국 Star-K 인증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 UAE ESMA 인증 사우디아라비아 WAHES(MJS) 인증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FSSC 22000 인증 ISO 22000 인증 국내 KMF 할랄인증	http://icckorea.kr	02-6094-9003	서울특별시
10	사단법인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 UAE ESMA 인증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www.kihi.or.kr	02-3275-1125	서울특별시
11	국제인증지원센터(주)	미국 FDA 시설등록 러시아 TR CU 인증 FSSC 22000 인증 ISO 22000 인증 HACCP 인증 GMP 인증	www.icccert.co.kr	02-761-5500	서울특별시

구분	컨설팅기관명	컨설팅대상 인증	홈페이지	전화번호	소재지
12	주식회사 온빅스	미국 FDA 시설등록	http://onbix.com	02-566-3360	서울특별시
13	주식회사 미래이엘씨	중국 AQSIQ 인증	www.cmcc.co.kr	02-715-2208	서울특별시
14	(주)비전경영기술원	미국 FDA 시설등록 미국 Star-K 인증 미국 USDA Organic 인증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 러시아 TR CU 인증 UAE ESMA 인증 싱가포르 WAFES(MUS) 인증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FSSC 22000 인증 ISO 22000 인증 HACCP 인증 국내 KMF 할랄인증	www.visions.kr	051-205-4648	부산광역시
15	J&B Food consulting	미국 FDA 시설등록 미국 공정무역 인증 미국 OU 코셔인증 미국 Star-K 인증 미국 글루텐프리 인증 미국 Non-GMO 인증 미국 USDA Organic 인증 FSSC 22000 인증 ISO 22000 인증 SQF 인증 HACCP 인증 GMP 인증	www.jnbfoodconsulting.com	070-4322-5566	인천광역시 (본사: 미국)
16	주식회사 이니할랄코리아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	http://inihalalkorea.com	02-778-6260	서울특별시
17	코렉스 컨설팅	미국 FDA 등록	www.korex.net/index.php	02-782-8525	서울특별시

구분	컨설팅기관명	컨설팅대상 인증	홈페이지	전화번호	소재지
18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일본 JAS 유기인증 미국 USDA Organic Global GAP	www.isidor.kr	043-845-9792	충청북도 충주시
19	캠론FDA코리아	미국 FDA 등록 일본 후생성 등록	www.dfda.co.kr	02-568-7744 02-543-4744	서울특별시
20	레지스터차이나	중국 AQSIQ 등록	www.r-china.co.kr	070-4948-3772	경기도 성남시
21	지엠에스씨에스 주식회사	FSSC22000 ISO22000	www.gmscs.co.kr	02-6929-1702	서울특별시
22	한농글로벌컨설팅(주)	FSSC22000 ISO22000	-	02-786-1186	서울특별시
23	한국경영연구소	미국 FDA 등록 FSSC22000 ISO22000	http://koreainslab.co.kr	1600-5406	서울특별시
24	(주)GCS	미국 FDA 등록 HAPPC 인증 FSSC22000 ISO22000	www.bestgcs.com	02-555-1537	서울특별시
25	한국중앙인증원	미국 FDA 등록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FSSC22000 ISO22000	-	02-780-8063	서울특별시
26	(주)플러스경영정보	미국 FDA 등록 ISO22000 HAPPC 인증	http://fdaplus.co.kr	02-523-3109	서울특별시

구분	컨설팅기관명	컨설팅대상 인증	홈페이지	전화번호	소재지
27	로이드인증원	Global GAP FSSC22000 ISO22000 HACCP 인증	www.lr.org	02-736-6231	서울특별시
28	디엠에스컨설팅(주)	ISO22000	-	042-534-0017	대전광역시
29	혁신경영연구원	FSSC22000 ISO22000 HACCP 인증	imi21.co.k	02-2662-0071	서울특별시
30	시스템앤리닝경영연구원(주)	미국 FDA 등록 ISO22000 HACCP 인증 GMP 인증	www.sys-lean.co.kr	02-785-3174	서울특별시
31	품질환경인증개발원	FDA ISO22000 FSSC22000 Global GAP	www.ksstandard.com	02-6674-7007	서울특별시
32	(주)한국식품정보원	FSSC22000 ISO22000 HAPPC 인증 GMP 인증	www.foodi.com	02-405-2800	서울특별시

* 주: 상기 인증대행 및 컨설팅기관은 본 가이드북 내용과 무관하며 참고용으로 활용바람

2020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정보 종합가이드

기획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수행기관 : (주)트레이드파트너스

발행일 : 2019년 12월

발행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www.at.or.kr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